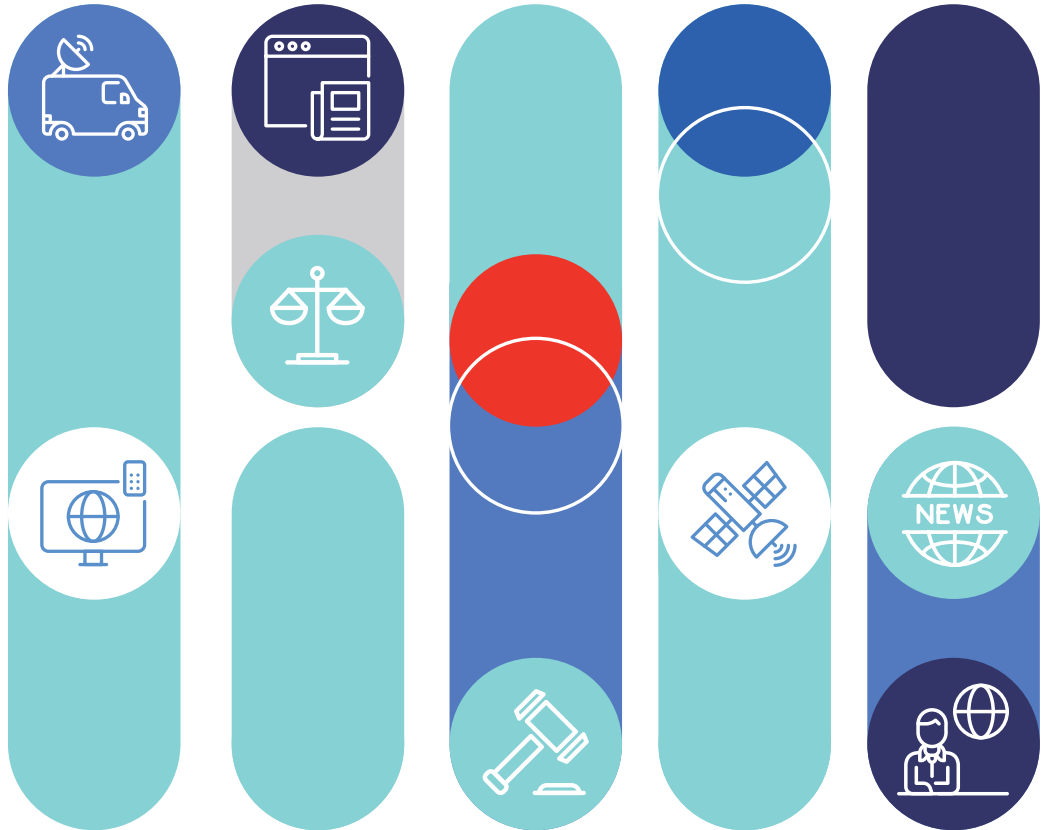


#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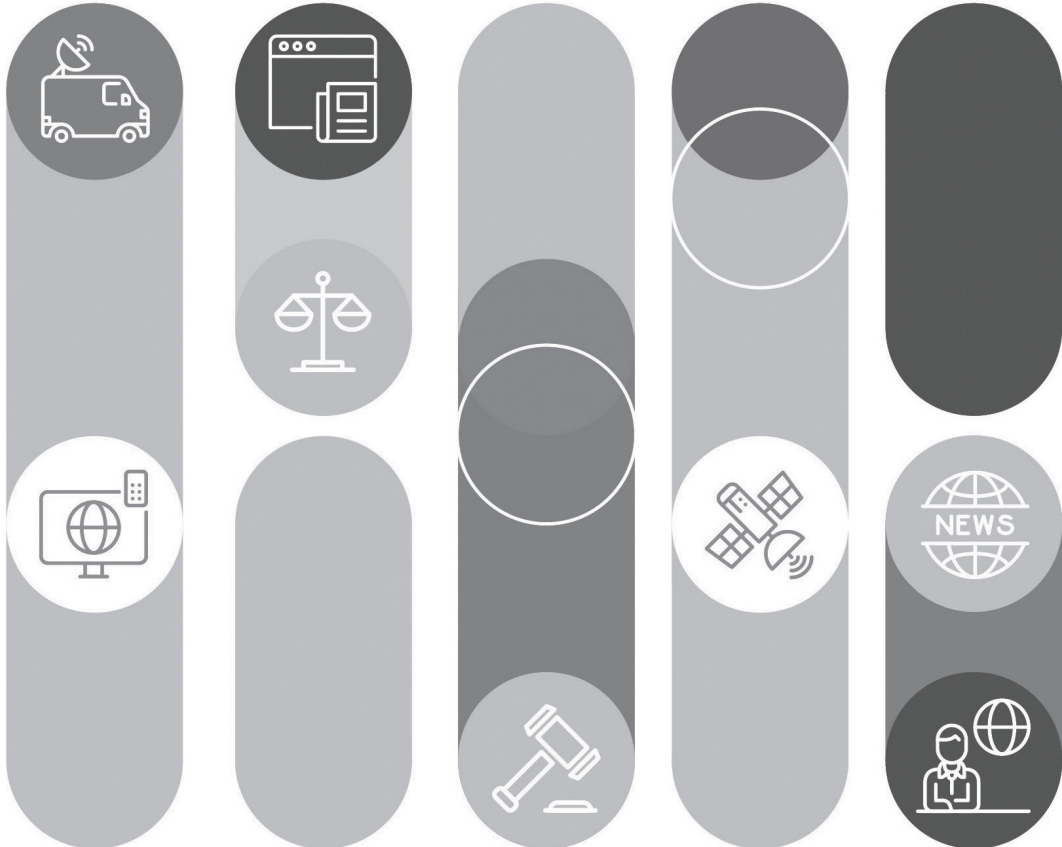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시대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법제연구





#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시대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법제연구







#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시대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법제연구

## 제7호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시대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법제연구

책임연구원 : 표시영(강원대학교)

공동연구원 : 이영희(배재대학교)

: 최경미(서울교육대학교)

보조연구원 : 진승현(한양대학교)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1</b>
I. 문제 제기 .....	11
II. 연구 목표 .....	12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3
<b>제2장 국내 반론권의 연혁 및 현황</b> .....	<b>15</b>
I. 국내 반론권 법률 동향 .....	15
1. 연혁 .....	15
2. 현행법상 반론권의 의의 및 현황 .....	16
II. 국내 반론권 제도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논의 .....	18
1. 반론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의 흐름 .....	18
2. 그 밖의 논의 .....	20

III. 국내 반론권 판례 동향	21
1. 국내 언론피해구제 시스템	21
2. 국내 언론피해 판례 분석	25
IV. 소결	37

### **제3장 해외 주요국 반론권 동향** ..... 40

I. 유럽연합(EU)	40
II. 독일	42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44
2. 판례 및 사례	66
III. 프랑스	70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70
2. 판례 및 사례	82
3.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법리적 평가	88
IV. 영국	90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90
2. 판례 및 사례	106
V. 미국	111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111
2. 판례 및 사례	120
VI. 그 밖의 국가	124
1. 호주	124
2. 일본	131
VII. 소결	140

### **제4장 해외 언론사의 반론권 자율규제 현황** .....143

I. 독일	143
1. 독일의 대표 방송사	143

2. 독일의 대표 신문사 .....	147
II. 프랑스 .....	151
1. 프랑스의 대표 방송사 .....	151
2. 프랑스의 대표 신문사 .....	155
III. 영국 .....	158
1. 공영방송 BBC .....	158
2. 전국 일간지 타임스(The Times) .....	167
IV. 미국 .....	172
1.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	172
2. 뉴욕타임스(Newyork Times) .....	176
V. 소결 .....	181
<b>제5장 국내 반론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b>	<b>182</b>
I. 전문가 자문 .....	182
1. 자문 대상 및 절차 .....	182
2. 문항 설계 .....	182
3. 자문 결과 .....	183
<b>제6장 결론 및 논의 .....</b>	<b>191</b>
<b>참고문헌 .....</b>	<b>195</b>
<b>부    록 .....</b>	<b>200</b>

## 표 목차

〈표 1-1〉 「언론중재법」상 반론권 등 주요 내용 .....	16
〈표 2-1〉 분석 대상 판례 .....	26
〈표 2-2〉 분석 대상 판례의 사실적 주장 및 의견표명 .....	32
〈표 3-1〉 반론권의 법적 근거 .....	52
〈표 3-2〉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의 위원 자격 .....	78
〈표 3-3〉 미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항목 .....	120
〈표 4-1〉 BBC의 시청자 불만 처리 단계 .....	159
〈표 4-2〉 BBC의 시청자 불만 처리 과정 .....	162
〈표 4-3〉 〈Behind the Journalism: How The Times Works〉의 내용 .....	178
〈표 5-1〉 전문가 자문 문항 구성 .....	182

## 그림 목차

[그림 3-1] 독일 언론보도 구제 체계 .....	43
[그림 4-1] ARD의 시청자 의견 페이지 .....	144
[그림 4-2] ARD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문의 방법 .....	145
[그림 4-3] ARD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문의 담당자 안내 .....	145
[그림 4-4] ARD 고객센터 문의 양식 .....	146
[그림 4-5] ZDF 시청자 의견 담당 페이지 및 문의 양식 .....	147
[그림 4-6]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에 불만 사항(의견) 보내는 방법 .....	149
[그림 4-7]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에서 반론문을 게재하는 형태 .....	149
[그림 4-8] 빌트(Bild)에 불만 사항(의견) 보내는 방법 .....	150
[그림 4-9]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의 시청자 의견 페이지와 옴부즈맨 (Les médiateurs) .....	152

[그림 4-10] 프랑스 떼에프엥(TF1)의 시청자 의견 페이지 .....	153
[그림 4-11] '떼에프엥과 당신' 섹션 내 의견 개선 창구와 시청자 의견 페이지 .....	154
[그림 4-12] 르몽드(Le Monde)의 독자 의견 페이지 .....	155
[그림 4-13] 르 피가로(Le Figaro)의 독자 의견 페이지 .....	156
[그림 4-14] 리베라시옹(Libération)의 독자 의견 페이지 .....	157
[그림 4-15] BBC 홈페이지 'Contact the BBC' .....	160
[그림 4-16] BBC 홈페이지 'Complaints' .....	160
[그림 4-17] BBC 불만 제기 방법 안내 화면 .....	161
[그림 4-18] BBC '불만' 제기 페이지의 '추가 정보' .....	163
[그림 4-19] 불만 사항에 대한 BBC 공개 응답 .....	164
[그림 4-20] 불만 사항에 대한 BBC 수정 및 설명 .....	166
[그림 4-21] The Times 홈페이지 하단 'The Times Editorial Complaints' .....	168
[그림 4-22] The Times 홈페이지 하단 'The Times corrections' .....	169
[그림 4-23] The Times의 '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	170
[그림 4-24] CBS 홈페이지 하단 .....	173
[그림 4-25] CBS의 Show Feedback .....	173
[그림 4-26] 삭제된 CBS NEWS의 정정 기사 .....	175
[그림 4-27] 뉴욕타임스의 정정 기사 목록 .....	179
[그림 4-28] 사례 2 정정보도 기사 .....	180



## 제1장 서론

## I. 문제 제기

우리나라에는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언론사에 반론문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로서 게재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반론권(right to reply) 제도가 있다. 이 반론권 제도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명예훼손만으로는 피해의 구제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새로운 언론 피해구제제도로서 자기 의사를 효과적으로 사회에 전달할 수단을 갖도록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반론권은 통상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정정보도청구권’ 그리고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 반론권은 1980년 12월 국내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으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구제가 된 비율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73.1%로서 정정보도·반론 보도가 게재되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 양상 또한 다변화되면서 지금의 반론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대한 언론기업이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언론 권력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여 왜곡된 여론을 조작할 뿐 아니라, 약자인 국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성명, 초상 등의 폭로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반론권은 언론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정환, 2016). 지난 2021년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었던,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국민 상당수가 언론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이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을 표한 바 있어 언론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가 유튜브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튜브 채널을 언론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역시 언론학과와 규제기관의 또 다른 숙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정정 및 반론권 제도의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에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해당 제도를 어떻게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뒤, 국내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반론권 제도가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 맞는 실효성 높은 피해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II. 연구 목표

본 연구는 미디어 플랫폼이 다변화되고 있는 언론 지형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 보도에 따라, 반론권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지금, 반론권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및 근래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정 및 반론권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반론권이 처음 도입된 프랑스와 한국 반론권 제도의 기준이 된 독일, 나아가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반론권 제도의 연혁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반론권 제도 개선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국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국내 반론권 제도 개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나아가 현재 언론에 대한 규제 상당 부분이 자율규제로 이뤄지고 있고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높은 만큼,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서 언론사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언론이 점차 디지털 미디어로 확장되는 시기에 사회적 책임과 공적 임무를 어디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특히 해외 주요 언론사의 자율규제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 스스로 무슨 노력을 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방송사 및 신문사 자율규제 운영 현황을 검토한다.

###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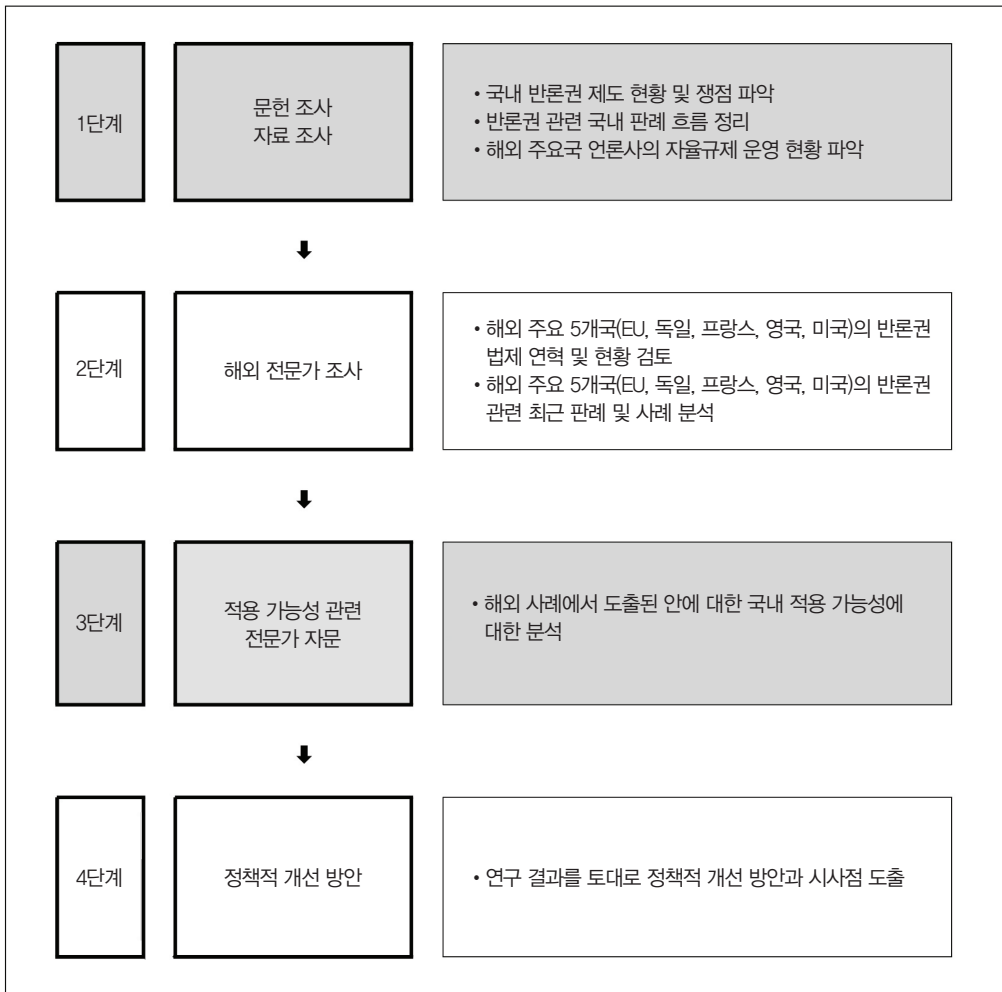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반론권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 반론권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점과 상반된 의견들을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나온 반론권 관련 판례 흐름을 통해 국내 반론권 동향 및 흐름을 살핀다.

둘째, 해외 주요국의 반론권 제도에 대한 최근 동향과 관련 판례 및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반론권 제도에 대한 기초 및 쟁점을 파악하고 해외 미디어 법률 및 정책에 특화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동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해외 주요국 언론사의 자율규제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정리한다.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인 ARD와 ZDF 그리고 대표적인 신문사인 쾰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과 빌트(Bild)를, 프랑스는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 그리고 민영방송인 페에프영(TF1)과 신문사 르몽드(Le Monde), 르 피가로(Le Figaro), 리베라시옹(Libération)을, 영국의 경우 공영방송 BBC와 전국 일간지 타임스(The Times)를, 미국은 뉴욕타임스(Newyork Times)와 CBS를 대상으로 삼고 각 언론사 홈페이지와 문헌 등을 참고하여 자율규제 운영 방식을 분석한다.

넷째, 해외 사례를 통해 도출한 함의를 국내 반론권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이를 위해 앞서 도출된 함의를 정리한 뒤 쟁점별로 분류하여 2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내 반론권 제도 개선 방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파악한다.



## 제2장 국내외 반론권 연혁 및 현황

## 1. 국내 반론권 법률 동향

## 1. 연혁

전 세계를 기준으로 반론권의 시초는 1822년 3월 25일 「프랑스출판법」 제11조로 알려져 있다. 이 법에 의해 당시에는 명예훼손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 개진을 인정하였다. 이후 프랑스의 반론권에 관한 개정 법률인 1835년 법에는 반론문을 게재할 때는 원 기사 크기의 두 배까지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는 등의 구체화된 사항이 담기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 1881년 법 이전의 반론권 행사는 언어, 인쇄물, 도안,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그림, 레코드, 영화 등 다양한 표현에 대해 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론권 행사 대상이 되는 주요 매체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이었기 때문에, 1881년 법은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박운희, 1995).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 최초로 반론권을 도입하였다. 동법에서 표기된 것은 ‘정정보도’였지만, 실제로는 언론보도의 진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반론권의 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그 표현의 형식이 정정보도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상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결정하였고,<sup>1)</sup> 그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1998. 1. 1. 시행)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용어로 변경하여 도입되었다.

1)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헌재 1996. 4. 25. 95헌바25

◎ 1980년 「언론기본법」 제49조 제1항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 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 2. 현행법상 반론권의 의의 및 현황

헌법재판소는 반론권의 의의에 대하여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방어 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sup>2)</sup> 한편, 대법원은 '반론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언론이 사실 보도한 내용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사람에게 언론의 사실 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하였다.<sup>3)</sup>

2005년 7월 28일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을 아래와 같이 각기 규정하였으며, 2009년 법 적용 대상을 온라인으로 확대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이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법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신설).

〈표 1-1〉 「언론중재법」상 반론권 등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용어 (언론중재법 제2조)	14. "사실적 주장"이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5.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6.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18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언론중재법 제14조)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을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헌재 1996. 4. 25. 95헌바25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구분	내용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언론중재법 제14조)	<p>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p> <p>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p>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언론중재법 제15조)	<p>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p> <p>③ 언론사 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 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li> <li>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경우</li> <li>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li> <li>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li> <li>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li> </ol> <p>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실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p> <p>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p> <p>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p> <p>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p>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6조)	<p>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p> <p>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법 제17조)	<p>①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인터넷 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p>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제16조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청구 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 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 제2항(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의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p>

반론권의 유형은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프랑스형이란 사실상의 주장뿐만 아니라 논평·비판 등의 의견,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반론을 허용함으로써 반론권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독일형이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을 좁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독일형을 따르고 있다.

## II. 국내 반론권 제도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논의

### 1. 반론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의 흐름

반론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언론법 학계 및 법원의 연혁적인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원우현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는 ... 국민의 알권리, 의견광고, 반론권을 내용으로 하는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 보장을 전부 포함하는 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원우현, 1984). 염규호 교수는 “한국과 독일이 사실적 진술에 대해 반론권을 제공하고 있어서 유사점이 있지만, 한국은 언론중재 과정에서 반론권을 활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였다(Youm, 1993). 성낙인 교수는 “반론권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상충이 된다는 시각은 잘못되었고,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사실상 동일한 기본권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성낙인, 1997). 광의의 반론권은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김재협, 2004), 협의의 반론권은 반론보도청구권만을 의미한다.

또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직접적 권리구제 수단이고 민법 제764조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된다. 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언론보도의 불법행위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언론보도로 발생한 현상 수습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언론보도로 공격받은 자가 보도된 내용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반박권이라는 특성이 있어(조소영, 2006b), 민법 제764조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과 달리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 요건이 필요한데도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5년 「언론중재법」 입법 당시에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내용으로 무과실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언론사의 위법성 입증 등의 중간책임, 입법 또는 피해자 입증 책임 경감, 언론사 과실 추정 등의 완화된 방법 도입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소영, 2006a). 왜냐하면 허용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적절히 전보한다는 현실적 필요성과 취지에 따라 위험책임을 확대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하지만 위험책임은 신중하게 입법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06년 「언론중재법」의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결정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기존의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허위의 신문보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의 구제 제도로 피해를 구제받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신문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현실적인 현상을 지적하면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구제책은 신문사나 신문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sup>4)</sup>

한편, 학계의 다수 견해는 반박·해명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을 협의의 액세스권 또는 권리구제형 언론매체 이용권으로 설명하였다(강경근, 2004). 허영 교수는 반론권 및 해명권은 인간의 존엄성이 바탕이 된 인격권 보호를 이론적 근거로 한다고 하였고(허영, 2006, 552-553), 성낙인 교수는 협의의 액세스권으로 구현되어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 등은 언론의 공적 성격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였다(성낙인, 2006, 431). 전광석 교수는 권리구제형 언론매체 이용권은 언론기관이 보도를 통해 개인의 인격을 침해했을 때 이를 구제하는 방법이 되므로 관련한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전광석, 2006, 276). 또한, 염재호 교수는 반론권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반론권은 사상의 자유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언론과 피해자에게 대등한

4) 현재 2006.6.29.2005헌마165 등

무기를 제공하여 언론자유 발전을 가져온다”고 평하면서 “반론권으로 인해 뉴스미디어가 위축된다는 것은 거의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Youm, 2008).

그러나 최근에는 문재완 교수가 반론권이 인격권 피해구제의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여론 형성의 객관적 제도라는 점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어느 쪽이 더 중시되는지에 따라 반론권의 헌법적 근거, 주체 및 보호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문재완, 2023). 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반론권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10조, 제17조,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찾고 있고,<sup>5)</sup> 박용상 변호사는 반론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화한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된다고 보았으며(박용상, 2008), 한수웅 교수는 일반적 인격권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 결정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파악하며(한수웅, 2021), 정종섭 교수는 반론권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의 인격권 및 헌법 제21조 제1항 의사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하였다(정종섭, 2010, 586). 그런데 문재완 교수는 반론권 자체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권리의 인정에서부터 구체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법률상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문재완, 2023, 27). 그리고 그는 만일 반론권이 인격권의 피해구제적 수단이라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국가기관은 반론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이기에, 반론권은 인격권의 피해구제적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2. 그 밖의 논의

조정신청 기간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조정신청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기사의 실질적 수명이 무한대인 디지털 환경에서 조정신청 기간을 보도 후 6개월로 한정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윤영철, 2015, 10-11).

또한, 현행 추후보도청구제도의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가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으면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를 마치 오보인 것처럼 오인하기가 쉬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현행 추후보도청구제도에 따르면 언론은 입증 가능한 사실에 대한 보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에게는 앞선 보도 전체가 허위 보도인 것처럼

5) 헌재 1991. 9. 16, 89헌마165, 판례집 3, 518, 526~2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여겨져서 보도 대상자는 모든 부분이 결백한 반면, 언론보도에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형식하에 있다는 것이다(윤진희, 2019, 124).

### III. 국내 반론권 판례 동향

#### 1. 국내 언론피해구제 시스템<sup>6)</sup>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발생한 피해에 따른 구제 수단은 여러 방식이 존재한다. 구제 수단을 크게 나누면, 형사적 구제 수단과 민사적 구제 수단 그리고 특별법에 따른 구제 수단으로 구분된다. 형사적 구제 수단은 고소, 고발이 있으며 민사적 구제 수단은 보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사전적 구제 수단과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과 같은 사후적 구제 수단이 있다. 특별법에 의한 구제 수단은 언론중재법을 근거로 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고 저작권법, 표시광고법 등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한편, 실체적 구제 수단으로는 구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 금지 청구 등이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실체적 구제 수단으로서 금전적 배상이나 위자료의 지급,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 등이 주로 이용된다.

#### 1) 손해배상의 청구

##### (1) 법원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만일 보도가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6) 이재진 (2015).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317쪽에서 330쪽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언론의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과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2) 언론중재위원회

2005년 제정되고 2009년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근거하여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명예 또는 기업의 신용 등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외에 영업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손해와 언론보도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의 손해 입증 등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근래에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액의 직권 상정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언론중재위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은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추후보도청구 사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다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를 먼저 한 때에는 위 청구들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론사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때 조정신청은 변호사가 아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도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른 청구와 마찬가지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른 것을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 결정에 따라 언론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언론사가 그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2) 정정보도의 청구

정정보도문을 통한 피해구제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와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의 두 가지 구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정보도는 보도의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개념상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 (1) 언론사에 직접 청구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언론사에 직접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의 보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신청

언론중재위에 신청하기에 앞서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는데 언론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정보도를 위한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미디어는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이다.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 조정·중재 대상이 된 포털은 뉴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기사제공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유통한다는 측면에서는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이라 보기 어렵지만, 그 영향력이 언론에 준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 절차와 관련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미리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 관계 및 수권 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3)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신청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언론사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을 언론중재위의 종국적 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인 유형, 신청 가능 미디어, 신청 가능 기간 등에서는 조정과 차이가 없다. 신청인은 중재를 처음부터 신청하거나 조정 계속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재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 결정에 따라 언론사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조정성립과 마찬가지로, 언론사가 그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4) 법원에의 정정보도 청구의 소 제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외에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계속 중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 청구 등 소 상호 간에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의 주 사무소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이 되므로 언론사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병합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금전 채권에 기한 청구이므로 의무 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 즉 원고인 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무상 통상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관할에 따라 소 제기를 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 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외에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불복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한 때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 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는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와 취소 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 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 2. 국내 언론피해 판례 분석

이재진(2015)에 따르면,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 언론중재위가 설립되기 직전인 1980년까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은 단지 9건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1981년 반론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 12월까지 도출된 대법원 판례는 40건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40건의 판례 중 12건에서 원고가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하여 원고 승소율은 약 30.0%이며,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번복되거나 파기 환송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론 및 정정보도 판결의 특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하게 살펴볼 특징은 ‘반론권 실행 방식’, ‘사실적 주장’, ‘공인’에 대한 판단이다.<sup>7)</sup>

반론 및 정정보도 판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정한 판례들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집권 중인 2023년 7월 말 현재까지 약 6년간 판례들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http://glaw.scourt.go.kr>)와 법률 전문 포털 사이트 로앤비(<http://www.lawnb.com>), 케이스노트(<https://casenote.kr/>)에서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검색어로 하여 찾은 판결들이다.

판례 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사건을 구분하여 검색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소송을 할 때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함께 요청하여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판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판례정보 검색 사이트 세 군데를 교차 검색한 결과, 대법원판결까지 이루어진 9건의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9건의 판례는 아래의 <표 2-1>과 같다.

<sup>7)</sup>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반론권 실행 방식’, ‘사실적 주장’, ‘공인’에 대한 판단은 기존의 반론 및 정정보도 판례 분석 연구(이재진, 2015)에서 채택한 분석 기준 중 세 가지다.

〈표 2-1〉 분석 대상 판례

구분	최종판결 연도	원고 승/패	판례번호	원고	피고	법원 주문
1	2017	패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374	명동교자	채널A	
		승소	서울고법 2015. 11. 20 선고 2015나2009002, 2009019 병합			
		패소	서울중앙지법 2015. 1. 21. 선고 2014가합45640, 45657 병합			
2	2017	패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자	전주MBC	
		일부패소	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3나2554			
		승소	전주지법 2013. 8. 14. 선고 2009가합975			
3	2019	일부패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08843, 208850, 208867 병합	아웃도어·스포츠 제품 제조 및 판매 회사	한겨레신문 등 6개 언론사	반론 보도문
		일부패소	서울고법 2016. 12. 23 선고 2015나2060359, 2060373, 2060366 병합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5. 9. 23 선고 2014가합484919, 515900, 515917			
4	2019	패소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06949	민언련	채널A 조영환 중북좌익 척결단 대표	
		일부승소	서울고법 2015. 12. 18. 선고 2015나2008030			
		패소	서울중앙지법 2015. 1. 14 선고 2013가합522584			
5	2019	승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82100 외 병합	(전)아리랑 TV 김모 편집팀장	경향신문 외	정정 보도문
		승소	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나2000108 외 병합			
		승소	서울중앙지법 2016. 12. 9. 선고 2016가합6618 외 병합			
6	2022	패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이명박 전 대통령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패소	서울고법 2022. 4. 8 선고 2021나2035620			
		패소	서울중앙지법 2021. 9. 8 선고 2018가합587562			
7	2022	패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종교단체 (선교회)	인터넷신문 사업자	
		패소	서울고법 2022. 2. 11 선고 2020나2047381			
		패소	서울서부지법 2020. 11. 11. 선고 2018가합41856			
8	2023	패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뉴스타파	
		일부승소	서울고법 2022. 10. 14 선고 2021나2027667			
		패소	(사건번호 미확인)			
9	2023	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86294(반론보도청구)	손혜원 전 의원	SBS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44447			
		일부승소	(사건번호 미확인)			

총 9건의 판례 가운데, 최종심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82100 외 병합<sup>8)</sup> 판결이 유일하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8) 대법원2019. 12. 27 선고2017다282100, 2017다282117, 2017다282124, 2017다282131, 2017다282148, 2017다282155, 2017다282162, 2017다282179, 2017다282186(병합) 판결

9건 중 6건이지만, 최종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패소하여 최종적으로는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1) 반론권 실행 방식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이때, 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는 상관없고,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는다(동조 제2항). 피해자와의 개별적 연관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형식적 권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한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달리,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보도청구권과 차이가 있다.

한편, 언론중재법 제17조에서 추후보도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제1항)는 내용이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대법원의 판단에서도 반론보도문이나 정정보도문이 어떻게 게재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고려한다. 선행연구(이재진, 2015)에 의하면,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37278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63138 판결).

본 연구에서 살펴본 9건의 사건 가운데,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정정보도를 주문한 판결(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82100 외 병합)은 해당 사건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가합6618 외 병합) 재판부가 주문한 정정보도의 형식과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경향신문> 등이, 아리랑TV

김모 편성팀장이 2015년 9월 〈조인어스코리아(Join Us Korea)〉라는 양방향 퀴즈 프로그램 시즌2 외주제작자를 결정할 당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아리랑TV 김모 편성팀장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다(〈표 2-1〉 5번).

대법원에서 인용한 1심에서 내린 정정보도문에 관한 판단을 보면, 피고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와 활자체로 1회 게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상의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상단 기사 목록에 정정보도문을 [ ] 안에 그 제목을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병합한) 다른 사건 기사들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였다.<sup>9)</sup>

이와 달리, 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여 정정보도문 게시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일부 패소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일부만 인용한 사건이 있다. 아웃도어·스포츠 제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08843)은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484919)과 달리, 기사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지 관리인의 근로자 폭행 부분에 관한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만을 일부 인용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5나2060359)의 판결을 확정했다(〈표 2-1〉 3번).

해당 사건의 항소심이 주문한 반론보도문의 실행 방식은 피고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제8면에 제목 및 본문을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반론보도문을 1회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상단 메인 기사 아래의 기사 목록에 통상의 기사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9) 해당 정정보도문은 “아리랑TV 입찰 비리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이란 제목 하에 “(인터넷) 경향신문은 2016.3.10.자 [단독] ‘방석호 시절 아리랑TV 입찰비리 특감, 봐주기로 끝나...’, 3,13.자 [단독] 아리랑TV 12억 투입한 양방향 방송 실제 참여자 수십명’, 3,14.자 ‘방통위, 아리랑TV 10억원대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및 ‘방통위·금융위, 아리랑TV 입찰비리 ‘받아쓰기 감사’ 각 기사에서 아리랑TV 김모 편성팀장이 특정업체가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비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아리랑TV 김모 편성팀장은 입찰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고 아리랑TV의 입찰과정에도 비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이다. (URL: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_e/202002032000011#c2b](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_e/202002032000011#c2b)).

반론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반론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10)</sup>

이 외에,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서는 원고가 패하였으나 1심 또는 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정정보도 실행 방식에 대한 설시가 있는 판결의 사례를 보면(〈표 2-1〉 1번), 칼국수로 유명한 음식점 ‘명동교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고명으로 사용했다고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에 대해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09002)은 1심을 취소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sup>11)</sup>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 후 10일 이내에 피고가 방송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하였다.<sup>12)</sup>

〈전주MBC-TV〉가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의 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09가합975)도 상기의 〈채널A〉 사건과 동일한 형식의 정정보도문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게시할 것을 주문하였다(〈표 2-1〉 2번).

이 밖에 〈채널A〉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을 ‘종북세력’으로 묘사했던 사건에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8030 판결)은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표 2-1〉 4번). 사건의 개요는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서 2013년 5월 종북좌익척결단 조용환 대표를 출연시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5인방’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민언련에 대해 ‘강정구와 송두율을 비판하는 언론을 비판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한다’라며

10) 해당 반론보도문은 “한겨레신문은 2014. 8. 26. “터무니없이 임금 낮아도 재봉틀이 돌아가는 이유”라는 제목 아래, 영원무역 방글라데시 공장의 관리자들이 2010. 12. 11.자 소요 사태 과정에서 직접 또는 현지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며,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인터넷 한겨레신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원무역은 영원무역 방글라데시 공장의 관리자들이 2010. 12. 11.자 소요 사태 과정에서 직접 또는 조직폭력배를 고용하여 근로자들을 폭행하거나 중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이다.(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379.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379.html)).

11) 이장호 (2016.01.07). [판결] ‘명동교자’ 2심서 ‘먹거리 X파일’에 뒤집기 승. 〈법률신문〉. (URL: <https://www.lawtimes.co.kr/news/97798>).

12) 항소심 재판부가 주문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본 방송은 지난 2014.7.4자 ‘F’라는 제목으로 제보자가 제시한 D 소재 유명 칼국수 집의 닭고기 고명을 취재하여 보도하였으나, E가 유통기한이 경과 되어 폐기되어야 할 닭을 사용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이었다.

‘우리나라 안보를 해치는 일련의 선동을 줄기차게 해왔기 때문에 중북세력의 선동 세력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용환 대표는 ‘(민언련이) 북한 노동당 통전부 225국의 컨트롤을 받는다’라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언련은 “강정구·송두율 교수를 ‘마녀사냥’한 언론을 비판한 것을 중북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며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위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 주문한 정정보도문의 실행 방식을 보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00경 방송하는 프로그램 시작 첫 화면 상단에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을 24급 고딕체 활자로 게재한 다음, 그 제목 아래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18급 명조 활자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보도문을 원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게 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상단 및 프로그램 홈페이지의 첫 화면 상단에 상기와 같은 기재 크기 및 종류의 활자(“바로잡습니다”란 제목은 24급 고딕체 활자, 정정보도문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 자막)로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13년 5월 6일자 프로그램 방송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sup>13)</sup>을 삭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비하여 정정보도의 실행 방식에 글자 크기와 글자체까지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주문을 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방송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삭제하라는 주문을 추가한 사례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법원에서 명령한 정정보도 실행 방식을 정리하면, 지면 신문 즉, 인쇄매체에 대한 정정보도문은 판결 후 7일 이내에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와 활자체로 1회 게재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기사의 경우 판결 후 7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상단 기사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반론보도문의 실행 방식을 보면, 정정보도와 유사하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면 신문 해당 면에 반론보도의 제목과 본문을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상단 메인 기사 아래의

13) 'H'이란 제목의 게시판에 'A' 명칭이 보일 때부터 화면 하단에 '의 중복 활동은?' 이란 자막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라.

기사 목록에 반론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위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로 표시되게 하며,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반론 대상 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우리 대법원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실행 방식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정정보도문은 판결 확정일 후 10일 이내에 피고가 방송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화면 상단에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도록 주문한 경우가 있었으며, 정정보도문의 제목 글자 크기와 활자체까지 정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 영상에서 문제 부분 삭제를 명한 하급심도 있었다.

## 2) 사실적 주장에 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 모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 보도가 사실적 추정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야 한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사실적 주장과 주관적인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 반론권은 사실적 주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sup>14)</sup>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1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설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sup>15)</sup>은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구별 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는 원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에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보도가 게재한 문맥에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실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타인의 발언 내용에 관한 보도가 미디어의 독자적인 평가를 보도했는가 아니면 그 발언 내용을 사실로써 보도했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 작자 또는 발언자 자신의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은 비록 일간 신문이 한 개인의 말을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인쇄되었다면 그 신문은 기사의 기사에 있어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타 다른 사실적 주장들은 ‘경찰관의 말’이나 ‘경찰 보고서’ 등에 근거한 기사 또는 정부 기관이나 전문 연구소 등의 공적 기록 등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다. 또한 기사 내용이 인터뷰나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전문가의 언어나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기사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만일 기사의 내용이 기고자의 사상이나 평가의 표현이라면 이를 게재한 언론은 반론권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이재진, 2015).

본 연구에서 살펴본 9건의 대법원판결에서 판단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 2-2>와 같다.

**<표 2-2> 분석 대상 판례의 사실적 주장 및 의견표명**

	연도	원고 승/패	판례번호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1	2017	패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374	사실적 주장: 채널A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음식점이 냉장 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라고 사실을 적시
2	2017	패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사실적 주장: 보도 중 밤새 중증 지체 장애가 있는 원생들의 손과 발을 묶거나 두 손을 뒤로 묶어 놓았다는 사실 적시. ‘전쟁포로처럼’, ‘밤이 새도록 결박된’,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등의 다소의 강조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

15) 대법원 2011.9.2. 선고 2009다52649 판결

연도	원고 승/패	판례번호	사실적 주장/ 의견표명	
3	2019	일부 패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08843, 208850, 208867 병합	<p>사실적 주장: 공장 여성 노동자의 급여는 남성들보다 더 낮은 수준은 사실/ 보조의 점심시간은 미싱사 등 다른 노동자들보다 2시간 늦은 오후 2시부터 딱 30분 동안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 점심시간 차별 부분은 지엽적인 내용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p> <p>의견표명: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관리자에게 욕설을 듣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에는 주관적 경험 내지 느낌이 혼재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나 의견을 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화장실 사용 제한 부분은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반론보도의 대상이라 할 수 없음.</p>
4	2019	패소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06949	<p>의견표명: 채널A 출연자 조영환이 원고 민연련을 중복 단체라고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의견표명으로 볼. '중복'이라는 말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함.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중복'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복'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움. 피고의 발언은 원고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p>
5	2019	승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82100 외 병합	<p>사실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프로그램 시즌2의 외주 제작업체로 선정되도록 이 사건 입찰의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 허위 사실로 판단.</p>
6	2022	패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p>사실적 주장: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함. 피고들이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증거의 내용과 일치하며, 해외계좌 추적 취재 결과 실명 비자금 계좌로 지목되었던 계좌의 주인이 원고와 무관하고 차명 비자금 계좌로 지목되었던 계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명확히 보도되었으므로,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p>
7	2022	패소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p>의견표명: 원고인 종교단체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격 관심의 대상이 된 원고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p>
8	2023	패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p>사실적 주장: 뉴스타파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검찰 출신 박수중 변호사가 주진우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함.</p> <p>의견표명: 주진우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p>
9	2023	패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86294 (반론보도청구)	<p>사실적 주장: SBS는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라고 연속 보도함. 재판부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 이미 충분히 반론보도가 이뤄져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봄.</p>

사실적 주장에 관한 판단에 있어 하급심과 대법원의 이견이 있었던 경우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채널A> 및 출연자의 분쟁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06949)과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뉴스타파>의 분쟁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이다.

<채널A>와 민언련 분쟁 사건(<표 2-2> 4번)에서 항소심은 피고 조영환이 원고 민언련을 중복세력이라고 하여 허위 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방송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았고, 그러므로 피고 <채널A>는 이 사건 방송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에는 민언련이 중복세력이라는 방송 내용은 진실하지 아니하므로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자막 및 낭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피고 조영환 등의 발언은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주목하였던 나름의 몇 가지 사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중복’이라는 말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며,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중복’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중복’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피고의 발언은 원고가 그동안 취해 온 행보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

대법원과 원심의 판단이 달랐던 또 하나의 사례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뉴스타파>의 분쟁(<표 2-2> 8번)인데, 피고 <뉴스타파> 기자는 검찰의 수사대상자였던 검찰 출신 박수중 변호사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검사 22명 중 통화 횟수가 20회 이상인 검사 7명이 박수중 변호사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시기를 분석하고 박 변호사와 통화한 이유에 관한 검사들의 답변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7명 중 1명인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제2 적시) 사실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뉴스타파> 기사에서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 취지 등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 및 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원고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의견표명(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대법원 판단을 유추해볼 때 우리 대법원은 언론의 숨 쉴 공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공인에 관한 판단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와는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다만, 공인에 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공적 관심사와 같은 공익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인에게도 반론권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다41094 판결).

본 연구에서 살펴본 9건의 사건에서 공인이나 공적 사안과 관련한 사건은 총 3건이다. 먼저 민언련과 <채널A> 분쟁 사건(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06949)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분쟁 사건(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그리고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뉴스타파>의 분쟁 사건(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이다.

민언련과 <채널A> 분쟁 사건(<표 2-2> 4번)에 대한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민언련이 공적 존재라고 보았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보면, 법원은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사용된 표현뿐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원고 민언련은 언론감시 활동 강화 및 시민언론 운동의 다양한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하여 온 사회적으로 알려진 언론시민단체이기에 언론과 관련한 일반 국민의 관심 사안에 관하여 오랜 기간 꾸준히 입장을 밝힘으로써 공적 토론을 제기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 행보 등에 대하여 언론이나 타인으로부터 공적인 반응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단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 민언련의 활동과 표명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분쟁 사건(<표 2-2> 6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해당 공직자(대통령)의 사회적 지위와 그 영향력에 따라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될 수 있으며,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반론 내용으로 포함되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뉴스타파>의 분쟁 사건(<표 2-2> 8번)에서 대법원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참조 판례를 제시하였다.<sup>16)</sup> 이를 근거로 본 판결은 이 사건 기사에서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에 대한 의혹 보도를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으로 인정하였으며, 만약 사실적 주장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sup>17)</sup>

16)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1. 9. 16. 선고2020도12861 판결 참조

17) 대법원 2011. 9. 2. 선고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IV. 소결

전 세계적으로 반론권을 최초로 입법한 것은 1822년 「프랑스출판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 처음 반론권이 도입되었다. 반론권은 피해자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도 있지만 언론의 보도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의도 있다. 이후 2005년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에서는 반론·정정·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였고, 2009년에는 그 대상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러 현행법이 운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만을 허용하고 논평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독일형 반론권 유형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 반론권은 대체로 적극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한때 2005년 정정보도청구권 규정 도입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사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언론사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유로 위헌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문사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적합한 구제수단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청구권”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학계에서는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가 협의의 액세스권이거나 권리구제형 언론매체 이용권이라고 설명되어 왔지만, 최근 문재완 교수는 피해자 구제 수단과 여론 형성의 객관적 수단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는지에 따라 보호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반론권은 인격권 피해구제의 수단이기보다는 여론 형성의 객관적 제도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인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성낙인 교수(1997)가 “반론권에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상충이 된다는 시각은 잘못되었고, 반론권과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사실상 동일한 기본권 내부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부분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볼만하다. 즉, 이견 없이 인정되는 반론권의 성격은 인격권에 대한 구제와 활발한 여론 형성 및 방어권 보장에 있다. 다만, 한 가지 반론권의 이해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인격권의 피해구제 수단의 성격이 강조됨으로써 자칫 반론권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이다. 그동안 이어져 온 학계와 법원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반론권은 언제나 언론의 자유가 더욱 잘 보장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에 더욱 비중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반론권에 관한 다른 논의로는 조정신청 기간이 보도 후 6개월뿐인 것은 디지털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견해와, 추후보도청구제도로 인해 정당한 범죄 관련 언론보도마저 오보인 것으로 오인되기 쉬운 문제의 개선요청 등이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반론 및 정정보도 판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집권 중인 2023년 7월 말까지 약 6년간의 판례 가운데 대법원판결까지 이루어진 9건의 사건 판례를 살펴보았다. 총 9건의 판례 가운데, 대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판결은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82100 외 병합 판결((전) 아리랑 TV 김모 편성팀장 vs 경향신문 외)이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론권 실행 방식’, ‘사실적 주장’, ‘공인’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첫째, 반론권 실행 방식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명령한 정정보도 실행 방식을 요약하면, 인쇄매체의 경우 정정보도문은 판결 후 7일 이내에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와 활자체로 1회 게재해야 하며, 인터넷 기사의 경우는 판결 후 7일 이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상단 기사 목록에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통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고,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반론보도의 실행 방식은 정정보도 실행 방식과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았다.

둘째, 사실적 주장에 관한 판단에 있어 하급심과 이견이 있었던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치적 사상과 관련한 ‘중복’이란 단어를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포함하는 범위도 변하며, 평균적 일반인뿐만 아니라 그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중복’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 또는 감수성도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중복’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민언련을 ‘중복세력’이라고 한 피고의 발언을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았다. 또한 원심의 판단이 달랐던 <뉴스타파>와 주진우 비서관의 분쟁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진우 비서관의 수사 개입 취지 등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기사에 적시되었는지 여부 및 해당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허위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의견표명이라 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판결들에서 대법원은 민언련과 이명박 전 대통령,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공인으로 판단하였다. 언론감시활동과 시민언론운동을 하는 민언련에 대해서는 그 활동과 입장 등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 기초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분쟁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과 <뉴스타파>의 분쟁 사건에서는 법원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공인으로 상정하고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압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기사에서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에 대한 의혹 보도를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표명으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판례들에서 나타난 특징은 반론권 실행 방식에 대하여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있어 차이가 없었으며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 정치적, 사상적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표명으로 판단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공적 인물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와 비판적 의견표명의 범주를 넓게 보고 인정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대법원이 언론의 숨 쉴 공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해외 주요국 반론권 동향<sup>18)</sup>

## I. 유럽연합(EU)

1974년에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가 결의한 반론권 결의안(right-of-reply resolution)은 1989년 국경을 넘는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에 따라 국경을 넘는 방송에만 적용되었고, 이 협약은 유로 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의 지침인 텔레비전 지침(Television Directive)의 기초가 되었다.

텔레비전 지침(Television Directive)은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반론권을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으로 인해 명예와 좋은 평판이 손상된 경우(reputation and good name[s] have been damaged by an assertion of incorrect facts)”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고, 개인 ‘사생활 침해 사실’이나 ‘의견의 공표’는 반론권 행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하였다.

「2003년 유럽 인권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CT 2003)」은 명확하게 반론권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론권이 협약 10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sup>19)</sup>에서 도출된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2004년 12월 유럽평의회의 권고(Council of Europe’s 2004 memorandum)는 1974년 결의안을 개정하여 인터넷 등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사항을 반영하였는데, 반론권의 정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반론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반론권 가치를 강조하였다. 2004년

18) 해외 주요국 중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의 반론권 동향은 각국의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였음

19) Article 101 Freedom of Express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States from requiring the licensing of broadcasting, television or cinema enterprises.

2 The exercise of these freedoms, since it carries with i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subject to such formalities, conditions, restrictions or penaltie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for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eived in confidence, or for maintaining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권고안에서는 반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범주에서 ‘의견의 실시(dissemination of opinions)’는 제외하고 있으며 원 기사와 다른 언어로 된 내용이나(when it is in a language different from that of the original article), 진실한 보도에 근거한 정보일 경우(information is based on a “truthful report”)에 해당하면 반론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05년 판결에서는 반론권을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면서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하여 개인에게 기회를 충족시켜 주고 일반 관심사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법원은 반론권이 언론의 편집권 행사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sup>20)</sup>

2006년 유럽의회와 유럽평의회는 반론권 권고(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Europe’s 2006 right-of-reply recommendation) 내용도 2004년의 권고와 유사하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부정확한 사실 주장에 대한 효과적 대응 수단으로서의 반론권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환경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당사자의 답변을 기술적으로 쉽게 첨부할 수 있는 점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반론권 인정은 적절한 규제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반론권을 권고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에게 부정확하거나 명예훼손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를 허용하였다. 특히, 법원이나 경찰의 부정확한 보도자료에 대해 정정권을 촉구하기도 하고 선거운동기간에 정치후보자 또는 정당에 반론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Youm, 2008).

2022년 입법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의 주요 규제 대상은 혐오 표현, 테러, 차별, 나아가 아동 성 학대 등에 관한 ‘불법 콘텐츠’ 및 ‘공정한 거래’이고,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자(특히 초대형)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기본권 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여 콘텐츠의 삭제 또는 이용 정지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연락 창구를 지정해 놓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을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전문적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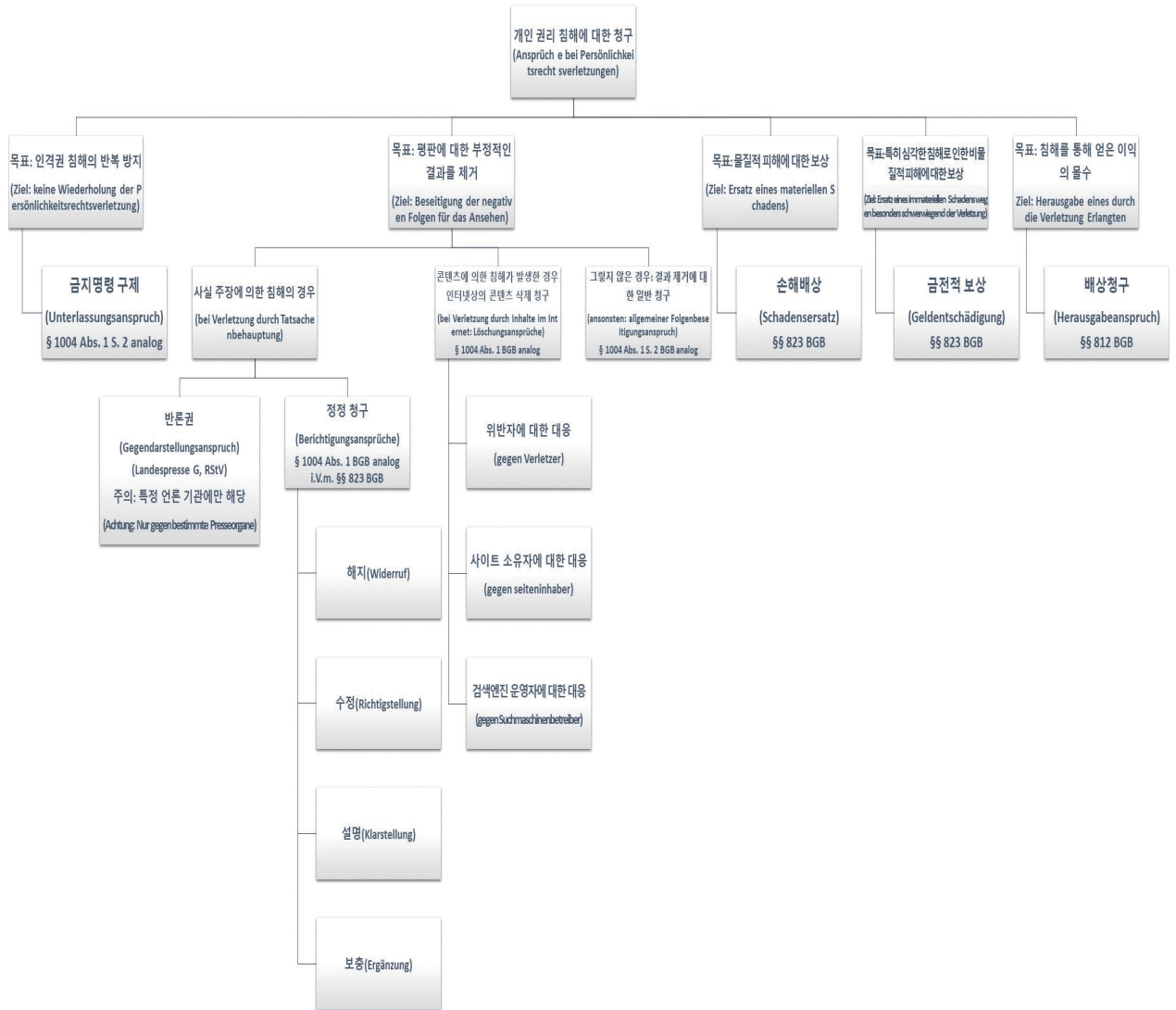
20) Melnychuk v. Ukraine, App. No. 28743/03, Eur. Ct. H.R., 6-7 (July 5, 2005)

제공해야 한다(전문 61). 이러한 기관의 예로, 테러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국가법집행기관, 유럽연합법 집행 협력 기구의 인터넷 부서와 같은 공공기관, 아동 성 학대 콘텐츠 신고를 위한 핫라인 네트워크 INHOPE에 속한 기관, 온라인에서 불법적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표현을 신고하는 기관 같은 비정부조직 및 민간 또는 준공공기관을 들고 있다(전문 61). DSA는 본질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규제 대상으로 하므로 ‘합법적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반론’까지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법 콘텐츠에 관한 반론권’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입법 내용을 갖추고 있는 법률이다.

## II. 독일

독일은 언론보도를 통해 인격권이 침해된 자의 구제를 위해 반론권(Gegendarstellungsrecht), 철회권(Widerruf), 수정권(Richtigstellung), 보충권(Ergänzung) 등과 같은 개별적인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림 3-1]은 독일의 언론보도로 인한 구제 체계이다.

[그림 3-1] 독일 언론보도 구제 체계



##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 1) 반론권

#### (1) 반론권의 개념

반론권은 미디어의 보도로 인해 개인적인 영역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고 법적 근거는 기본법(Grundgesetz)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인격권이다.<sup>21)</sup>

그러나 반론권의 폭넓은 인정은 자칫 출판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적 인격권에 근거한 반론권과 미디어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 부딪히는 곳에서 실질적인 조화를 위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대중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법적 방법이 반론권이다.<sup>22)</sup> 이 반론권은 일반적 인격권에 근거한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표현이다. 만약 반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론보도의 대상자는 단지 언론보도의 대상만이 될 뿐이고 그 자신의 인격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론권을 법적 권리로 형성할 때는 기본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을 고려한 입법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sup>23)</sup>

이러한 반론권에 의해 언론매체들은 자신의 보도 대상에 대해 보도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언론매체는 자신이 보도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언론매체는 자신이 취재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해야 한다. 반론권은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동일하게 의사를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반론권은 상대방의 의견도 동일하게 청취해야 한다는 원칙(audiatur et altera pars)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론권은 보도권보다도 더 약한 법적 지위에 있다.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개별법적인 법적 근거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서는 반론권을 기사와 동일 지면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을 일정한

21) BVerfGE NJW 1999, 483(484).

22) Dörr/Kreile/Cole (Hrsg.), Medienrecht, 3Auff., R&W, S.628.

23) F. Fechner, Medienrecht, 22. Aufl., Mohr Siebeck, S.117; BVerfGE 63, 131(142).

공간에 별도로 편집(Redaktionsschwanz)해서 할 수도 있다.

## (2) 반론권의 연혁

반론권은 연혁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기원을 두고 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프랑스의 많은 인민은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 시민권 및 인권을 위해 투쟁했고 이러한 투쟁의 바탕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었다. 당시 언론은 이제 더 이상 국가의 검열과 통제하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는 사상이 팽배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점점 남용되어 수많은 잘못된 보도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822년 프랑스는 언론법 제11조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면 “답변할 권리”에 해당하는 “droit de réponse”라는 제목으로 사실적 주장과 평가에 대한 응답을 언론사에 하도록 허용했다. 당시 이 반론권의 이론적 근거는 ‘무기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개인이 언론의 주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1831년에 독일 연방의 언론법(Pressegesetz)에는 320페이지 미만의 모든 저술에 대한 사전 검열 규정이 있었다. 특히 신문과 얇은 출판물은 검열 당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했다. 이 사전 검열 원칙은 국가의 사상통제 필터처럼 작용했지만,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을 걸러낼 수도 있다. 당시 바덴(Baden) 주(州) 카를스루에(Karlsruhe)의 자유당은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안정화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따라서 안정화를 위한 여론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언론의 자유가 필요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검열 요건이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언론의 절대적인 자유를 선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열에 대한 회피가 필요했고 국가 통제는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사전 검열에서 사법 심사만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검열이 이제부터 덜 정치적이고 법적 요구 사항을 더 많이 준수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러나 정부 권력에 대한 애착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많은 공무원에 의해 검열은 여전히 매우 정치적이었고 법적 보호의 기회는 매우 적었다. 공식적으로 사전 검열은 국가를 보호하여 음모를 밝히고 예방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했다. 행정부에 의한 검열은 많은 경우 법원의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법원의 사후 검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1831년 카를스루에의 바덴주(州) 의회가 제정한 언론법은 언론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 언론법은 본질적으로 프랑스의 법을 모델로 했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교수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입법되었다.

프라이부르크(Freiburg)에서 칼 프롬베르크(Karl Frommberg)와 칼 폰 로텍(Karl von Roteck)은 자유주의 사상을 기초로 한 신문인 ‘데어 프라이지니게(Der Freisinnige)’를 창간했다. 프라이부르크의 28명의 시민이 창업 자본을 제공하여 1832년 3월 1일 언론의 자유가 발효되면서 창간호가 발행될 수 있었다. 2,000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이 신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 새로운 언론법이나 일간 신문의 성공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조사 결과 자유당은 악의적이고 선동적이며 모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연방 정부의 압력으로 금지되었고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언론법도 폐지되어야 했다. 당시 폐지된 언론법에는 반론권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독일에서 반론권이 입법화된 첫 번째 법률이다. 그러나 연방에 의해 이 법이 폐지되면서 효력을 잃게 되었다.

1874년 5월 제국 언론법(Reichspressgesetz)이 제정되어 그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프랑스의 언론법에 규정되었던 반론권을 제11조에 규정하여 독일 전역에 반론권이 적용된 최초의 법률이다. 그러나 1878년부터 1890년까지 시행된 이른바 사회주의법(Sozialistengesetz)은 새로 얻은 자유를 다시 상당 부분 제한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집권한 1933년 1월까지 이 법은 사실상 40년 동안 완전한 규범력을 가졌던 것에 불과했다. 결국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편집자 법(Editors Law)을 제정해 제국 언론법에서 파생된 권리(반론권 포함)를 폐지했다.

1945년 나치 독재 정권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패망으로 끝났다. 서독지역에서는 1949년 5월 24일 기본법이 발효되었다. 그때부터 언론법은 주(州)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게 되었다. 헤센주(州)는 자체 언론법을 제정한 최초의 연방 주였으며 여기에는 반론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1966년까지 다른 서독 국가들도 그 뒤를 따랐다. 동독은 제국 언론법을 폐지한 적이 없었지만 제국 언론법을 무력화하는 규범으로 제국 언론법의 적용을 배제했다. 1989년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되면서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주(州)는 서독 법, 특히 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주는 자체 언론법도 제정했고, 현재 각 주의 언론법에는 반론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나코의 캐롤라인 공주 사건은 처음으로 기사 제목에 대한 반론권을 행사한 경우였다.<sup>24)</sup> 2002년 빌트(Bild) 신문은 당시 연방 대통령이었던 볼프강 티에르제(Wolfgang Thierse)가 파리에서 가진 독일과 프랑스 의회 의원과의 회의를 보도하는 기사에서 이를 두고 납세자를

24) [첨부 2] 참조

희생시킨 “파리 파티”라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한편 이른바 “빙겐의 터키인” 판결을 통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격권과 관련하여 반론권의 중요성을 강화했다.

이처럼 독일에서의 반론권의 시작은 각 주의 신문법과 미디어법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반론권은 방송법에도 도입이 되었다. 이후 일부 주에서는 신문과 방송에 대한 반론권을 통합해서 규정했고 이러한 규정은 민영방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up>25)</sup> 그러나 독일의 경우 아직 방송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반론권은 입법화되지 않았다. 다만 방송 국가협약 제6조에는 “방송은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보도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각 주의 공영방송 연합체인 제1공영방송 ARD(독일방송연맹)의 경우, ARD 국가협약에 반론권이 규정되어 있다. 이미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방송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ARD 협약(RfStV)에 반론권을 도입한 이후 ARD를 구성하는 각 방송국은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ARD에 대한 반론권이 인정된다. 즉, ARD를 구성하는 각 방송국에 대한 개별적인 반론권은 인정되지 않고, 각 방송국은 자신의 지역에서 전송한 내용에 대해서만 반론권의 적용을 받는다. 각 주의 방송국이 자신의 지역에서 방송한 경우에만 반론권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반론권이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의 관할권과 동일하다. 즉, 각 주의 방송사가 자신의 지역에서 전송한 경우, 반론권이 이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제2공영방송인 ZDF의 반론권은 ZDF 국가협약(Saatsvertrag)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론권에 대한 원칙이 독일이나 유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방송의 영역에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모두에게 적용된다.<sup>26)</sup>

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MStV)에는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널리즘 원칙에 근거해 제작된 콘텐츠는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제1항(§ 20 Abs. 1 MStV)에 근거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27)</sup> 한편 온라인에서의 반론권은 미디어국가협약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서 제작된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에 한정해 인정된다. 즉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의 내용이 전체 또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때 인정된다. 즉 독일의 잡지인 슈피겔(Der Spiegel), 빌트(Bild) 등과 같은 온라인 대중매체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반론권으로 주장되는 내용은 반론권의 대상 보도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25) Dörr/Kreile/Cole (Hrsg.), Medienrecht, 3Aufl., R&W, S.628.

26) Dörr/Kreile/Cole (Hrsg.), Medienrecht, 3Aufl., R&W, S.629.

27) F. Fechner, Medienrecht, 22.Aufl., Mohr Siebeck, S.117.

반론권은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고 사실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한편 반론권이 제시되는 형태로 하이퍼링크를 통해 게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다수설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저널리즘 원칙에 근거해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것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온라인상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텔레미디어법(TMG)은 반론권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금지 청구권이나 삭제 청구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3) 반론권의 인정 근거

반론권은 언론보도를 통한 사실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권의 행사로서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권은 단지 방송사업자 그 자체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이 제3자에게 보도된 경우에 실현 가능하다. 즉, 제3자에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권리다.<sup>29)</sup> 그리고 반론권의 대상이 된 주장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반론권을 행사하는 자는 사실 보도가 자신에 관한 것이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반론의 내용이 전적으로 거짓이고 내용상으로 전혀 주장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론권은 형식적으로는 엄격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우선 시간적인 요건인데 보도된 사실이 신문인 경우에는 3개월, 방송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고 서명이 있어야 한다. 반론권은 사실 보도를 한 전체의 범위(보도된 신문의 지면 불량, 방송의 경우 방송된 시간)를 넘어서지 못한다. 또한 반론권의 내용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반론권은 헌법적인 요건에도 부합되어야 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개적으로 보도된 내용에 숨겨진 사실 주장은 독자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는 부가적인 표현일 경우에만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sup>30)</sup>

이러한 반론권은 이론적으로는 ‘무기 평등의 원칙(Grundsatz der Waffengleichheit)’이

28) Dörr/Kreile/Cole (Hrsg.), Medienrecht, 3Auffl., R&W, S.686.

29) F. Fechner, Medienrecht, 22.Auffl., Mohr Siebeck, S.117; BVerfGE 63, 131,142; BVerfGE NJW 2018, S. 2250ff.

30) Dörr/Kreile/Cole (Hrsg.), Medienrecht, 3Auffl., R&W, S.630.

적용되어야 한다. 즉 신문사업자, 방송사업자 그리고 미디어 사업자는 반론권이 행사될 때, 반론으로 제기된 내용이 다음 호의 신문, 방송 그리고 미디어 서비스에 동일한 분량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의 경우 반론권은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시간에 반론 주장된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소위 ‘꼬리 편집(Redaktionsschwanz)’이라고 하는 것처럼 편집자가 반론권을 집중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하는 것은 가능하다.<sup>31)</sup>

반론권은 그 성격상 매우 인격권적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청구권은 권리자의 사망 후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반론권은 재산적인 성격보다는 인격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자신이 그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이므로 재산권과 같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는 않는다.<sup>32)</sup>

#### (4) 반론권의 법적 근거<sup>33)</sup>

##### ① 일반론

연방국인 독일은 연방의 권한과 지방의 권한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과 통신은 기본법 제73조 제7호에 의해 연방의 권한이지만, 인쇄와 방송은 우정사업이나 통신에 속하지 않아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지방의 권한에 속한다.<sup>34)</sup> 이러한 결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제1차 방송판결에서 결정한 것이다.<sup>35)</sup> 다만 해외방송을 하는 도이치벨레(Deutsche Welle)의 경우는 연방에서 관할한다.

각 지방에서는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을 출판법(Landespressegesetz)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은 역시 각 지방의 공영방송 법인이 제정하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지방의 공영방송 법인은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공영방송이 국가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반론권이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 지방의 공영방송이 정하는 반론권 규정은 내용상으로 거의 일치한다.

민영방송에서의 반론권은 주 미디어법(Landesmediengesetz) 내지 각 주의 방송법에

31) Dörr/Kreile/Cole (Hrsg.), Medienrecht, 3Auff., R&W, S.630.

32) Dörr/Kreile/Cole (Hrsg.), Medienrecht, 3Auff., R&W, S.630.

33) [첨부 3] ~ [첨부 9] 참조

34) H.Gersdorf/B.P.Paetl,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f., C.H.Beck, S.1027ff.

35) BVerfGE 12, 205ff.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인정된다. 실제 미디어에 관한 수평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인쇄매체, 전파매체, 인터넷매체 등을 불문하고 실제적으로는 각 미디어 국가협약(MStV)에 의해 반론권이 인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매체별로 반론권이 인정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인데, 그 전제적인 문제는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방송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인지 민영방송인지에 따라 각각 반론권의 법적 근거와 그 요건이 달리 적용된다.

그러나 반론권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 경우에는 반론권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쇄매체라도 일회성의 성격을 가진 발표라든지, 영화필름 같은 경우는 반론권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이들 표현에 대한 반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법 제5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제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 없는 간접적 또는 유추 적용을 통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인쇄매체

각 주는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을 각 주의 주 출판법(Landespressegesetz)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래와 같다.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 출판법 제11조(§ 11 LPresseG BW)
- 바이에른주 : 출판법 제10조(Art. 10 BayPrG)
- 작센주 : 출판법 제10조(§ 10 SächsPresseG)
-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 : 출판법 제11조(§ 11 LPresseG NRW)
- 쉬레비히 홀스타인주 : 출판법 제11조(§ 11 LPrG SH)
- 함부르크주 : 출판법 제11조(§ 11 HbgPrG)
- 튀링엔주 : 출판법(§ 11 ThPrG)
-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 출판법 제12조(§ 12 BbgPG)

## ③ 공영방송

독일 각 주의 공영방송은 각 주의 공영방송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반론권도 이 주 공영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주의 공영방송은 독일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에서 국가협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권에 관한 내용은 비록 각 주의 공영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바이에른의 경우 다른 주와는 조금 다른 입법, 즉 방송은 공법인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반론권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sup>36)</sup> 각 주의 공영방송의 연합체인 제1공영방송(ARD)은 ARD 국가 방송협약 제8조 제1항 제2문(§ 8 I 2 ARD-StV)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각 공영방송의 반론권은 다음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

- 바이에른 방송(Bayerischer Rundfunk) : 바이에른 방송법 제17조(Art. 17 BayRG)
- 도이치란트라디오(Deutschlandradio) : 도이치란트라디오 국가협약 제9조(§ 9 DLR-StV)
- 헤센 방송(Hessischer Rundfunk) : 헤센주 출판법 제9조(§ 9 HpresseG), 헤센 방송법 제3항 제9호 제2문(§3 Nr.9 S.2 HR-Gesetz)
- 중부 독일방송(Mitteldeutscher Rundfunk) : 작센, 작센 안할트, 튀링엔의 경우 MDR 국가협약 제15조(§15 MDR-StV)
- 북독일 방송(Norddeutscher Rundfunk) : 함부르크, 메켈른-포퓰메른, 니더작센, 슐레비히 홀스타인의 경우는 북독일방송협약 제12조(§ 12 NDR-StV)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방송(Rundfunk Berlin-Brandenburg)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법 제9조(§9 RBB-StV)
- 자알란트 방송(Saarländischer Rundfunk) : 자알란트 방송법 제10조(§ 10 SMG)
- 남서독 방송(Südwestrundfunk) : 바덴 뷁템베르크주, 라인란트 팔츠주의 경우는 남서독방송법 제10조(§ 10 SWR-StV)
- 제2공영방송(Zweites Deutsches Rundfunk :ZDF) : ZDF 국가협약 제9조(§ 9 ZDF-StV)

36) H.Gersdorf/B.P.Paai,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l., C.H.Beck, S.1032ff.

④ 민영방송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각 주의 주 미디어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연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방송의 경우 어느 주의 미디어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는 그 방송사에 대해 주된 관할권을 가진 주의 미디어법 적용을 받는다.<sup>37)</sup>

-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9 LMedienG BW
- 자알란트 방송(Saarländischer Rundfunk): §10 SMG
- 함부르크슐레비히 홀스타인: §10 MedienStV Hbg/SH
- 작센주 : § 19 SächsPRG
- 바이에른주 : Art. 18 BayMG
- 브레멘주 : § 19 BremLMG
- 튀링겐주 : § 27 ThürLMG
- 메클렌부르크-포퓰메른 : § 30 MVRundfG

〈표 3-1〉 반론권의 법적 근거

인쇄(Press)	방송(Rundfunk)	인터넷 매체 (텔레미디어, Telemedien)
주출판법(Landespressegesetz : §10 MpressG)	공영방송 : 방송법(Landesrundfunkgesetz) 민영방송 : 미디어법(Landesmediengesetz)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 규정 없음 미디어 국가협약(Medienstaatsvertrag) : 미디어 국가협약 제20조 규정 (단 제공된 콘텐츠가 저널리즘이 근거해서 제작된 경우에 한정해서 인정)

(5) 반론권의 요건

① 요건 일반론

반론권의 개별적인 법적 근거는 미디어의 종류와 어느 주의 관할인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찾을 수 있다. 즉 연방국가인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의 권한에 따라 반론권의 법적 근거가 다를 수밖에 없고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독일에서의 반론권에

37) OLG München AfP 1998, 89(90).

대한 일반적인 요건은 개념적 징표로 나타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법률요건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반론권의 일반적 요건은 첫째 사실의 주장, 둘째 진실 여부의 비(非) 중요성, 셋째 적극적 및 소극적 정당성의 존재 여부, 넷째 정당한 이익의 존재 여부, 다섯째 내용적인 요구 사항, 여섯째 반론권의 시간적 측면, 일곱째 반론권의 적용 제외 영역, 여덟째 출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8)</sup>

## ② 구체적 요건

### a. 사실의 주장

사실의 주장은 자신의 가치관 표현과는 다르게 표현과 실제 사이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sup>39)</sup> 사실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과거와 현재에 대한 표현에 있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 주장은 의사 표현과는 달리 증거를 통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sup>40)</sup> 따라서 신문의 사실과 같이 단순히 가치관의 표현을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체성에 있어서도 독자들이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표현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sup>41)</sup>

#### [구체적인 예]

\* “튀르키예 사람들이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도시 시장의 행위는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만, 시장이 단지 “적게” 또는 “충분하지 못한”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게” 또는 “충분하지 못한”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결부된 표현이기 때문이다.<sup>42)</sup>

38) H.Gersdorf/B.P.Paál,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f., C.H.Beck, S.1009ff.

39) BVerfGE NJW 2011, 1611.

40) BGH NJW 2010, 760ff.

41) BVerfGE NJW 2004, 1235(1236).

42) BVerfGE NJW 2004, 1235(1236); Beschluss vom 17. September 2003 – 1 BvR 825/99

## b. 사실과 평가의 구분

사실과 평가의 구분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에게 보도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인가이다.<sup>43)</sup> 따라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도한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추측성의 보도라도 개연성 정도의 확실성(즉 9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 보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 결론 부분에서의 판단 등은 가치판단이기에 사실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자료를 통해 특정한 결과를 핵심적으로 표현했다면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

## [구체적인 예]

- \* 보도의 표현에 있어서 “공공연하다.”, “개연성이 있다.”, “추측된다.”, “내가 아는 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사실 주장에 해당한다.<sup>44)</sup>
- \*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해 그 여행이 전반적으로 불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서류(예를 들어 여권과 비자)를 갖추지 않고 여행했다는 것을 보도한다면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sup>45)</sup>

한편 사실의 주장과 가치관의 주장은 독일 기본법 제5조의 사상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사실의 주장에 대한 반론권을 넓게 인정하면 할수록 기본법 제5조의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사실의 주장은 흔히 가치판단과 함께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의 보도를 주장하는 측과 반론보도를 하는 측의 기본권의 실질적인 조화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렇다고 사실의 주장과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론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표현 속에서 사실의 주장과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사실적인 표현의 본질적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sup>46)</sup> 또한 가치판단에 관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독자들이 이미 과거의 사실관계로서 그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

사실의 주장과 가치판단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그 구별이 쉬운 것은 아니나, 한 가지

43) BVerfGE NJW 2017, 1617(1618).

44) BVerfGE NJW 2008, 2262(2264).

45) BGH NJW 1993, 930(931).

46) OLG Zweibrücken NJOZ 2009, 4188(4190f)

분명한 것은 보도가 총체적으로 가치판단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미 입증된 사실을 모두 배제하고 보도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

- \* 특정인 A를 과거 ‘슈타지 정보원(Stasi – Spitzel)’이라고 표현한 경우, 가치판단이 포함된 표현인 ‘정보원’이라는 것은 사실의 주장이 되지 않겠지만 과거 동독 시절의 비밀경찰 조직이었던 ‘슈타지’라는 부분은 사실관계의 주장에 해당하므로 이 표현은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sup>47)</sup>
- \*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이 있었다”는 표현은 사실의 주장이 아니다.<sup>48)</sup>
- \*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자신이 기재한 안내문을 붙였다”고 발표하는 것은 사실의 주장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다.<sup>49)</sup>
- \* 정치인이 산림보호를 위해 벌목 기계로 산림을 벌목하는 것을 비난하기 위해 벌목자를 2차 대전 시 폭탄을 투하하는 비행 조종사로 비유하면서 “벌목자를 대량학살자”라고 지칭하고 최상위의 학살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sup>50)</sup>

### c. 내부적 사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한 견해, 모티브 등과 같은 내부적 사실관계의 표현은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가 보도 대상자의 표현으로부터 나오거나 특정한 사실 묘사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 단 이 경우 이미 다른 언론에서 인용하거나 반복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보도 대상자가 직접 표현한 것에 근거하여 보도한 것이라면 비록 내부적 사실(객관적으로 다중에 의해 객관성이 검증된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예]

- \*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교도소 내에서의 일기에 근거해 “P의 교도소에서의 최악의

47) BVerfGE NJW 2002, 356(357).

48) OLG Karlsruhe AfP 2009, 267ff.

49) OLG Koblenz BeckRS 1992, 09413.

50) OLG Saarbrücken BeckRS 2010, 30220.

시간”이라고 보도의 타이틀을 잡은 것은 사실의 주장이다.<sup>51)</sup>

#### d. 보도 제목의 해석

일반적으로 언론매체는 보도 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독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제목으로 보도하게 된다. 특히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제목으로 제공한다. 보도 제목은 독일 기본법 제5조의 언론자유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헌법적 보호영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의 제목도 반론권의 대상이기에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의 실질적인 조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독일의 각 주 헌법재판소는 보도의 제목이 반론권의 대상으로서 사실의 보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보도의 내용에 관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보도인 경우에만 반론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sup>52)</sup> 종전의 연방헌법재판소는 보도기사의 제목이 반론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53)</sup>

흔히 제목에 숨겨진 표현에 대해서 반론권을 인정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난다. 거짓으로 이루어진 보도에 대해 다시 재보도를 하는 경우 ‘나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확신한다.’ 또는 ‘나는 이 보도는 명확하다고 본다’라는 정도로 나타날 때는 사실의 보도라고 인정하고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sup>54)</sup>

#### [구체적인 예]

\* 한 잡지의 제목을 “J-자기 친구를 위한 죽음의 드라마-그는 당시 자기 친구를 구조할 수 있었는가?”라고 했다. 이 제목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J가 친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를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sup>55)</sup> 그러나 이 제목은 J가 자신을 친구를 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경우는 반론권의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sup>56)</sup>

51) OLG Karlsruhe NJW-FR 2008, 856.

52) OLG Düsseldorf AfP 2008, 523(524); OLG Frankfurt a. M. AfP 2010, 478f.

53) BVerfG NJW 2014, 766(767).

54) H.Gersdorf/B.P.Paál,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f., C.H.Beck, S.1013ff.

55) BVerfG NJW 2014, 766(767).

56) BVerfG NJW 2018, 1596(1597).

## e. 그림의 게재

반론은 단지 텍스트에 의한 보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도 적용된다. 특히 그림에 그 그림을 설명하는 텍스트가 결부되었을 때 더욱더 그러하다. 또한 사진 몽타주도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사진 일부를 비현실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대상이 명백히 특정되지 않을 때는 반론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인 예]

\* 사진 몽타주의 경우로는 한 축구선수가 자기 부인과 그의 연인을 함께 “마치 같이 사진을 찍은 것과 같은 형태로 합성했을 경우”에는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sup>57)</sup>

그림 게재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는 텍스트로 해야 하나, 그림으로 반론을 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림으로 반론권 행사가 가능하다.

## f. 풍자

순수하게 풍자한 표현은 반론권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풍자적 표현에서 사실적 주장이 해석될 여지가 있어도 독자들이 이 표현이 풍자되었다거나 사실적인 주장에 관한 표현이 아이러니하게 과장되었으면 반론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독자가 의도된 사실 주장을 풍자된 표현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

## ③ 진위 여부와 무관성

헤센 방송은 진실한 보도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반론권의 대상이 되는 보도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반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짓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론권의 대상을 진실한 보도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은 기본법 제5조의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만약 진실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도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신속성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sup>58)</sup>

57) LG München I NJW 2004, 606f.

58) BVerfG NJW 1998, 1381(1383).

## ④ 적극적 및 소극적 정당성(자기 관련성)

반론권을 주장하는 자는 반론권의 대상인 보도에 관해 자기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관련성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 관련성을 가지는 자’란 해당 보도로 인해 자신의 이해관계영역에 대한 침해를 받는 개인, 기관 및 행정청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중립적이고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독자가 이해하는 정도이다. 반론권의 자기 관련성은 반론권을 주장하는 자의 주장의 강도 정도가 아니라, 독자가 그 보도를 통해 보도 대상이 특정인인지, 특정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자기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sup>59)</sup> 이 때 관심이 있는 독자가 보도에 관한 질문을 통해 보도의 대상을 특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독자가 특별한 노력 없이 일반적인 정보에 접근하여 그 보도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반론청구자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sup>60)</sup> 즉 자기 관련성은 청구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도된 사실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기 관련성을 찾아야 한다.

반론권의 자기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법적인 대표자이며 그 구성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언론보도가 단체에 관한 사실을 다루었다면, 그 단체의 대표자나 그 단체 자체가 당사자로서 인정되며 그 구성원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예]

\* 신문의 내용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에 있어서 신문사의 편집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려면 보도된 그 신문에서 발행인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야 자기 관련성이 있어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sup>61)</sup>

## ⑤ 정당한 이익

반론권은 반론권이 행사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반론권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59) OLG Düsseldorf AfP 2000, 470ff.

60) OLG Düsseldorf AfP 2000, 470ff.

61) OLG Hmb AfP 2008, 314f.

반론권 행사에 관한 결격사유는 일반화되어 있다.<sup>62)</sup> 반론권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도한 자가 그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 보도했다면 이것은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고 추정한다.

반론권 행사의 주요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 a. 명백한 거짓

언론이 재판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더 이상의 불신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또는 명백히 거짓임에 대한 증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sup>63)</sup>

이와 더불어 명백하게 거짓인 보도의 경우에도 반론권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해당 보도가 거짓임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론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반론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원 보도가 명백히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반론권의 대상이 되는 보도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보도했음을 증명해야 한다.<sup>64)</sup>

#### b. 명백한 오해

반론권이 명백히 거짓인 보도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명백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 c. 인격권 비(非)침해

반론권은 대상 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즉 반론권은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려는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주장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를 인정하려면 특정 문구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전체를 통해 판단해야한다.

사진도 마찬가지다. 사진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 문제는 크기, 수량, 시간, 장소 등을

62)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63) BVerfG NJW 2008, 1654(1656).

64) H.Gersdorf/B.P.Paal,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f., C.H.Beck, S.1016ff.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법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반론권 행사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보도로 인해 법인의 전체적인 신뢰성과 기능 수행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켜야 한다.<sup>65)</sup>

#### d. 보도에 대한 동의

반론권은 반론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스스로 동의하여 인터뷰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뷰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언론사가 요구한 것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 반론권 청구자의 의견

반론권은 무기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무기 평등의 원칙이 실현된 경우에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론권을 청구하는 자가 이미 이전의 보도에 대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경우에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sup>66)</sup>

그러나 반론권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반론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전에 방해받았다면 이후 보도에 대한 반론권은 인정된다.<sup>67)</sup>

#### f. 반론 대상 보도의 철회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가 종국적으로 철회되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반론의 대상인 보도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 오류가 시정되어 게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반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독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하고 올바르게 시정이 한해 제한된다.<sup>68)</sup>

#### g. 인쇄 방식의 결여

출판과 관련하여 반론권은 언론보도가 인쇄매체를 통해 나갈 때만 가능하고, 읽을 수 없는 전파방식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sup>69)</sup>

65) VerfGH Bln AfP 2008, 593

66) H.Gersdorf/B.P.Paál,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f., C.H.Beck, S.1017.

67) BVerfG NJW 2018, 2250.

68) H.Gersdorf/B.P.Paál,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f., C.H.Beck, S.1018.

69) 방송에 대해서는 개별 방송법상의 반론권 적용을 받는다.

### ⑤ 내용적인 요건

반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요건에 더하여 주장에 대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인이 올바른 형식과 내용으로 반대 진술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반론권이 성립할 수 있다. 반론권의 주장에 관한 결정에서 소위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Alles-oder-Nichts-Prinzip)”이 적용되므로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론권 제기 전체가 무효가 된다.<sup>70)</sup>

#### a. 이의제기 신청서의 내용 요건

반론권의 주장을 하려면 주장하는 내용이 해당 보도에서 반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쟁의 여지가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반론권을 인정받기 위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호한 설명은 생략한다.

#### b. 가능한 범위와 반론의 내용

반론권은 반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한해 인정되며, 보도된 내용에 한정된다. 따라서 명백히 사실이 아닌 반박 진술의 경우에는 반론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반론을 주장하는 내용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의견표명에 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 의견표명은 반론권의 대상이 아니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적인 주장이 근거에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은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반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은 오해가 없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도된 내용에 포함된 평가가 정당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보도된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의 진실성에 초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반론권의 행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sup>71)</sup>

70) F. Fechner, Medienrecht, 22.Aufl., Mohr Siebeck, S.120.

71) H.Gersdorf/B.P.Paal,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2021, 2Aufl., C.H.Beck, S.1020.

### ⑥ 형식적인 요건

반론권을 신청하려면 공식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우선 서면 양식 요건이 적용되므로 청구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원본 서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팩스를 통한 반론권의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 변호사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서명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연방과 각 주에 따라 다르다. 반론 신청서는 상대 당사자에게도 전달되거나 접수되어야 하며, 이 경우 독일 민법의 일반 조항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인쇄매체에 대한 신청서는 발행인이나 편집자에게 도달해야 하며, 이때 특정인을 지칭할 필요는 없다. 방송의 경우에도 해당 방송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각 방송사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은 다르다. 한편 반론 신청서를 받은 언론사는 반론을 청구하는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신청서를 즉시 반론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 ⑦ 반론권의 시간적 요건

반론은 독자가 기사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때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기사가 게시된 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다.

많은 각 주의 법률에서는 반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보도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상관없이 반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인쇄매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사 게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방송매체인 경우에는 보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텔레미디어) 보도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일로부터 늦어도 6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글이 처음 게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반론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회피할 수 없는 책임으로 인한 때에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온라인에 게시되었으나 반론권 요청 시점에 삭제되었다면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반론 신청을 받은 발행인이 숙고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은 짧다. 대부분의 주 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2주의 기간이 적용되고 베를린법원은 10일이 주어진다.

⑧ 반론권 게시 유형

반론권 청구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사자는 반론문을 게시할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무기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의 반론권이 최초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

또한 동일한 청중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초 보도와 동일한 지면 또는 방송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초 보도가 1면에 게재된 경우 반론문도 1면에 게재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반론문은 최초 보도와 동일한 글꼴을 사용하는 등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는다.

인터넷매체 분야에서는 국가미디어협약 제20조 3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론문은 최초 보도와 연결하여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연결”은 최초 커뮤니케이션 바로 근처에 반론문을 참조하는 링크를 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방송 분야에서는 반론문을 반드시 낭독해야 한다.

2) 정정보도청구권

언론보도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사람은 정정보도청구권(Berichtigungsanspruch)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전부 삭제 신청하는 철회권(Widerruf), 보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권(Richtigstellung), 또는 보충권(Ergänzung)을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이처럼 세 권리의 상위개념이다.<sup>72)</sup>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된 기사를 수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다.

정정보도청구권(Berichtigungsanspruch)		
철회권(Widerruf)	수정권(Richtigstellung)	보충권(Ergänzung)

72) F. Fechner, Medienrecht, 22.Aufl., Mohr Siebeck, S.121.

## (1) 철회권

철회권은 민법에 근거하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이다. 철회권은 독일 민법 제823조 이하와 민법 제1004조 제1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청구권 행사의 법적 요건은 민법 제823조, 제824조, 제826조 그리고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르다. 즉 권리가 침해된 자의 구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므로 침해된 내용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각각 다르다.

철회권은 이미 보도된 기사를 완전히 제거하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진실이 아닌 사실 보도에 대해 인정된다. 과거 및 현재의 접근 가능한 사실 보도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순수한 의사 표현의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 표현은 기본법 제5조의 사상표현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언론과 독자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상표현이 전적으로 거짓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중요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을 때에는 철회가 가능하다.<sup>73)</sup>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 주장에 대한 거짓 증명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철회권은 진실에 대해서는 행사되지 못한다. 따라서 민사 소송절차에서 철회권을 주장하는 자는 보도된 기사가 거짓임을 입증해야 한다. 거짓에 대한 입증에 대한 책임은 가치분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에서 다루어야 하며 입증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구체적인 예]

\* 예를 들어 Z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그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의 주장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입증해야 한다.

언론사가 자신들의 검증시스템을 거쳐 보도한 것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이 경우에는 보도 대상의 인격권과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허용되지 않는다. 철회권은 보도 내용이 일반인에게 지속해서 제공될 때 가능하지 이미 그 보도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sup>74)</sup> 또한 철회권은 철회권을 주장하는 자가 언론사를 조

73) F. Fechner, Medienrecht, 22.Aufl., Mohr Siebeck, S.122.

74) F. Fechner, Medienrecht, ebd.

정하기 위해서 혹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는 행사되지 못하며, 해당 사안이 다른 방법으로 구제가 될 수 없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 (2) 수정권(Anspruch auf Richtigstellung)

보도된 내용이 전적으로 거짓인 경우 철회권을 행사하여 피해구제를 할 수 있지만, 보도된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이 허위일 경우에 이 부분만을 수정하여 보도하게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수정권이다.

### [구체적인 예]

\* 정당의 재정책임자가 정당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정당의 기부금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보도된 경우,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권은 철회권과 같은 법적 근거인 민법 제1004조 제1항의 유추 적용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권은 명시적으로 보도된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도의 행간 속에 포함된 의미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즉 보도된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인상이나 인식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sup>75)</sup> 나아가 보도 내용이 모호하여 독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경우, 즉 명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된다.

### [구체적인 예]

\* 독일 가수인 우도 유르겐스(Udo Jürgens)가 플레이보이(Playboy)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캐롤라인 공주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빌트(Bild)는 이와 관련하여 명백하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내용인 “우도 유르겐스가 캐롤라인과 침대에?”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독자로 하여금 캐롤라인 공주에 대한 부정확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sup>76)</sup>

75)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F. Fechner, Medienrecht, 22.Aufl., Mohr Siebeck, S.124.

76) BGH ZUM 2004, S.211.

### (3) 보충권(Anspruch auf Ergänzung)

보도의 내용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거짓일 경우에는 철회권이나 수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사실이 빠져 있다면 이에 대한 보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보충권이라고 한다.

불완전한 사실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에 대해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신문사나 방송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보도하지만 오류가 있는 사실 보도에 대해서는 보충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예]

\* 언론사가 재판받는 피고인이 유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충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충권이 없으면 일반적인 독자는 보도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sup>77)</sup>

## 2. 판례 및 사례

### 1) 북독일방송사(NDR)의 레쉬케 TV(‘Reschke Fernsehen’) 사건

#### (1) 사건 개요

북독일방송사(NDR)의 시사 프로그램인 레쉬케 TV(‘Reschke Fernsehen’)을 진행하는 레쉬케는 2023년 2월 16일 방송에서 “율리안 라이헬트와 여자들: 섹스, 거짓말, 버리기(Julian Reichelt and the Women: Fucking, Lying, Throwing Away)”라는 제목으로 독일 최대의 잡지인 빌트(Bild)의 전 편집장인 율리안 라이헬트(Julian Reichelt)의 비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성희롱 및 성폭행에 관한 관심이 미투 논쟁(MeToo-Debatte)으로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 라이헬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시직 여직원과의 성적 관계를 맺었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에 대해 라이헬트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77) BGH NJW 1972, S.431ff.

반론권을 제기하고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 (2) 판결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다룬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쟁점은 라이헬트가 자신의 지위, 즉 독일 최대의 잡지인 빌트의 편집장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빌트에서 일하는 실습생들과 자원근무자를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 그 자체는 허용된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은 라이헬트가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라이헬트의 변호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한 취재를 바탕으로 증거에 기반하여 보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다만 보도 전체를 허용한 것은 아니고 일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라이헬트에 대한 보도의 일부에 대해서는 반론권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북독일방송사(NDR)는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론권이 인정되어 현재 소송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반론권이 제기되어 있다는 자막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2) ‘루트 캠파(Ruth Kampa)’ 사건

### (1) 사건 개요

2013년 10월 벨트(Welt) 신문은 당시 독일 공산당의 대표였던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의 옆에 서 있던 여인 루트 캠파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제목은 “기지(Gysi) 측의 비밀경찰(Stasi) 여성”이었다.<sup>78)</sup> 여기서 “동독의 비밀경찰 여성”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당시 독일 의회 하원의원이자 좌파의 원내대표였던 루트 캠파(Ruth Kampa)였다. 당시 벨트지는 캠파를 비밀경찰인 슈타지(Stasi)에서 수년간 일했다고 했으며, 당시 “동독 최고의 스파이”로 보도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동독 시절의 공산당인

78) Stasi는 동독 시절에 활동했던 비밀경찰을 의미한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 자산소멸과 캄파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캄파가 범죄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도,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자산 취급에 캄파가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캄파는 법원에 반론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2014년 2월 3일 신문은 그녀의 반론을 실었다. 반론의 내용은 “나는 1989년 이후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자산 소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였다.

## (2) 판결

이 사건은 독일 내에서 이미 반론권이 인정되었던 사건이다. 그러나 반론권의 상대방인 슈프링거(Axel Springer) 출판사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9년이 지난 후인 202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소송에 대해 캄파의 반론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슈프링거 출판사의 이의제기는 기각되었다. 슈프링거 출판사는 캄파의 반론권 행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인권재판소는 독일 사법부, 즉 베를린 상급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지지했다. 이 결정의 쟁점은 언론보도에 대한 사생활 보호의 문제이다. 언론의 자유나 사생활의 보호는 어느 한쪽이 일반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두 권리 모두 “동일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결정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법원이 자의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기사에 대해 상세하고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사에 대한 반론도 적정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럽인권재판소가 회원국 사법부의 조정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의 또다른 쟁점은 캄파가 이 기사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이다. 왜냐하면 벨트지가 이 사건을 취재할 당시 캄파에게 사실확인을 하고자 했으나 캄파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자산소멸에 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캄파가 벨트지의 질문을 거부한 것은 의미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기사가 게시되기 전에 취재 대상자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저널리즘 윤리의 일부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전에 공개된 취재 대상자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마음대로 출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취재 당시 자신이 어떠한

변호나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론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언론이 취재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해서 기자에게 제한 없이 보도할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취재 당시 보도 대상자가 침묵했더라도 보도 이후에라도 반론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3) 슈프링거(Axel Springer) 출판사의 '여배우 울리아 슈템베르거(Julia Stemberger) 불륜 스캔들 보도' 사건

#### (1) 사건 개요

빌트(Bild)는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화배우인 울리아 슈템베르거가 영화감독 디터 베델(Dieter Wedel)과 바람을 피우고 침대에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지가 최근호에서 보도했듯이, 이 사건의 배경은 흔히 선정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타블로이드판에서 많이 다루고 있었던 전 세계적인 이슈인 미투 논쟁(Me too-Debatte)이다.

이 보도에 대해 영화배우인 울리아 슈템베르거는 법원에 반론권과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슈템베르거의 변호사인 크리스티안 케르츠(Christian Chertz)는 빌트의 보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고 개인의 은밀한 내적 영역에 대한 거짓된 보도를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 판결

베를린 지방법원은 빌트가 이미 이와 관련하여 반론보도를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000유로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다. 인쇄매체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15,000유로씩 인정하였다.

법원은 기사에 실린 울리아 슈템베르거의 행위가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그대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III. 프랑스

####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 1) 프랑스 반론권(Rectifications) 관련 법률

프랑스의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sup>79)80)</sup>」은 신문, 정기간행물, 시청각 및 웹사이트 등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부정확하게 보도된 경우에 정정보도청구권(Droit de rectification)이나 반론보도청구권(Droit de réponse)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권리행사 주체 및 권리행사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정부 당국을 포함한 공권력(Autorité publique)의 수탁자<sup>81)</sup>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법률이나 정책 등에 관해 부정확하게 보도된 내용을 해당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에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신문,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시청각 분야 그리고 웹사이트 등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기사 게시 책임자에게 반론문 게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 (1) 정정보도청구권(Droit de rectification)

###### ①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정정권의 근거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정정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79)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은 프랑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에서의 공공 전시, 판매 및 모든 출판물에 대한 법적 범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조에서는 “인쇄 및 출판은 자유다.”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 공적 생활 사이트, 인용. (URL: <https://www.vie-publique.fr/eclairage/19351-liberte-de-la-presse-en-france-quel-cadre-legal>).

80) 프랑스 법령 사이트, 인용. (URL: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TEXT000006070722/2023-07-10/>).

81) 공권력의 수탁자란, 자신의 기능에 따라 제재 또는 강제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장관, 도지사, 시장, 경찰관, 헌병, 군대, 사법관, 교도관, 근로감독관, 소방관, 세관원 등이 해당한다. 프랑스 공공서비스 사이트, 인용. (UR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22>).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

제12조 : 발행인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부정확하게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수탁자 (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가 전달하는 모든 정정 사항을 다음 발행 호의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상단에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정 기사는 원래 기사 분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발행인에게는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권리행사 주체와 대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2조는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 주체를 정부 당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수탁자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보도된 기사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행본, 기타 저작물, 전단 및 비정기적인 간행물에 게시된 기사뿐만 아니라 더불어 시청각(라디오, 텔레비전 등),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법 제12조에서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부정확하게 보도된 내용과 관련 정정 기사는 원래 기사 분량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정정 기사’라는 부분을 명백히 인쇄된 기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이라는 부분은 예시가 아닌 열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라디오, 텔레비전, 웹사이트에 게시된 기사가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은 프랑스에서 크게 야기되지 않고 있다.

③ 정정 기사 게재 거부 시 처벌

정부 당국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2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게재를 요구한 정정보도문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를 위반한 발행인에게 3,7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발행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그 양을 줄이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거나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상단이 아닌 다른 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도 게재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한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의 정정보도문 게재 여부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당국이나 공공기관의 정책 등의 부정확한 보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공기관 수탁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론정보청구권, 민사소송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최근 동향

프랑스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 왔기에 반론권과 달리 그 적용 예가 많지 않으며 최근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최근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이 디지털로 확장되면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온라인 공간을 필두로 한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로 다루지고 있으며 담당 기관 역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CNIL이<sup>82)</sup> 맡고 있다.

### (2) 반론보도청구권(Droit de réponse)

프랑스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미디어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자연인(Personnes physiques) 또는 법인(Personnes morales)에 제공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 덕분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자연인 또는 법인은 해당 미디어에 자신에 관한 사실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대한 몇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

#### ①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근거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제13조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

제13조 : 발행인은 반론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거론되거나 거명된 모든 사람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의 기사에 대한 다른 처벌 및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또는 간행물과 관련하여

---

82) <https://www.cnil.fr/>

같은 형의 부과 대상인 발행인은 반론보도문을 접수하고 2일 후에 발행될 호에 해당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반론보도문 게재 시 문제의 기사와 동일한 위치에 같은 글자체로 게재하여야 한다. (중략) 반론보도문은 무료이다. 반론 보도 청구인은 초과 분량에 대한 비용 지급을 제안하여 이전 문단에서 정한 반론보도문의 길이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후략)

위 제13조를 다시 요약하면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반론문은 동일 신문이나 동일 정기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

한편,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Presse)’ 분야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후 출현한 새로운 언론매체에까지 반론보도청구권을 확장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시청각(Audiovisuelle) 분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1982년 방송법(Loi n° 82-652 du 29 juillet 1982 sur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sup>83)</sup> 제6조에 규정하였고, 둘째, 인터넷(Internet) 분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sup>84)</sup> 제6조 제4항에 규정하였다.

#### 「1982년 방송법」

제6조 :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시청각 통신 활동의 맥락에서 방송된 경우 반론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반론보도청구인은 반론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론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반론은 반론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등한 기술적 조건에서 보도되어야 한다. 또한, 반론하고자 하는 내용이 방송된 당시와 동등한 시청자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방송되어야 한다. (후략)

####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6조 제4항 :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사람은 게시된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론을 할 권리도 있다...(중략) 서비스 책임자는 반론 요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모든 사람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제의 기사에 대한 다른 처벌 및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3,750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중략) 반론문 게시 비용은 무료이다... (후략)

83) 프랑스 법령 사이트, 인용. (URL: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LEGISCTA000006089715/2023-07-10/>).

84) 프랑스 법령 사이트, 인용. (URL: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801164/2023-07-10/>).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오랫동안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의해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반론의 범위 및 형식 등의 내용에 관한 유일한 판단자가 되었고,<sup>85)</sup> 이에 따라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정당화하거나 손해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단 한 가지 즉, 문제가 된 기사가 게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 ② 권리행사 주체와 대상

### a.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주체

프랑스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회사(Sociétés), 협회(Associations) 또는 개인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통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길 원하는 개인은 변호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sup>86)</sup> 법인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법정 대리인이 행사한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은 문제가 되는 기사가 공개되고, 문제가 된 기사에 이해관계인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면으로 된 언론(Presse écrite)에 관하여서는 매우 광범위한 권리이지만, 이와 다른 미디어에서는 특정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실제로 「온라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적용되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2007년 10월 24일 제2007-1527호 법규명령(Décret n°2007-1527 du 24 octobre 2007 relatif au droit de réponse applicable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제1조 제2항과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6조 제4항은 온라인 공공통신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중재되지 않은 블로그 및 토론 포럼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블로그 및 토론 포럼과 같은 시청각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도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85)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1, 27 juin 2018, 17-21,823

86) Cass. Crim. 22 février 2000 Bull. Crim n°77

### b. 반론보도청구권 대상

프랑스에서의 반론권 인정 범위의 특징은 사실보도 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가치판단이 담긴 논평 등 모든 종류의 기사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한 그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관련 기사에 자신이 거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론권의 개시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판례에 따르면 반론권의 취지는 “정보의 모순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표현을 허용하기 위함(TGI Nanterre, 17 avril 1996, JD n° 604164)”에 있었다. 따라서 반론권은 단순히 정보의 왜곡 방지를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격권의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였기 때문에 사실적 기사 종류에 한정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파기원(Cour de cassation)이 반론권을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왔지만, 1990년대 이후 ‘반론권 남용 경계’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1994년 파리 항소법원은 ‘반론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후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디지털 경제의 신뢰에 관한 법」 제6-IV조가 반론문 게재뿐만 아니라 문제된 기사의 삭제 또는 정정 요청권을 인정하였지만, 이 조항은 위헌이 선언되었다(2004. 6. 10. 헌법위원회 제2004-496호 결정)(진민정, 2018).

그러나 반론보도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는 아니다. 즉 문제가 된 기사 또는 방송 자료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이해당사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 본점 주소의 책임자에게 문제가 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성립되며,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다.<sup>87)</sup>

### ③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시 준수사항

프랑스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은 특정 형식주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론문 게시가 거부될 수 있다. 반론의 내용에서도 법률, 도덕(Bonnes mœurs) 및 공공질서(Ordre public)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의 이익과 기자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이해당사자는 반론하고자 하는 내용 이외에 다른 주제를 다룰 수 없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반론문 규모를 준수하여야

87) Cass, Civ, 2eme, 29 avril 1998

한다. 즉, 실제로 반론문은 반론하고자 하는 기사의 길이나 기사를 유발한 발언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기사의 길이가 짧더라도 50줄은 가능하다. 반면에 반론하고자 하는 기사의 길이가 길더라도 200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반론문 게시 및 거부 시 대응

반론 요청을 받은 출판책임자는 반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론문은 이러한 반론을 야기한 기사와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문자로 게시하여야 하며, 반론하고자 하는 기사가 게시되었을 때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요청한 자가 자신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올바르게 행사한다면 반론문 게시 책임자는 반론문에 대한 본의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즉, 반론문 변경 없이 반론문 전체를 게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웹사이트상에서는 반론문을 받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이트에 반론문이 게시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서면 언론도 동일하다. 만약 일간 신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론문 접수 후 다음 호에 게재하여야 하며, 시청각인 경우에 방송사는 8일 이내에 반론 내용을 방송하여야 한다.

한편, 때때로 반론 내용 게시 책임자가 반론문을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위에 언급된 3가지 법률에는 가처분 신청 절차(Procédure en référé)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론보도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언론기관이 강제로 반론문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된 기사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거명된 이해당사자는 반론문이 게시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론문 게시 거부는 시청각 분야를 제외하고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2) 프랑스 반론권 관련 자율기구

전 세계적으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Conseils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또는 언론위원회(Conseils de presse)는 100여 개가 있으며, 이 중 가장 오래된 위원회는 1916년에 스웨덴에서 설립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18개국에 언론위원회가 존재(벨기에 2개)하고 있으며, 프랑스에 2019년 12월 2일에 설립된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 CDJM)와 2009년에 창설한 벨기에 내 프랑스어 및 독일어권 미디어 자율규제기관인 저널리즘 윤리위원회(Conseils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가 존재하고 있다.

(1)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ONSEIL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ET DE MÉDIATION, CDJM)

① 설립 목적 및 역할

프랑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는 프랑스 언론의 공신력 위기와 정보 조작 시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설립되었다. 언론인, 출판인 그리고 대중을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과 30명의 보충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의 목표는 모든 발행인과 언론인, 모든 미디어(서면 언론, 라디오 및 텔레비전 언론, 디지털 언론 및 대행사 등)와 대중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전문적인 자율규제기관으로 미디어 편집진과 대중 사이의 중재 및 조정 역할과 더불어 언론 전문가와 대중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sup>88)</sup> 하지만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는 2019년 출범 이후,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이 크게 없는 상태며, 따라서 미디어와 대중 사이의 중재기관보다는 언론계 내부의 숙의 및 윤리 교육 기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② 구성 및 위원 자격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는 정관에 따라 정해진 바는 없지만, 언론인 대표, 언론사 대표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 대표를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과 30명의 보충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자격은 아래 <표3-2>와 같다.

88) 프랑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 사이트, 인용 : 2023.7.20. (URL : <https://cdjm.org/decisions/>)

〈표 3-2〉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의 위원 자격

언론인 대표	기자 노조 지역별, 주제별 기자협회 기자협회 기자 개인
언론사 대표	인쇄 매체, 디지털 매체로 발행하는 언론사 혹은 잡지사 편집인 라디오, TV 방송사 통신사 편집인 노조 혹은 협회 편집인 개인
이용자 대표	민주주의, 대중교육,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제로 하는 시민단체 저널리즘 스쿨, 프레스클럽 대표 시민 개인의 자기 추천 위원회 가입 신청자로 사무국의 입회를 허가받은 자 기자 개인, 전직 기자 혹은 편집인 출신, 기자협회 가입자, 정치적 조직이나 해당 조직의 대표는 제외

\* 출처 : 최지선, (2022). 프랑스 최초의 언론중재기관, 저널리즘윤리중재위원회 (CDJM). 〈언론중재〉, 163호, 78.

### ③ 위원회 최근 결정<sup>89)</sup>

a. 2023년-025: 르 피가로(Le Figaro) / 버마 여행자 조언 위원회(Conseils pour les voyageurs partant en Birmanie)

2023-025 이의제기는 르 피가로(Le Figaro)가 2023년 2월 19일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시한 “언제 버마에 여행가야 할까요? 날씨, 기후... 지역별 최저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이 있다. 이의제기 신청자는 기사에서 ‘버마 군사정권의 광고 선전’의 변형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이의제기 신청자는 르 피가로(Le Figaro)가 초기 버전 기사에서 “정치 및 안보 맥락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는 이 신청 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자가 이미 소셜 네트워크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르 피가로(Le Figaro)가 해당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문장을 추가했으며, 프랑스 외무부가 해당 국가로의 모든 여행에 대해 조언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의제기 신청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89) 프랑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 사이트, 인용. (URL : <https://cdjm.org/decisions/>)

b. 2023년-023 : 워닝 트레이딩(Warning Trading) 사이트 / 오잘렌투어 스타트업(Start-up Ozalentour)

2023-023 이의제기는 2023년 2월 10일, 전문 사이트 워닝 트레이딩(Warning Trading)에서 게시한 “오잘렌투어(Ozalentour).com이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직원들이 관련 문제를 언급하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이 있다. 이의제기 신청자는 오잘렌투어(Ozalentour) 사장이 대표로 있는 관련회사이다. 이 회사는 해당 제목의 글을 집필한 저자가 회사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가명을 빌려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더불어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였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는 이 신청 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워닝 트레이딩(Warning Trading) 사이트 편집자가 가명으로 서명하였고 편집자 자신을 언론인으로 소개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자는 자신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고, 기사에 언급된 사실이 부정확하게 보고되었음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의제기 신청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c. 2023년-018 : C뉴스(CNews) - 스페인 동물 성애 합법화 의혹 영상

2023-018 이의제기는 2023년 2월 27일 C 뉴스(C News)에서 방송된 프로의 시간(L'heure des pros) 프로그램 시퀀스와 관련이 있다. 이의제기 신청자는 프로그램 소개자와 그의 게스트 출연자가 스페인이 동물 복지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동물 성애를 비범죄화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CDJM)는 이 신청 건의 판단과 관련하여 우선 방송 당시 문제의 법안이 스페인 상원에서 아직 표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판단된 동물 성애 행위가 해당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따라 확실히 차별화된 제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가 비범죄화로 축소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저널리즘 윤리위원회(Conseils de déontologie journalistique, 이하 CDJ)

## ① 설립 목적 및 역할

미디어 발행인, 언론인, 편집장,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중재(옴부즈맨), 자율규제(의견, 결정, 지침, 권고)라는 세 가지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의 정보 처리와 관련한 기존 윤리 규칙을 명문화, 개선 및 보완
2. 위원회의 존재, 운영 및 활동을 대중과 미디어 부문에 알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모든 이해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3.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불만 사항과 관련된 당사자 간의 중재를 통해 각 미디어 유형을 고려한 언론의 윤리 규칙에 따라 해결책을 도출
4. 언론 윤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 제공
5. 정부와 프랑스 공동체 의회(Parlement de la Communauté française)에 CDJ의 구성, 접수된 불만 건수, 처리된 불만 건수, 불만 처리에 소요된 평균 시간, 결정 또는 의견의 내용, 처리된 문제 및 불만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전송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윤리적 문제를 구성하는 주제, 사건 또는 저널리즘 관행을 연구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일반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저널리즘 윤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시청각 최고위원회(le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법원 및 재판소(les cours et tribunaux), 국무원(le Conseil d'Etat) 등의 기관으로부터 저널리즘 윤리에 관한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② 구성 및 위원 자격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언론계(출판사, 편집장, 기자) 및 언론계 외부(협회, 대학, 변호사 등)를 대표하는 20명의 정회원과 20명의 교체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지만 법적 사항은 아니다.

### ③ 위원회 최근 결정

a. [2023년 6월 21일 회의] 피니에 대 M. 헨리온(O. Meunier c. M. Henrion)(페이스북 및 트위터)  
 - 사건개요: 2023년 6월 21일,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에서 언론인이라고 주장한 헨리온(Henrion)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한 유명 인사의 정치 직책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자가 자신의 많은 팔로워들에게 자신을 언론인으로 소개하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언론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배포하는 콘텐츠가 정기적이고, 쟁점이 되는 정보를 검증하고 조사한 결과로서 제시하는 형태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해당 트윗과 게시물은 언론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헨리온이 그의 첫 번째 트윗에서 피니에(O. Meunier)가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임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해임이 사임 이후 총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윤리강령 제1조 검증, 제4조 진지한 조사 위반), 사임의 이유가 임신이라는 것도 확실한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언론인들이 트위터 등에 정보를 배포하면 반론권 등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소셜네트워크를 통한다고 하여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생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윤리강령 제22조 반론권에도 위배된 사건이라고 결정하였다.

b. [2023년 2월 15일 회의] 베일뤼 대 카이로스(G. Bailleux c. Kairos)

- 사건개요: 카이로스(Kairos)방송사는 2013년에 방송된바 있는 9/11 테러에 대한 의문을 다룬 보도를 업데이트하여 재방송하였다. 그런데 재방송된 이 보도는 당시 일어난 일들, 당시 언론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또한 주장된 의문들이 어떤 주장들과 상반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소개문이 2013년에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지난 시간과 해당 주제에 대한 이후의 연구 및 논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제공할 때 특정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저널리스트와 미디어는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게시하는 정보를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널리즘 윤리위원회는 카이로스 방송사가 해당 보도에서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 2. 판례 및 사례

### 1)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프랑스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전통적인 목적은 대중에게 가장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훼손과 출처 오류의 정정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프랑스 대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을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청구권을 정의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3조에 의해 규정된 이 권리는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신문에 사실과 다르게 부정확한 내용으로 거명되거나 거론된 사람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를 유발한 기사와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문자로 반론문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더불어 이러한 반론문 게재를 거부하면 반론문 게시 책임자는 제재받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적법한 형식으로 제출된 모든 반론보도청구권은 법률, 공공질서, 선량한 도덕, 공익 또는 언론인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한 수락되어야 했고, 전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했다.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가지는 기사 게시 책임자 자신이 이러한 반론문 게시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일부 기사 게시 책임자는 기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반론문을 게시하고, 반론문에 언론사의 반론을 덧붙여 구성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하게 되는 경우로서 이는 주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Isabelle Adjani)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던 잡지사 사건(1983년 1월 5일 민사 2부 프랑스 대법원판결,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du 5 janvier 1983, 81-13.374)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1983년 1월 5일 프랑스 대법원 민사 2부 판결,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du 5 janvier 1983〉

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당시 미혼이던 ‘이자벨 아자니’와 ‘새로운 파리의 일상생활(Nouveau Quotidien de Paris, 잡지)’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었는데, 실제로 침해하게 쟁점이 된 사항은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건은 다음과 같다.

---

**사실관계** : 사건은 ‘새로운 파리의 일상생활’ 잡지사가 발행하는 ‘파리의 아침(Le Matin de Paris)’ 신문이 1979년 2월 9일 자 기사에서 “지난 일요일, 여배우 아자니가 우리 옆에 앉아 있었는데, 아자니는 아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라는 구절과 함께 아자니의 숨겨진 임신을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관해 언론인들은 공공장소에서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아자니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임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사실은 자신의 사생활에 장애가 되며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잡지사에 개인정보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파리 항소법원 판단** : 원심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성도 그중 하나이므로 임신 상태에 관해 이자벨의 승인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대법원 판단** :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드러낸 임신한 여성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임신 사실이 폭로되는 경우 사생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영화배우와 같이 천성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자 자신이 관찰한 사실을 기사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자가 이자벨이 임신한 사실을 공공에 언급하였어도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술가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임신 사실은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일부분이다.

한편, 파리 항소법원은 이자벨이 자신의 임신 사실에 대해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러한 임신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자벨의 진술 후 파리 항소법원은 ‘파리의 아침’ 신문이 이자벨의 승인 없이 임신 사실을 공공에 언급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자벨의 승인을 얻어야 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 항소법원이 1981년 2월 27일 내린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극우파로 인해 반론보도청구권의 폐해가 나타났다. 즉 프랑스 정당 중 하나인 국민 연합(Rassemblement National, RN)<sup>90)</sup>의 변호사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자 전술로 삼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는 법의 정신(L'Esprit de la loi)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논쟁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을 ‘인종차별주의자(Raciste)’라고 쓰면 국민전선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반론보도청구권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국민전선(FN) 정당의 대표였던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은 자신의 정당에 대해 ‘극우(Extrême droite)’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경우 조직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여 전체 언론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빠른 절차 덕분에 적은 비용으로 일반 독자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자유 포럼(Tribune libre)’ 페이지 절반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90) 국민연합(RN)은 정치적 스펙트럼상 극우 위치한 프랑스 정당이다. 이전에는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으로 불리웠으며, 2022년 6월 총선에서 89석을 확보하며 원내 제2의 야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2) 방송매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

### ①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과의 차이

방송매체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1982년 방송법(Loi du 17 janvier 1982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제6조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 방송매체를 통해 유포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에 규정된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과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인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 기준, 방법, 기한, 청구권자 사망 시 승계, 벌금 등에 관한 내용은 「방송통신 서비스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1987년 4월 6일 제87-246호 법규명령(Décret n°87-246 du 6 avril 1987 relatif à l'exercice du droit de réponse dans 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sup>91)</sup>에서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서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과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통신 서비스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1987년 4월 6일 제87-246호 법규명령」에 따르면, 반론권을 행사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론 요청을 제출해야 하고, 반론 요청은 해당 서비스 내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서비스에서는 반론권 행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② 관련 판례

방송통신 서비스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주요 판례 중 하나는 프랑스 대법원이 2009년 10월 8일 판결한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 보호 협회(Association Société française pour la défense de la tradition, TFP)’와 ‘프랑스텔레비전1(Société Télévision Française 1- TF1)간의 소송이다.

**사실관계** : 프랑스텔레비전1(TF1)이 보도에서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

91) 프랑스 법령 사이트, 인용 : 2023.7.14. (URL: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882840/2023-07-14/>)

협회(TFP)’를 종파 운동이라고 비난하고 기적의 동정녀 메달(Médailles de la vierge miraculeuse)을 판매하기 위해 사기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였다. 이에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는 다음과 같은 반론 내용을 방송할 것을 TF 1(Télévision Française 1)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우리는 종파적이지 않고 평신도 카톨릭 신자들의 연합체이며, 목적은 기독교 문명의 기본원칙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바로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가 ‘성모님이 필요하다’라는 캠페인을 주도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기적의 동정녀 메달은 무료로 배포한다. 1830년부터 만들어진 이 메달은 누구에게나 배타적이지 않고 전 세계에 무료로 배포된다.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는 누구와도 혼동될 수 없고 어떤 실수도 불가능하다. 기적의 동정녀 메달 배포는 사기가 아니다.”

**항소법원 판단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베르사유 항소법원(Cour d’appel de Versailles)은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가 TF1(Télévision Française 1)이 보도했던 모든 내용에 관해 반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가 작성한 반론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종파적이지 아니며 사기가 아닌 소위 기적의 동정녀 메달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보도에 대한 모든 반론 내용이 없으며, 특히 자금의 목적지와 자금이 수집되는 방식에 대한 반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15일,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가 제소한 반론보도청구권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다.

**프랑스 대법원 판단 :** 프랑스 대법원은 「1982년 방송법(Loi n° 82-652 du 29 juillet 1982 sur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제6조는 ‘각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신의 명예나 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 시청각 통신 활동의 맥락에서 유포된 경우, 반론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이외에 어떠한 임의 조건도 추가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1982년 방송법」 제6조 제1항을 무시하고,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규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추가하였다고 하였다. 즉,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가 TF1(Télévision Française 1)이 보도한 명예훼손 관련 모든 내용에 관해 부분적으로 반론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소송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대법원은 위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방송사는 자신이 저지른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반론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가 기적의 동정녀 메달을 판매하기 위해 사기적인 책략을 사용하였다는 TF1(Télévision Française 1) 보도 내용에 대해 ‘프랑스 전통, 가족 및 재산보호협회(TFP)’가 ‘비영리 목적이었다’라는 주장만을 한 것은 충분한 반론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92)</sup>

### 3) 인터넷상의 반론보도청구권

인터넷과 관련하여 프랑스 입법자는 「1982년 방송법」이 아니라 서면 언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3조에 그 기반을 두고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내에 인터넷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라디오나 텔레비전(시청각물)에서 방송된 메시지가 이러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우에는 근거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1) 행사 조건

인터넷상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조건은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6조 및 「2007년 10월 24일 제2007-1527호 법규명령(Décret n°2007-1527 du 24 octobre 2007)<sup>93)</sup>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독특한 점은 반론보도 청구권자가 온라인 게시 책임자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해당 보도가 게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은 신원증명방식의 차이이다.

첫 번째 방식은 반론보도 청구권자가 반론 내용과 반론보도 청구 접수확인서를

92) 프랑스 법령 사이트, 인용. (URL: <https://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21140015/>)

93) Décret n°2007-1527 du 24 octobre 2007 relatif au droit de réponse applicable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et pris pour l'application du IV de l'article 6 de la loi n° 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때 청구권자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반론보도 청구권자가 스스로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제출하여 신원을 증명하면서 반론요청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다. 반론보도 청구권자는 특정 온라인 콘텐츠 또는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반박내용을 포함하는 반론의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제13조에 기반한 인터넷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와 같이 반론 내용은 200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론청구 대상 보도와 유사한 조건(반론하고자 하는 내용 다음에 게시, 직접 링크를 통한 접근, 동일한 게시 기간으로 대중에게 노출되어야 한다).

한편, 방송 매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에서 착안한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4조는 인터넷상의 반론보도청구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공개 게시 책임자는 반론보도 청구권자의 반론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를 15일 이내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 방법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 의무에는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이미 존재하는 정기간행물 및 방송 서비스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점은, 「2007년 10월 24일 제2007-1527호 법규명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반론보도 청구인은 게시 관리자가 반론청구 대상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데 동의한 경우, 자신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94)</sup>

## (2) 관련 판례

인터넷상의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2007년 11월 19일 파리지방법원에서 니콜라스 보날(Nicolas Bonnal)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니콜라스 보날 판사는 인터넷 내에 토론의 공간이 있을 경우의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해 판결하였다.<sup>95)</sup>

즉, 「2007년 10월 24일 제2007-1527호 법규명령」에서는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사용자가 반론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해 직접 반론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94) Basile Ader, Le droit réponse en ligne, LEGICOM, 2011/1(No46), pp.95~96

95) CNP Assurances c/ UFC Que choisir, Légipresse n° 247-III, p.265

경우 반론보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니콜라스 보날 판사는 판결에서 이러한 제한은 무엇보다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규정의 예외로서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96)</sup>

또한, 니콜라스 보날 판사는 반론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가 인터넷 토론이 이루어지는 전용 공간에서 반론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게시되지 않는 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판례는 위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판결로, 이 판결의 내용은 2009년 3월 26일 파리 항소법원 판결(Arrêt de la cour d'appel de Paris du 26 mars 2009)로 다시 확인되었다. 파리 항소법원 판사인 조엘 부와이에(Joël Boyer)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는데 즉,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6조<sup>97)</sup>에 의해 규정된 온라인 공중통신 사업자<sup>98)</sup>의 의무와 관련하여 온라인 공중통신 사업자인 ‘곰(Ours)’이 이용자의 반론을 받아들이고 게시하는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시효가 정지되거나, 또는 곰(Ours)이 반론을 게시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로 제한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 관해 프랑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내에 「디지털 경제 신뢰에 관한 2004년 6월 21일 제2004-575호 법률」 제6조의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 공중통신 사업자가 다수 있고, 실제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주 접속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9)</sup>

### 3.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한 법리적 평가

반론보도청구권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의 정당성 여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현재 프랑스 대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 있다.

96) 프랑스 법률 조문 사이트, 인용 : 2023.7.11. (URL : <https://www.legalis.net/jurisprudences/tribunal-de-grande-instance-de-paris-ordonnance-de-rele-re-19-novembre-2007/>)

97) 온라인 공중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URL :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44067469/2023-07-14/](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44067469/2023-07-14/) (인용 : 2023년 7월 14일)

98) 온라인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 미디어에 대한 편집 책임이나 본질적 책임을 가지지 않는 자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유사 개념으로 추정됨

99) Basile Ader, op.cit, p.96

첫 번째는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용된 경우이다. 즉,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1996년 11월 ‘자유(Libération)’ 일간지<sup>100)</sup>에 시계클럽(Club de l'Horloge)<sup>101)</sup>의 다음과 같은 반론문을 게시하도록 판결하였다.

1996년 6월 11일자 ‘자유(Libération)’ 일간지가 1면에 기사화한 것과 달리 ‘시계클럽’은 국민전선(FN)과 다른 성격이다. 시계클럽 회원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정당 내에서 활동하는 시계클럽 회원은 클럽과는 별개로 그들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 더불어 시계클럽 회원의 대다수는 어떤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우익 진영에 ‘공평하게’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시계클럽은 전체 우익을 위한 교리체계를 개발하는 정치 싱크 탱크로서의 소명을 지키고 있다.

두 번째는 반론보도청구권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경우이다. 즉, 파리지방법원은 국민전선(FN)의 당수였던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이 ‘자유’ 일간지를 상대로 한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 1994년 9월 29일 ‘자유’ 일간지는 르 피가로(Le Figaro) 신문의 관점을 채택하여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이 600만 명의 외국인을 공격한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에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은 ‘자유’ 일간지에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자유’ 일간지 편집국장에 의해 거부되어 파리지방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파리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는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아무리 반론보도청구권이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되더라도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인격 방어라는 토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더불어 장 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은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자신이 당수로 있는 국민전선(FN)의 논제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하려 했던 것이다.”

한편, 프랑스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법리적 평가의 전환점은 1994년 1월 19일 파리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즉, 파리지방법원 부원장인 일랭 르카바라트(Alain Lecabarats)는 원고가 제소한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100) ‘자유’ 일간지는 프랑스의 중도좌파 성향 일간지이다.

101) 시계클럽(Club de l'Horloge)은 1974년에 설립된 프랑스 메타 정치 싱크탱크이다. 우파 또는 극우파로 분류되며 민족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심포지엄의 조직과 출판을 통해 경제적 자유, 국민주권, 민족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사상적 논쟁에 개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반적이고 절대적 권리로 간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론보도청구권 소송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언론기관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였다.<sup>102)</sup>

정리하면,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반론보도청구권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사회에 적용해 왔으며, 프랑스 대법원은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을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1994년을 기점으로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법리적 평가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되지만,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목적이 인격 방어가 아닌 다른 목적(예: 정당의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언론기관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 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 IV. 영국

###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 1) 반론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 (1) 개관

영국(UK)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4대 민족 권역(nations)으로 구성된 일종의 연방국가이다. 잉글랜드를 제외한 세 개 민족 권역에는 자치 의회가 있어서<sup>103)</sup> 별도의 지방정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는 독자적 입법권을 갖고 있다. 사법 체계 역시 그에 따라 복잡한 관할권(jurisdiction)을 갖는다. 미디어 관련 법령과 규제는 기본적으로 영국 의회와 정부, 사법부에 의해 관할되나,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안과 민족 권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안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법령의 영향권에 있는 잉글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02) 프랑스 자유 일간지 사이트. (URL: [https://www.liberation.fr/evenement/1996/06/11/le-droit-de-reponse-un-droit-a-consommer-avec-moderation-seule-une-jurisprudence-reflechie-peut-eviter\\_174443/](https://www.liberation.fr/evenement/1996/06/11/le-droit-de-reponse-un-droit-a-consommer-avec-moderation-seule-une-jurisprudence-reflechie-peut-eviter_174443/)).

103) 잉글랜드는 영국 의회와 정부가 관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영국의 ‘내부적’ 복잡성뿐 아니라, ‘외부적’ 요인 역시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영국은 최근까지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이었기 때문에 유럽의회와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훈령(Directives)은 일종의 조약으로서 거의 자동으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있었다. 물론 미디어 관련 법령은 개별 회원국의 문화적 전통과 주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일정한 변형을 거치는 것이 허용되긴 했으나 ‘국경 없는 텔레비전 훈령(TWFD: TV Without Frontiers Directive)’ 이후로 ‘하나의 유럽’ 정책이 일반화됐고, 이를 디지털 시대에 조응하도록 확장시킨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훈령(AVMSD: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이르러서는 (특히 새로 회원국으로 합류한 동유럽권 국가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과 강력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유럽 시장 단일화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 등이 결합되어) 유럽연합 내부에서 회원국 간 방송 통신 정책과 법령의 일치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미디어 정책과 규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까닭에 일종의 표준화 주체로서 부각된 바도 있다.

그러나 영국은 2016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돌연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게 됐고, 그로써 유럽연합과의 탈동조화를 위한 후속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유럽연합의 법령과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얽매이지는 않으며, 특히 반론권 등과 같은 전통적인 언론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에 속해 있던 과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바이다. 다만 일부 법령과 규제 측면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영국 정부는 남아 있는 연계성을 차츰 더 확실히 제거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두었다.

대륙법과는 달리 관례와 역사를 중시하고, 국가의 개입보다는 개인 간 분쟁 해결에 치중하는 보통법(common law) 전통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은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 언론 문제는 이런 보통법의 테두리 속에서 국가 불개입 원칙을 고수해 왔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속해 있던 과거에도, 반론권 관련 법령 관점에서 보면 유럽에서 가장 느슨하고 불확실한 사례에 속했다는 점은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1989년 유럽연합 텔레비전 훈령(Directive 89/552/EC, 전술한 바와 같이 흔히 TWFD로 약칭됨)이 명예훼손적 발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론권(right of reply)을 행사할 수 있게 할 법적 장치를 회원국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최초로 반론권에 “상응하는 법적 구제책(a legal remedy equivalent)”의 충실한 보장에 관련된 요구를 공식화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영국은 이런 요구에

구체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기존 유럽연합 체제 안에서도 영국은 스웨덴과 함께 ‘반론권’과 ‘정정보도요구권(right of rectification)’을 법령화하지 않은 국가에 속했는데, 관련 법령을 이미 갖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이것이 새로울 것 없는 정책이었던 반면, 영국처럼 관련 법령을 갖추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자신의 관련 전통과 그에 대한 사법적 주권을 고수하길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기에 딱히 눈에 띄만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Koltay, 2013: p.74).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는 규제기구와 (국가로부터 방송 면허를 취득한) ‘지상파 방송사’ 사이의 협약에 따라 규제기관이 “반론을 보도할 의무”를 방송사에 지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법률에 의거하지 않은 자율규제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 후에 더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이런 자율규제적 요소는 영국의 경우에 더 두드러진다. 영국은 신문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으며 방송을 규제하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만 존재한다. 따라서 신문은 (민사소송을 제외하고) 훨씬 더 자율규제 혹은 무규제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방송은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방송 규약(Ofcom Broadcasting Code)에 따른 규제만을 적용하는데, 오프콤의 내용물 규제 역시 반론권에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통한 외적 규제보다는 각 방송사 내부의 제작 지침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중시하고 있다.

## (2) 반론권 및 정정보도 관련 법령 현황

전술했다시피 영국에는 언론매체에 대하여 반론권과 정정보도권 등을 행사하도록 강제하는 법령과 이를 대행하는 별도의 규제기관을 설치한 법령은 없다. 다만 방송 분야에 대한 규제 권한을 지닌 민간 기구인 오프콤(Ofcom)이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에 의해 설치되어 있고 이를 통해 방송사에 대한 내용물 규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론권 행사 기준 등을 포함한 내용물 규제 기준이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프콤이 제정한 방송 규약을 통해 반론권에 상응하는 조치를 방송사가 취하지 않을 경우, 그에 관련된 포괄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신문의 경우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민간 독립 기구를 통해 (방송과 마찬가지로) 반론권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신문보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그에 따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언론에 대한 국가 불개입 원칙에 부딪혀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5년으로, 이때에도 반론권 보장과 언론 품질기준 제고를 위한 법안(the Right of Reply and Press Standards Bill)이 발의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될 만큼 충분한 지지표를 얻지 못한 채 사장됐다.

이 법안은 반론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를 매개로 언론보도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반론권에 대한 정의는 제6조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부정확한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보도되었을 때” 그 내용에 연관된 당사자는 “상당히 부정확한 보도라고 볼만한 합당한 사유를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반론권(Right of reply)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sup>104)</sup> 이를 접수한 언론사가 그 불만에 동의했을 때 정정보도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언론사가 자신의 불만을 합당하게 수용하지 않거나 반론권 성립에 따른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련 위원회에 제소 및 항소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론권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행 강제 권한을 지닌 언론품질기준위원회(Press Standards Board)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 내부에 관련 판단을 전담하는 언론 품질기준심판원(Press Standards Adjudicator)을 설치하는 조항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두었다(UK Parliament, 2005).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 의원 피터 브래들리(Peter Bradley)가 발의한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면, 정부가 위원 지명권을 가진 최초의 언론 규제기관이 설립되어 신문 업계가 운영해 오던 기존의 초보적인 자율규제 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대체하면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언론이 행한 중대 오류를 시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에 대한 국가 규제를 불러들이는 뒷문(backdoor)이 될 것”이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충분한 지지세를 얻지 못했다. 교육부 차관이었던 같은 당의 데렉 트윅그(Derek Twigg)가 목소리를 높인 바와 같이, “일단 이렇게 (제한적인

104) 참고로, 부정확한 보도를 담보하지 않는 불만제기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7조 최초 불만사항 접수(Making of initial complaint)조항에는 “자신이 반박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경우, 그는 최초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는 불만사항이 접수된 경우 언론사의 응답할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단, 정정내용을 공표해야하는 의무(제9조)는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에 이행해야 하며, 반박을 포함한 불만제기에 대해서는 답변의 의무만 있고, 정정보도의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405/cmbills/039/2005039.pdf>(최종검색 2023.10.25.)

권한을 갖는) 위원회가 설립되고 나면 그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며, 언론자유라는 건 한 번 훼손되고 나면 더 급격한 악화일로(a very slippery slope)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이 더 큰 지지를 받았던 까닭이다(Rose, 2005).

반론권 법령의 도입과 관련 규제 기구의 설치는 이렇게 무위로 끝났지만 언론보도에 대한 더 높은 책임성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반론 기회의 부여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는, 2011년에 폭로된 유력 대중지의 휴대폰 해킹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지면서 꽤 오랜 기간 벌어져 온 해당 언론사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취재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사건이 있었다. 소유주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 자신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의 사임은 물론, 런던 경찰국장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로 여파가 확산됐다. 이에 대한 사법적 처벌과 언론사 자체의 시정 조치와는 별도로, 당시 캐머런(Cameron) 총리의 지시에 따라 사건의 진상 파악과 제도적 해결을 위해 설치된 조사위원회, 정식 명칭으로는 언론의 문화, 관행, 윤리에 관련된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 약칭 레비슨조사위원회(the Leveson Inquiry Committee)가 약 2년에 걸린 조사와 논의를 거쳐 언론의 윤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려는 조치를 권고하게 됐다.

그 결과로 오랜 후속 논의 끝에 2014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기관이 언론 품질기준 제고를 위한 독립기구(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이다. 본래는 법정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이 제안되기도 했고 더 본격적인 형태의 반론권 규정 등을 포괄하는, BBC처럼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에 기초를 둔 조직의 설립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언론자유에 대한 국가 규제의 위험을 들어 좀 더 느슨한 형태의 업계 자율규제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이런 용두사미 격 결론에, 그리고 이후 특히 반론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형태의 지침이 마련된 데 대해 시민사회와 학계로부터 다소간 실망의 목소리가 높긴 했지만, 2014년 출범 이후 IPSO는 과거의 유사 조직에 비해 좀 더 진전된 규제력과 성과를 보이기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착하여 가는 분위기이다.

### (3) 반론권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명예훼손법 현황

신문법이나 방송법 등에 의거하여 반론권과 정정보도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보다는 상당 부분 자율규제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통해 언론사의 편집권 보호와 피해자의 반론권 보장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반법 차원에서는 반론권에 상응하는 법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96)이 그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적 출판물에 대해서 규율하는 1996년 명예훼손법은 제2조를 통해 명예훼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합의 시도 차원에서 자신의 출판물 내용을 수정 및 사과문 게재 의사를 고소인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반론권 행사를 보장하는 장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정 제안 주체가 피해자나 고소인이 아니라 피고소인(언론사)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태의 반론권 보장 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 더 간접적이지만 실질적인 형태는 부칙1의 조건부 특권(Schedule 1: Qualified Privilege) 관련 조항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 법은 명예훼손의 절대적 조각 사유로서 법정 의사록을, 그리고 조건부 조각 사유로서 공익 차원의 보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익성에 의한 조각 사유는 비록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 공익에 부합하는 공공 사안의 보도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한다. 그러나 설령 이에 해당하는 부정확한 보도라고 하더라도, 만약 책임있는 행위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조건부 특권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책임있는 언론 행위 여부”는 고소인인 당사자의 반론(comment)을 청취하려 했는가, 그리고 그 당사자의 입장이 제대로 기사에 반영되었는가를 따져서 판단한다. 즉 기사가 당사자의 반론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렇게 얻어진 내용이 기사 속에 온당하게 반영되었다면 비록 부정확한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보도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예방적이기보단 사후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하지만, 보도 과정에서 취재 대상자의 반론권을 존중하는 언론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Koltay, 2007).

지난 2013년에 개정된 영국의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2013)은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함께,<sup>105)</sup> 언론의 자유를 보다 더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된 명예훼손법은 기존에 면책 사유로 인정되던 것들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명예훼손법의 핵심은 제1조 중대한 손해(serious harm)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중대한 손해를 입증했을 때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의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다(황수영, 2018). 다음으로 제2조 진실(Truth)의 내용을 보면, 보통법상 명예훼손적인 진술에 담긴 비방내용이 실질적 진실(substantial truth)의 문제였다는

105) 2010년 1월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선동적 명예훼손죄와 사인간 명예훼손죄의 폐지가 선언되었다(정태호, 김훈집, 2015)

것을 피고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justification) 즉,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모든 사안들이 다 진실로 입증될 필요는 없고 명예훼손적인 진술의 본질적 혹은 핵심적인 부분만 진실로 입증되면 충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비방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모두가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닌 경우라도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법률상 정당행위 규정에 의해 보완을 받아 왔다. 개정 명예훼손법은 이러한 정당행위를 명문의 규정으로 입법화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개정된 명예훼손법은 제3조 정직한 의견(honest opinion)을 새로운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fair comment)”, 즉 공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평한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원칙을 완화한 것으로서, 반드시 공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아닌 경우에도 면책사유로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명예훼손법 제4조 공익 사항에 관한 공표(Publication on matter of public interest)에서는 소위 ‘보도의 원칙(doctrine of reportage)’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만약 어떤 진술(statement)이 원고의 분쟁에 관한 정확하고 공정한 설명이거나 그러한 설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신뢰가 합리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진술로 인해 전달되는 비난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밝히려는 조치를 피고가 하지 않았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이 조항은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도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에는 주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면책되도록 하려는 것이다(허순철, 2015).

## 2) 신문에서의 반론권 관련 자율규제 기구

### (1) 새로운 신문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배경과 결과

2014년에 IPSO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1991년도에 설치되어 20여 년간 운영되어온 업계 자율규제 조직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 Commission: PCC)가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 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불만을 처리하는 수준의 대단히 느슨한 형태의 자율규제 형식만 있었다. 사실 이 기구 역시 1953년에 출범했던 기존 언론인 조직인 언론평의회(Press Council)가 언론의 윤리 기준을 제고하는 데 실패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1990년에 구성되었던 칼컷트위원회(the Calcutt Committee)의 권고로

시작되었던 바 있다. 언론평의회가 언론인의 직업윤리 기준을 세우고 이를 전파하는 데 치중했다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피해 당사자로부터 불만을 접수해서 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그 시정을 언론사에 요구하는, 좀 더 진전된 체계를 갖췄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보다는 언론사에 치우친 평결이 자주 나오는가 하면, 피해 수준에 비해 시정 조치가 너무 미약하고, 그마저도 개별 언론사에 강제하기가 여의치 않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2년에 나온 레버슨조사위원회의 의견 역시, 캐머런 총리가 “실효성이 없고 엄격하지 못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그리고 노동당 밀리반드(Miliband) 당수가 PCC를 가리켜 “이빨 빠진 푸들”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심분 동의하고 있었다. PCC의 핵심 문제는 “스스로 규제자를 자처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회적 기대는 높여 놓았지만, 전혀 규제자에 값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PCC는 그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언론사의 편집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규약을 제정하고, 언론계 인사로만 채워진 재정위원회를 통해 PCC 위원장이 선임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재무적으로든 인사적으로든 언론계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Lord Levson, 2012). 그래서 레버슨조사위원회는 PCC의 폐지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직의 설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이렇게 해서 2014년에 만들어진 조직이 IPSO(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였다. IPSO는 현재 1,500개 종이신문과 1,100개 온라인신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출연한 기금과 회원비를 통해 운영된다. 그러나 본래 레버슨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언론 자율규제를 위한 왕실 칙허장(the Royal Charter on Self-Regulation of the Press)에 근거하여 먼저 설치되었던 조직은 언론인증위원회(the Press Recognition Panel: PRP)였다. 2014년에 출범한 이 조직은 재정, 지배구조, 운영구조, 규약 등의 적합성을 따져 독립적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서의 자격을 인증해주는 기능을 표방했다. 그러나 IPSO는 이 조직으로부터의 인증을 구하지 않은 채 언론계 다수가 규합하여 회원사 시스템으로 구축한 형식을 선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나 가디언(The Guardian) 등과 같은 유력 매체는 이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면서 별도의 자율규제 기구인 언론감시단(IMPRESS: The Independent Monitor for the Press)을 수립하였고 이는 PRP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200여 개 매체가 참여하고 있어서, 1,500여 개의 매체를 아우르는 IPSO에 비해 범위나 영향력이 작다는 한계를 지닌다.

## (2) IPSO의 반론권 관련 규정과 작동 방식

2016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IPSO의 규약에는 본래 제2조에 ‘반론 기회(Opportunity To Reply)’ 조항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변경되었다. 대신 제1조 “정확성” 조항 아래에 제3항으로 재배치되었다. 즉, 반론 기회가 독자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IPSO의 편집자 실천 규약(The Editors' Code of Practice) 구성〉

- ① 정확성 (Accuracy)
- ② 사생활 보호 (Privacy)
- ③ 괴롭힘 (Harassment)
- ④ 비애와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침범 (Intrusion into grief or shock)
- ⑤ 자살 보도 (Reporting suicide)
- ⑥ 아동 (Children)
- ⑦ 성적인 문제에 연루된 아동 (Children in sex cases)
- ⑧ 의료현장 (Hospitals)
- ⑨ 범죄보도 (Reporting of crime)
- ⑩ 잠입취재 (Clandestine devices and subterfuge)
- ⑪ 성범죄 피해자 (Victims of sexual assault)
- ⑫ 차별 (Discrimination)
- ⑬ 금융 저널리즘 (Financial journalism)
- ⑭ 비밀취재원 (Confidential sources)
- ⑮ 형사재판 관련 목격자에 대한 금품 제공 (Witness payments in criminal trials)
- ⑯ 범죄자에 대한 금품 제공 (Payment to criminals)

반론권 관련 규정이 다뤄지는 제1조(정확성)는 아래와 같은 항으로 구성된다.

제1항: 언론은 부정확하거나 오도 가능성이 있거나 왜곡된 정보 혹은 이미지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기사 본문과는 상관없는 제목도 포함된다. (The Press must take care not to publish inaccurate, misleading or distorted information or images, including headlines not supported by the text.)

제2항: 현저히 부정확한 내용이거나 오도 가능성이 높은 문구 혹은 왜곡의 경우에는, 즉시 그리고 적절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정정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과문을 게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IPSO가 요구하는 수준의 주목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 (A significant inaccuracy, misleading statement or distortion must be corrected, promptly and with due prominence, and — where appropriate — an apology published. In cases involving IPSO, due prominence should be as required by the regulator.)

제3항: 현저한 부정확성에 관련하여 합당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A fair opportunity to reply to significant inaccuracies should be given, when reasonably called for.)

제4항: 내용과 그 전달 형태에 대한 편집권과 판단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만 의견과 추정과 사실 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있어야만 한다. (The Press, while free to editorialise and campaign, must distinguish clearly between comment, conjecture and fact.)

제5항: 별도의 조정 결과가 합의되거나 합의 내용이 공표된 바가 있지 않다면 연관된 명예훼손 사례에 관련된 조치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형식으로 발간되어야 한다. (A publication must report fairly and accurately the outcome of an action for defamation to which it has been a party, unless an agreed settlement states otherwise, or an agreed statement is published.)

이런 규정, 특히 반론권에 직접 연계된 제3항에 따라서, 이 반론 기회는 ‘모든 경우’에 주어지거나 문제시되는 게 아니라, “상당 수준의 부정확성(significant inaccuracies)”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이 당사자에게 심각한 추가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고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반론권이 합당한 이유로 요구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부정확성에 대한 당사자의 반론이 언론사에 전달되어 되도록 그것이 공표될 수 있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앞에 배치된 제1조 제2항은 중대한 부정확성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사후에 즉각 교정하여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정보도 의무 조항이며, 이러한 정정보도가 언론사에 요청될 수 있는 조건을 제1조 제3항에 규정함으로써, 반론권 보장과 정정보도 의무를 연계하여 부여하는 형식을 취한 셈이다. 이와 같은 제1조 제3항의 반론 기회 역시 애초에는 ‘반드시(must)’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이후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should)’라는 문구로 다소간 수위를 낮추었다고 한다.

다른 자율규제 기구인 IMPRESS 역시 반론권 관련 조항을 제1조 “정확성” 항목의 아래에 배치해 두었는데, 그 내용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반론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응답할(respond) 기회가 언론사에 의무적으로 부과될 절대적 이유는 없음을 명시하기 위함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탐사보도 등에서는 반론권이 주어질 경우, 취재원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취재와 보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론권 부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It is not obligatory to offer an individual or an organisation an opportunity to respond, and there may be times when it is inappropriate. These may include legal reasons or when it is not in the interests of investigative journalism, because it could prompt an injunction or endanger sources.). 즉, IMPRESS의 경우는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 공익성 등을 위해 반론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를 밝힘으로써, 반론권의 무조건적 보장보다는 언론 당사자의 공익적 목적이 더 중시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 PCC 시절에도 “편집자가 판단했을 때 보도의 부정확성 수준이 그리 중대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교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sup>106)</sup> 따라서 IPSO의 경우에서든 IMPRESS의 경우에서든, 분명히 반론권 부여와 정정보도 의무화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방향과 수준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이들 모두 정확성 조항 아래에 반론 기회 조항을 배치해 놓은 것은, ‘부정확성의 수준’에 대한 편집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반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거나 정정보도가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고 할 만하다.

반론권 행사와 정정보도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IPSO에 불만 접수를 할 경우, IPSO는

106) 극단주의 서적과 DVD를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서점과 언론사 사이에서 벌어진 2005년 Samir El-Alar vs. Evening Standard 판결례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1단계: 기초 평가 - 접수된 불만이 편집자 실천 규약이 규정하는 바에 해당하는지와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사건 각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접수자에게 고지하며, 접수자는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단계: 관계사 고지 - 접수된 불만이 규약 위배 소지가 있고, 해당 언론사의 불만 처리 절차에 따라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경우, IPSO는 이를 관계사에 알려 불만 접수자와 직접 해결을 촉구한다. 당사자 간 불만 처리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28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한 경우, 그 사안을 IPSO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필요시 조기에 실시될 수 있으며, IPSO로부터 불만 접수자가 비공식적 지침을 제공받는 것도 가능하다.

3단계: 조사 - 당사자 간 분쟁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IPSO의 불만처리위원회<sup>107)</sup>가 양측에게 의견 진술과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되도록 이 과정에서 분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사의 빠른 진행을 위해 양측에 응답 기일의 엄수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절차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평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단계: 불만처리위원회 평결 - 미해결 불만사안에 대해 불만처리위원회가 양측의 증거에만 입각하여 실천 규약 위배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없을 경우 IPSO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민감한 정보는 요청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

5단계: 조치 - 실천 규약 위배 평결이 나올 경우 그 내용을 관계사가 자신의 지면에 게재하거나 정정보도를 신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불만처리 위원회가 결정한다.

107) IPSO 이사회는 7인의 일반 이사와 5인의 언론계를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일반 이사 중 1인이 맡는다. IPSO 이사회 산하 선임위원회의 지명을 통해 구성되는 불만처리위원회 역시 7인의 일반 위원과 5인의 언론계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만 이사장이 겸직하며 그 밖의 위원은 이사가 아닌 인물들로 선임된다.

6단계: 검토 - 위 과정과 결과에 불만족한 민원인은 IPSO 이사회의 구성원인 민원 재검토 담당관에게 사안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평결 후 14일 이내여야 하고 검토 결정이 내려지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관에 의한 판단이 도출되며, 이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IPSO의 평결에 따른 조치는 실천 규약을 위반한 언론사의 공개, 평결 결과 및 정정 내용의 보도 요구, 그리고 대단히 심각하고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100만 파운드 이하) 벌금 부과 등이 있다. 단, 민원인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언론사에 대한 금지 명령 같은 것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는 없다.

### 3) 방송에서의 반론권 관련 (자율) 규제 기구

내용물 규제를 포함하는 제반의 방송 및 시청각 매체 규제 기구인 오프콤의 방송 규약은 ‘반론권(right of reply)’을 직접적으로 명문화해 놓고 있지는 않다. 대신 제7조 “공정성(Fairness)” 조항을 통해 다루는데, ‘정확성’ 관련 규정을 통해 반론권을 포괄하는 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성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영국의 방송 내용규제에서 공정성은 “방송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다루는 개인이나 조직들에 대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To ensure that broadcasters avoid unjust or unfair treatment of individuals or organisations in programmes)”을 원칙으로 삼는다.<sup>108)</sup> 예컨대 이쪽 당파의 발언을 반영하면 다른 쪽 당파의 발언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식(그렇게 해서 관련 당파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관습)이 아닌 것이다.<sup>109)</sup> 즉 ‘당사자들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재하는 방송사와 취재 대상이 되는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방성을 보정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영국 방송에서의 공정성 규제는 방송사와 그 대상 사이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108) 오프콤 방송 규정 제7조 제1항 "Broadcasters must avoid unjust or unfair treatment of individuals or organisations in programmes."

109) 여기서 유의할 것은 영국의 방송 내용규제에서 ‘공정성’은 한국 방송심의에서의 ‘공정성’ 개념과는 구별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방송심의 공정성 규제는 주로 정치적 편향성 규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영국에선 ‘불편 부당성(impartiality)’ 규제에 해당하며, 별도 항목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초점이 맞춰진다. 또 한국의 공정성 규제에는 진실 왜곡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는 영국에서 정확성 규제에 상응한다. 또 그런데 이런 정확성 규제 요건은 한국 방송심의에서는 객관성 항목에서도 등장한다. 그러나 한국의 객관성 규제는 사실의 정확성과 ‘객관성’이라는 규정을 통해 영국의 균형성이나 공정성 규제와 중첩된다. 각 사회는 내용물을 다루는 고유의 관습화된 범주가 있게 마련이기는 하나, 한국의 방송심의 규정 속에서는 범주 간의 배타성과 소진성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지는 않아서 자의적인 규제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않도록, 즉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픈마켓 방송 규정 제7조 제11항은 “중대한(significant) 비판이나 비행 의혹(allegations of wrongdoing)을 받게 될 대상으로 하여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응답(respond)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다소간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다.<sup>110)</sup> 즉 (중대 비판이나 의혹이 아닌) 모든 경우에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해명 기회가 반드시 ‘반론’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부터 얻어진 내용이 반드시 그 시점에서 내용물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닌 셈이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이나 혐의로 인해 잠재적으로 일방적인 조건에 놓일 수 있는 대상에게 해명이나 항변할 권리를 부여하여 양자 간의 적정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이와 같은 반론 혹은 해명 기회 부여를 위해 특별히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sup>111)</sup> 각 방송사가 ‘공정하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수행하면 된다. 만약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주체는 각 방송사에 불만 접수를 하거나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오픈마켓 내용물 위원회(Content Board)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만 처리 혹은 심의 주체는 해당 방송사가 당사자에게 ‘반론권을 부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의 협소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보도 혹은 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과정 전반이 공정했는가의 문제를 따지는 방식을 취한다. 이런 면에서는, 앞서 검토한 바 있는 신문의 반론권 및 정정보도 관련 규제에 비해 상당히 전체적 맥락을 중시하면서 상호 간에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었는가를 따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겠다.

BBC와 같은 공영방송사는 ‘편성 지침(Editorial Guidelines)’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불만 처리나 심의 차원에서 반론권 관련 규제가 행해질 때는 이와 같은 지침에 근거해서 잘 처리가 되었는가를 검토한다.<sup>112)</sup> 그런데 오픈마켓 방송 규정이 반론권을 ‘공정성’ 차원에서만 한정하는 것과는 달리, BBC의 관련 지침은 제6조 “공정성”,

110) Ofcom Broadcasting Code 7.11 “If a program alleges wrongdoing or incompetence or makes other significant allegations, those concerned should normally be given an appropriate and timely opportunity to respond.”

111) 오픈마켓 방송규정 서문(Forward)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Importantly, the Code does not and cannot seek to set out all the ‘practices to be followed’ in order to avoid unfair treatment.”

112) <https://www.bbc.com/editorialguidelines/guidelines/fairness/guidelines/>

제3조 “정확성”, 제7조 “사생활 보호” 등에 끌고루 포함돼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지침인 공정성 조항에서는 제6조 제3항 38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를 ‘반론권’ 항목으로 묶어 제시한다.

---

#### 반론권(Right of Reply)

---

##### 6.3.38

우리 내용물이 비행, 불공평, 무능력 등에 연관된 의혹을 제기하거나 특정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피해를 안길 수 있는 비판을 강하게 피력할 때, 기본적으로 이들에게는 반론권, 즉 해당 의혹에 대해 공정한 답변 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When our output makes allegations of wrongdoing, iniquity or incompetence or lays out a strong and damaging critique of an identifiable individual or institution the presumption is that those criticised should be offered a right of reply, that is, given a fair opportunity to respond to the allegations.).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에 더해서, 반론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내용물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In addition to ensuring fairness, the response to a right of reply can help achieve accuracy in our output.).

개인이나 기관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비판의 대상과 관련하여 우리가 확보한 증거의 진실성을 점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다(Where an individual or institution is not identified we may still need to test the veracity of our evidence with those criticised.).

반론 요청이 접수된 일자, 시간, 인물, 핵심 내용에 대한 기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We must ensure we have a record of any request for a response including dates, times, the name of the person approached and the key elements of the exchange.).

##### 6.3.39

해명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의혹 대상에게 제공된다(When seeking a response the subject of allegations should normally be given the following information).

- 당사자가 그에 대해 적절히 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한 수준의 의혹 내용(description of the allegations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an informed response)
  -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의 제목을 포함해서, 그 핵심, 포맷, 주요 내용물의 세부사항(details of the nature, format and content of the programme, including the title if significant)
  - 해당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 최초 공개될지(when and where the content will be first published)
  -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수준의 응답 기회(an appropriate and timely opportunity to respond)
-

## 6.3.40

방송될 의혹과 관련하여 응답한 내용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의혹을 담은 내용물 속에 혹은 그에 병행하여 방송하거나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Any parts of the response relevant to the allegations broadcast should be reflected fairly and accurately and should normally be broadcast or published within or alongside the material containing the allegations.).

예컨대 법리적, 안전상의 혹은 비밀 유지를 위한 필요 등에 의해, 위와 같이 당사자의 응답을 반영한 내용물을 방송하거나 공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상급 편집책임자 혹은 독립제작사를 담당하는 발주책임자와 협의해야 한다. 그럴 경우, 나중에 다른 반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나올지를 고려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There may be occasions when this is inappropriate (for example, for legal, safety or confidentiality reasons) in which case a senior editorial figure, or commissioning editor for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ies, should be consulted. It may then be appropriate to consider whether an alternative opportunity should be offered for a reply at a subsequent date.).

위에서 핵심이 되는 규정은 “방송에서 다루었거나 다루고자 하는 주장과 혐의사실의 당사자에게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고지해야 하며, 필요시 해명 등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첫째, 여기서 ‘구체적인 정보’는 혐의의 내용, 그것을 전달한 콘텐츠의 성격(보도, 다큐멘터리 등, 그리고 비판적 성격의 정도 등), 보도 시점, 당사자가 응답할 수 있는 기한 등을 포괄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 그 사안을 공표할 적정 시기에 대한 방송사의 판단과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가 구체적인 해명이나 반론을 전달할 수 있을 여유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반영한다.

둘째, 당사자의 반론이나 해명을 방송사가 ‘반드시’ 그리고 ‘모두’ 포함할 의무는 없다. 공표될 사안에 관련이 있다고 방송사가 판단하는 것에 한정한다. 단 반론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꼭지로 전달되기보다 해당 프로그램이나 꼭지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당사자가 해명을 거부하거나 별도의 자체 공표를 선택하거나 응답 지연 등 결과적으로 반론 전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 내용이 방송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방송사는 당사자가 응답을 거부했다는 사실 혹은 거부 이유 등을 공표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당사자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입장이 여러 경로를 거쳐 충분히 확인된 경우, 이를 내용물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당사자가 반론을 거부하거나 여러 사유로 해명을 듣기 위한 방송사의 접근이 차단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집 앞 취재(doorstepping)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 앞 취재는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이나, 다른 모든 수단이 유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넷째, 반론권 보장의 형식은 인터뷰, 서면답변, 전화, 취재 노트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 2. 판례 및 사례

### 1) 반론권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명예훼손법 관련 판례

실제로 아일랜드 전직 총리 앨버트 레이놀즈(Albert Reynolds)와 타임스(The Times) 사이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Reynolds vs. Times Newspaper Ltd. [2001] 2 AC 127). 1994년 타임스는 아일랜드 전직 총리가 재임 중 아일랜드 의회와 내각에 부정직하게 행동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고 이에 그 총리는 해당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타임스의 기사는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타임스는 보통법에 따른 면책 특권 적용을 호소했으나 잉글랜드 항소 법원(1999년)과 상고 법원(상원, 2001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일랜드 배포판에서는 담겨 있던 레이놀즈의 해명이 영국 배포판에서는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영국에서 배포된 버전에 레이놀즈가 사건에 대해 제공한 설명이 누락된 이유로 타임스의 상소가 기각되었으나, 본 사건에 대한 상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오면서 보통법에 의한 조건부 명예훼손 면책 특권이 언론에도 확대 적용되는 최초의 판례가 성립되었다. 이때 다수 의견을 주도했던 니콜리스 재판관이 제시한 ‘면책 적용 고려를 위한 10대 기준’은 이후 유사 사건의 판단과 언론보도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뒤이어 자밀(Jameel)과 월스트리트 저널 유럽(Wall Street Journal Europe) 사이의 소송 재판의 2006년 상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조건부 명예훼손 면책 특권의 언론에 대한 확대 적용 판례가 재확인됐다. 2013년 개정법(Defamation Act 2013)은 이런 취지를 “공익에 관련된 출판”을 다루는 법률 조항으로서 공식화했다.

### 2) 반론권 및 정정보도 관련 자율규제 기구조항 적용 사례

(1) 더 선(The Sun)의 “여왕이 브렉시트를 지지한다”는 2016년 보도 관련 평결 사례

01584-16 버킹엄 궁전(Buckingham Palace) v. 더 선(The Sun)<sup>113)</sup>

IPSO의 반론권과 정정보도 관련 평결과 조치가 업계에 상당한 기준점을 제시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에 유명 대중지 더 선(The Sun)이 보도한 “여왕이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다(Queen Backs Brexit)”는 내용의 보도이다. 당시 여왕을 대신하는 버킹엄궁이 IPSO에 민원을 접수했고 그에 따라 불만처리위원회가 해당 기사가 편집자 실천 규약을 위반했다고 평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The Sun이 지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The Sun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심각하게 오도된 제목을 게재하였고 심지어 그 제목은 기사 본문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여왕의 헌정 상의 의무와 관련하여 마치 중대한 위반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함으로써 실천 규약 제1조 제1항을 어긴 (그로써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된) 대표적 사례라 여겨졌다(Middleton, 2017).

(2) 센트럴 파이프 타임스 및 광고주(Central Fife Times & Advertiser)의 “우유 농장의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나의 결혼생활을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2020년 보도 관련 평결 사례

10508-20 익명의 개인(A man) v 센트럴 파이프 타임스 및 광고주(Central Fife Times & Advertiser)<sup>114)</sup>

이 사안은 익명의 한 개인이 주간지 센트럴 파이프 타임스 및 광고주(Central Fife Times & Advertiser)의 기사에 대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평결로서, 편집자 실천 규약 제1조(정확성)와 제14조(익명 취재원) 등에 관련된 위반 여부를 살피는 것이었다. 양측의 주장과 해명을 듣고 관련 조사를 수행한 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사가 해당 실천 규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그 결정 내용을 언론사 지면에 게재하도록 조치했다. 2020년 6월 18일에 발간되었던 기사는 지역의 한 우유 농장과 주변 거주자들 사이에서 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소음 관련 분쟁을 보도하면서, 지역 관청에 문제를 제기하여 소음 저감 명령을 얻어냈다고 말한 두 주민의 주장을 실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농장은 적절한 통제 계획을

113)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01584-16>

114) <https://www.ipso.co.uk/rulings-and-resolution-statements/ruling/?id=10508-20>

통해 운영되기에 그런 불만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관청으로부터 소음 저감 명령을 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 농장 관리 책임자의 발언도 일종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인용 보도했다. 이에 더해 제3의 주민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농장에서 발생하는 “그저 어처구니없을(simply ridiculous)” 정도의 심한 소음과 관련하여 지역 관청에 민원을 접수한 장본인으로 보도되었다.

IPSO에 불만을 제기한 민원인은 이 제3의 주민이었다. 그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농장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꺼려 자신의 발언과 행위는 익명으로 보도되길 원했고, 그 의사를 기자에게 전달하여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6월 18일에 보도된 기사에는 그의 실명이 실려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가 관청에 농장 소음 문제를 제기한 인물로서 특정될 수 있었다. 농장과 주민 사이의 소음 갈등에 대한 첫 취재가 시작된 것은 4월이었고, 이때 해당 취재기자는 두 명의 주민과 농장 관리인, 그리고 이 민원인 등에 접촉하여 작성한 첫 기사를 내보냈다. 이때까지는 실명 노출 문제가 없었다. 그 후 추가 취재가 이뤄졌고 소음 저감 명령의 발부 여부를 두고 농장과 주민 사이의 증언 불일치가 발생하자 민원인의 주변 인물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 민원인은 자신이 관청에 보냈던 이메일을 복사하여 언론사에 자신의 이메일로 전달했다. 문제가 됐던 기사는 처음 나간 기사의 후속 기사로서, 그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최초 취재를 하고 첫 기사를 쓰고 추가로 이메일도 전달받았던 그 기자가 아니라 다른 기자였다. 민원인은 첫 기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실명 비공개 의사를 강조하고 확인받았으나, 문제가 된 두 번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그 의사와 합의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자는, 민원인이 언론사에 제공한 이메일에 관한 언급을 통해 관청은 이런 주민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청과 주민 사이의 접촉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소음 저감 명령이 발부되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보도했다. 그러나 민원인의 실명 비공개 의사가 두 번째 기사 작성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인이 관청에 접촉한 인물이며, 인용된 불만 발언의 주체라는 점이 실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IPSO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는 익명 보도가 양측에서 합의된 것이 맞으며,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점을 인정했다. 민원인과 익명 보도에 합의했지만 첫 번째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그 사실을 두 번째 기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휴가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진지한 사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하고 원한다면 다음 호 지면에 사과문을 실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로써 제14조의 비밀 엄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자신들의 실수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실명을 걸고 관청에 불만 접수를 했다는 사실은 웹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사안이어서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적 사과 및 필요시 사과문 게재 제안도 하는 등 가능한 한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민원인이 제기했던 다른 문제, 즉 소음 저감 명령을 받은 바 없다는 농장 측의 주장을 검증 없이 게재함으로써 실천 규약 제1조의 정확성 요건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았다. 비록 농장 측의 사실과 다른 주장이 보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분쟁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농장의 반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해당 기사가 나갈 시점까지는 사실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후속 기사의 내용을 통해 농장 측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을 보도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IPSO의 판단은, 우선, 민원인과 언론사 사이에 실명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서면 등을 통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고, 이는 설혹 해당 민원인의 신원과 행위가 다른 곳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도 (민원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그와는 무관하게 엄수되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천 규약 제14조를 위배한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었다. 또 관청으로부터 소음 저감 명령을 받은 바 없으며 자신들은 적절한 통제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농장 측의 주장을 인용 형식으로 게재한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일이어서 제1조 제1항의 정확한 보도 요건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런 주장의 사실성이 민원인 등이 제기하는 증거 및 기타 검증 과정을 통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정정이 필요해지는 현저한 부정확성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그에 따라 기존 기사의 정정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언론사는 농장 측의 기존 주장과는 다른 내용이 담긴 후속 기사를 발간했다고 하지만, 기존 기사 속에 포함된 부정확성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이는 제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제14조 위배에 관련된 조치는 해당 평결을 자사 지면에 보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1조 제2항 위배에 관련된 조치는 문제가 된 기사에 상응하고 비례하는 방식으로 평결을 게재하는 것이었다. IPSO는 해당 언론사가 그 내용과 형식 그대로 게재해야 할 평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며, 이는 애초의 기사가 실렸던 3면이나 그 앞쪽 지면에 반영해야 하고, 그것에 붙일 제목은 제기된 민원의 핵심 주제를 반영하여 해당 지면에 전형적으로 쓰이는 글자체와 크기로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IPSO의 사전동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사례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언론사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규제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PCC의 관련 사례와는 달리, 비교적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결을 IPSO가 내리고 있음을 예시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여전히 IPSO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회의적인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훨씬 개선된 면모를 보이면서 자율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IPSO가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sup>115)</sup>

### 3) 방송의 반론권 및 정정보도 관련 규제 사례

(1) 트레버 맥도날드와 함께(Together with Trevor McDonald), ITV1, 2006년 3월 17일 방송: 기각

머지사이드(Merseyside)지역의 주택시장개선정책기구의 의장인 존 글레스터(John Glester)는 지상파 채널 ITV1의 시사 프로그램인 ‘트레버 맥도날드와 함께(Together with Trevor McDonald)’가 자신에 관해 불공정하게 보도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주도의 주택시장개선정책기구에서 주택 철거를 시행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글레스터 의장과의 인터뷰를 담고 여타 지역의 정책 기구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글레스터는 이 프로그램이 카메라 각도를 자신에게 비우호적으로 잡았고, 철거가 아닌 수리를 선택한 주택에 관한 기존 장면을 재활용하여 수리가 철거보다 낫다는 식으로 보도했으며, 해당 기구가 수행하는 일의 1%밖에 되지 않은 철거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과장하면서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ITV는 철거에 대한 찬반양론을 모두 담았고 그 밖의 불공정 주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제시한 근거 등에 의해 반박된다고 주장했다. 오프콤은 철거 이슈에 대한 특정 시각이 부각된 것은 프로그램 제작자의 편성 자유에 해당하며, 불공정하다고 주장된 지점에서 ITV가 충분한 반론 청취와 공정한 묘사 및 판단을 수행했다고 보아 해당 민원을 기각했다.

(2) 클럽 18-30의 저주(The Curse of Club 18-30), 채널5, 2005년 5월 6일 방송: 일부 인용

‘클럽 18-30(Club 18-30)’은 피터버러(Peterborough)에 본사를 둔 휴가 서비스

115) 출범 이듬해인 2015년의 평결 상황을 보면, 연간 접수된 12,278건의 민원에 대해, 512건이 조사 대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가운데 269건은 당사자간 (205건은 당사자간 직접 합의에 의해, 64건은 IPSO의 중재에 의해) 문제 해결이 이뤄졌다. 나머지 243건은 불만처리위원회에 의해 평결되었다(이중 183건은 조사 후 기각, 60건은 인용). 인용된 60건 가운데 23건은 평결 사항의 언론사 게재, 10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26건은 언론사가 제안한 기타 조치이행, 1건은 별도 제재 없음으로 이어졌다

기업으로 18세~30세 사이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클럽 파티 중심의 섬 관광 패키지를 판매했다. 지상파 채널5(Channel Five)는 이런 관광 패키지의 문제점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였는데, 이 서비스의 주체였던 업 여행(UP Trips) 측이 해당 패키지와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에 관해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자신들의 의견과 정보를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패키지를 운영했던 전직 직원으로 등장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술회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에 의해 고용된 기록이 없고, 관광지에서 발생한 관광객 대상 폭력 사건이 마치 자신들의 탓인 것처럼 묘사했으며, 폭음 문화가 이 패키지에 의해 개발된 것처럼 추론하는 등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내용 전달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오프콤은 해당 의혹을 다룬 내용이 관련 기업의 평판과 판매 중인 관광 상품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함에도 관련 당사자들에게 응답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 해당 패키지 브랜드가 관련 관광지의 쇠락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제시하면서도 그에 대한 회사 측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불공정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클럽 18-30 측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심각히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이 민원 사안은 제기된 불만 사례들 가운데 몇 가지에서 관련 방송 규정을 위배한 면이 있기에 일부 인용으로 결정됐다.

## V. 미국

###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 1) 법률 동향 개관

수정헌법 제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반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반론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 진전은 없다.

과거 한때 플로리다주(Florida)·미시시피주(Mississippi) 등 과거 프랑스 식민지인 일부 주에서만 반론권이 인정됐었으나 1974년 마이애미 헤럴드 사건(Miami Herald v. Tornillo)에서 연방대법원이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을 편집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한

뒤로는 불인정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반론권이 수정헌법 제1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론권의 수용을 거부했다. 신문에 게재할 내용물을 선택하거나 크기를 결정하고 대중의 이슈를 다루는 것은 그것이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모두 편집권에 속하며, 국가나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반론권이 공적인 논의를 위축시키고 다원성을 제약한다고 밝혔다(김상우, 2010).<sup>116)</sup>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는 미국은 반론권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리가 발달해 왔는데, 이 역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뤄졌다. 가령 뉴욕타임스와 설리번 판결(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에서 연방대법원은 현실적 악의의 원칙(actual malice rule)을 처음 적용하여 공직자인 설리번의 가혹한 시위 진압에 대해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다. 여기서 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가 현실적 악의를 갖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은 거츠 판결(Gertz v. Robert Welch, 418 U.S. 323)에서 공직자에서 일반 공적 인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김옥조, 2009). 일반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 법리는 이 같은 공인과는 다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는 이처럼 언론에 대한 제약이 개인의 인격권보다 사회에 야기하는 피해가 더욱 크다는 인식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 내에서는 일반 대중이 언론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액세스권(right of access)’이 존재하는데, 이 액세스권이 유럽에서 발전되어 온 반론권의 미국식 수용이라는 의견(양건, 2021)과, 언론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액세스권은 언론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한 반론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의견(이용길, 1997)이 공존한다.

액세스권은 미국 헌법학자인 제롬 베런(Jerome A. Barron)에 의해서 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소수의 언론이 미디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서 언론 스스로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파수견 역할과 시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공론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액세스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Barron, 1967). 따라서 미국에서는 반론권을 이러한 액세스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

116) Miami Herald v. Tornillo, 418 U.S. 241(1974)

## (1) 미국 신문에서의 반론권

미국 신문은 정부의 편집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바이런 화이트(Byron White) 대법관의 절대주의적 가정은 정부가 실제적이든 또는 가상이든 간에 벽이 높은 뉴스룸에 정부가 간섭하는 데 대한 그와 다른 법관들의 두려움을 잘 설명한다. 물론, 반론권이 뉴스 편집을 좌우할 수도 있는 간섭이 되어 결국 강한 정부를 초래할 수 있다는 화이트 대법관의 주장이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반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재진, 2015).

신문에 대한 반론권은 연방 차원의 법률은 없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플로리다주와 미시시피주에서 신문 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두 규정 모두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두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유사하다.

---

플로리다주 법령§104.38(1971). 선거에서 후보를 공격하는 신문의 반론 지면 제공<sup>117)</sup>  
Florida, '104.38 Newspaper assailing candidate in an election; space for reply

---

“어떤 신문이 그 칼럼에서 어떤 선거에서 지명 또는 선거 후보자의 개인적 성격을 공격하거나, 해당 후보자에게 공직에서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고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의 공식 기록을 공격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무료 지면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신문은 해당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그러한 회신을 요구하는 사안과 같은 종류의 유형으로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무료로 게재해야 하며, 그러한 회신이 회신된 사안보다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 않는 한 그 회신을 무료로 게재합니다. 이 섹션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 또는 회사는 § 775.082 또는 § 775.083에 규정된 대로 처벌되는 1급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If any newspaper in its columns assails the personal character of any candidate for nomination or for election in any election, or charges said candidate with malfeasance or misfeasance in office, or otherwise attacks his official record, or gives to another free space for such purpose, such newspaper shall upon request of such candidate immediately publish free of cost any reply he may make thereto in as conspicuous a place and in the same kind of type as the matter that calls for such reply, provided such reply does not take up more space than the matter replied to. Any person or firm failing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of the first degree, punishable as provided in § 775.082 or § 775.083.

---

즉, 신문이 공직 후보자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기사를 게재하였을 경우, 그 기사만큼 동일한 형태(같은 지면, 같은 활자 크기)의 반론을 공표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할 수

---

117) Florida STAT, §104.38(1971) Newspaper assailing candidate in an election; space for reply

있다는 내용으로(박인수, 2004), 지금의 반론권 규정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미시시피주의 반론권 규정 제3175조<sup>118)</sup>도 플로리다주의 관련법과 비교하여 내용이 유사하며 두 개의 주 모두가 공직후보자에 한해서 반론권을 인정하고 있고 반론권 내용에 관해서도 정정과 의견의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등을 보았을 때, 두 개의 주법은 프랑스의 1822년 출판법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유추되기도 한다(한병구, 1982).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이 1974년 마이애미 헤럴드 사건(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에서 플로리다주의 반론권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신문에 대한 반론권은 실정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위 사건은 1972년 마이애미 헤럴드에서 공직 후보자인 팻 토르닐로(Pat Tornillo)를 비판하는 사실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는데, 토르닐로는 비판에 대한 답변(반론)을 작성하고 마이애미 헤럴드에 자신의 답변을 신문에 게시하도록 요구했으나 마이애미 헤럴드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토르닐로는 플로리다 법령 104.38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신문사를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하급심인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법령 104.38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287 So.2d 78(1973)).<sup>119)</sup> 당시 대법원은 플로리다의 반론권 법이 표현의 자유를 강화한 것이며, 이를 제한하지 않고, “대중에게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는 데 대한 폭넓은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켰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령이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로 인해 처벌받게 될 것인지”를 알려줌으로써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지도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연방대법원은 1974년 6월 만장일치로 플로리다 법령 104.38이 위헌이고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조항을 위반했으며 정부는 언론이 게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 (2) 미국 방송에서의 반론권

미국에서의 반론권은 방송에서 먼저 인정되었다. 인쇄매체와 달리 방송 분야는 1934년 제정된 연방 통신법에 ‘동등 시간의 원칙(equal time rule)’을 명시하여 공직선거의

118) 「동주에 있어서 발행되고 판매되는 신문이 공직후보자의 성실, 품위, 인격을 비난하는 해설 또는 뉴스보도를 게재했을 경우 당해신문은 반론 수령후 지체없이 다음다음호에 그 반론을 게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송부된 반론은 변경될 수 없다. 반론은 가능한 한 원문기사와 같은 장소에, 같은 활자로, 또한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신문이 그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임무를 지운다.」(한병구, 1982)

119) <https://casetext.com/case/tornillo-v-miami-herald-publishing-company>

입후보자가 평등한 시간의 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를 토대로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쟁점에 대한 반론권을 개인의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의 하나로서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레드 라이온 판결(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sup>120)</sup>에서 미연방 통신위원회(FCC)가 그동안 견지해 온 ‘방송사가 공공 이슈를 제시하고 해당 이슈의 각 측면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라는 공평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지지하면서 레드 라이온에게 동일한 답변 시간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즉 방송이 대중들에게 공공 문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이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적 역할이 부여된다는 주파수 희소성(spectrum scarcit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기도 하다(이재진, 2000).

이는 ‘주파수 한정성’의 논리에 따라 ‘공평의 원칙’(fairness doctrine)의 합법성을 확인한 것이다. 방송이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면허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인 책무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판결은 반론권을 담보하는 ‘공평의 원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방송사의 주장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반론권이 수정헌법 제1조와 일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에서 근거한 주파수 한정성(spectrum scarcity)은 방송이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공짜로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사용에 있어 공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FCC의 공평 원칙은 방송사가 적절한 양의 방송 시간을 공적인 중요성이 있는 논의에 할당하고, 공적 중요성이 있는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평의 원칙은 ‘동등 시간의 원칙’과 달리 방송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는 데 의무를 다했는가를 주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송사업자들이 적절한 양의 방송 시간을 공적인 중요성이 있는 논의에 할당하고 공적 중요성이 있는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상반되는 견해를 모두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김상우, 2010).<sup>121)</sup>

공평의 원칙은 동등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사상이 전달되었는가

120) 레드 라이온 대 FCC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 place of ideas) 개념에 의문을 표시하고 영향력 있는 독점이 존재할 때는 쟁점에 대한 공정성과 반론권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어야 수정헌법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밝혔다[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1969)].

121) 공적 중요성의 실현 정도는 미디어나 지역 지도자들이 특정 이슈에 부여하는 ‘주목’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적용에 있어 개인적인 공격, 정치후보자의 사설을 통한 지원, 정치 캠페인에 있어서 후보자의 비정치적 광고 등으로 구분하여 규칙을 마련하였다.

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포함하였는데, 그 적용에 있어서 요건이 애매하고 남용이 심하며 작위적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1980년대 중반까지 학계와 법조계의 논쟁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결국 1987년 <시라큐스 평화위원회 사건<sup>122)</sup>>으로 인해 공평의 원칙은 폐지하게 되었다(이재진, 2015).

공평의 원칙이 폐기된 이후, 레드 라이온 판결의 주요 요지는 그 이후로도 여러 판결(CBS,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981),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1994))에서 청취자의 권리가 방송사의 권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었다(Daniel C. Kramer, 2009). 하지만 그 후 케이블TV 등 많은 미디어가 미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희소성 원칙 자체가 그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레드 라이온 판결은 비판받기도 했다.

공평의 원칙이 폐기되긴 했으나 FCC가 개인에 대한 공격(personal attack)과 정치적 사설(political editorialization)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 남겨놓음으로써 방송에서 개인적 공격에 대한 반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든가 정치적 사설에 의한 피해에 반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 등은 그 이후로도 남아 있었다(이재진, 2000). 그러나 현재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문재완, 2023).

### (3) 인터넷과 반론권

미국은 정치적 논평에 정치인의 반론을 허용하던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기조로 변화했다. 이에 반론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은 여전히 반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공간 내에서의 반론권 역시, 오프라인 매체와 마찬가지로 반론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sup>123)</sup> 명예훼손 콘텐츠가 게시된다고 해도 인터넷의 특성상 이에 대한 접근과 반박이 쉬우므로 굳이 반론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이재진·상윤모, 2014). 그러나 인터넷 통계 사이트인 ‘인터넷 월드 스태츠’(Internetworldstats.com)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은 90.3%로 세계 평균인 65.6%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다. 오히려 정보가 범람하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그만큼

122) Syracuse Peace Council, 2F.C.C. Red, 5043(1987); Syracuse Peace Council v.FCC, F.2d654(D.C.Cir.1989)

123) 미국 워싱턴DC 법원은 최근 컴캐스트, AT&T 같은 ISP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수정헌법 제1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격권을 훼손하는 콘텐츠도 많이 생산되고,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차별화된 반론권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4) 반론권 필요성 논의와 철회권

미국에서 반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사회적 법익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인 반면, 개인의 명예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둔다. 헌법학자 샤우어(Schauer)는 “미국 헌법에서 언론은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반면, 명예는 그렇지 않다. 언론에 대한 잘못된 제약이나 처벌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피해보다 더 크다. 그래서 언론은 미국 헌법에서 우월적 지위를 향유한다.”고 강조했다(Schauer, 1980). 이 같은 배경에서 미국에서의 반론권은 다른 나라에서와 달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공중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으로 인식됐다. 반론권은 궁극적으로 정부가 언론사의 편집 정보에 간섭함으로써 편집 자율성에 대해 위헌적인 사전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언론 미디어가 자발적으로 반론을 허용하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정부가 주도하는 반론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론권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개된 사상의 자유시장에 이르는 통로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현실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인식에서다. 언론학자 바론(Barron)은 1967년부터 “완전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데 반론권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반론권이 수정헌법 제1조가 인정하는 새로운 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애미 헤럴드 사건에서 편집권의 절대적인 보호를 강조했던 완고한 입장에서 벗어나 대법원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Barron, 2007). 바론뿐 아니라 언론법학자 길모어(Gillmor)와 채피(Chafee)도 반론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김상우, 2010).<sup>124)</sup> 그런데 반론권 수용을 부정하는 미국의 경우 언론분쟁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5% 이하로 나타나 법익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

124) 언론법학자 길모어는 “미국의 언론은 오만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론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세했다(Gillmor, 1992). 또한 언론법학자 채피는 “명예훼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반론권이 필요하다. 사실적 주장과 관련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반론권을 입법화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륙식 반론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Chafee, 1965).

밖에서의 협상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론권과 유사한 개인의 피해구제 방법으로 철회(retraction) 제도가 있다. 철회와 관련된 법률은 절반 이상의 주가 규정하고 있는데(Glasser, Jr., 2013), 명예훼손적 기사를 게재한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등 언론사가 시의적절하게 자발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배포를 중지하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되는 법을 의미한다. 철회를 규정하는 대부분의 주법은 철회가 행해지는 경우 신청인이 구제하고자 하는 실제적 배상금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많은 주가 신청인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기사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신청인이 언론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다면 실질적 피해에 대한 구제에 있어 제한을 가하고 있다.<sup>125)</sup> 비록 반론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언론 스스로가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에서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재진, 2015).

## 2) 반론권 자율규제 동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반론권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인 일부 주에서만 한때 인정된 바 있었으나, 1974년 연방대법원이 반론권을 인쇄매체에 대한 편집권에 대한 침해로 판시한 후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방송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상들을 전달하도록 요구했던 공평의 원칙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주에 따라 채택하고 있는 기사 철회 요구 규정으로 다소의 대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반론권이 자율적으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현재는 폐지된 제도이지만,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조정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국가뉴스위원회(NNC: National News Council)가 있었다. 국가뉴스위원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 심화되고 공중들의 불신감이 점차 높아지자 언론과 공중에게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1973년 독립적 기구로 설립되었다(고광미, 1985). 미국에서 유일한 전국 규모의 뉴스평의회로서 활동해오던 국가뉴스위원회는 1984년에 해체되었는데, 출범 후 11년 동안

125)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는 신청인에게 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철회요청을 먼저 하도록 규정한다.

언론의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보도로 언론과 공중 간 의심이나 불신을 사라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뉴스 보도의 정확성과 공평성에 대한 불만을 받고, 점검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했다(McKay, 1977). 구체적으로는 뉴스 보도에 대한 공중과 뉴스미디어의 수백 건의 불만을 처리했고, 227건의 보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Ugland, 2008., 김지수, 2018 재인용).

그 역할이 적지 않았음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언론사의 부정적인 시각과 법적 강제성의 부재로 인해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는데, 국가뉴스위원회에 대한 언론계의 반응은 설립 당시보다 긍정적이기는 했으나 기능상의 비효율성, 재정문제, 공중들의 인지도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언론계의 충분한 협조를 얻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고광미, 1985). 대부분의 언론사나 기자들은 언론 스스로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그들은 위원회의 논평이 아닌 독자가 원하는 방식이나 언론사별 관행을 따라 보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국가뉴스위원회에 반대했던 언론사들은 뉴스위원회의 규제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적 강제력의 부재와 언론사의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국가뉴스위원회는 출범 11년 만에 해산 발표를 하게 되었다(김지수, 2018).

위원회 해체 이후 재설립을 요구한 이들도 있었다.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Westmoreland)는 CBS에 대한 장기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끝난 후 1985년에 국가뉴스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치를 요구했으며, 윌리엄 F. 버클리(William F. Buckley), 마이크 월리스(Mike Wallace) 및 월터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도 국가뉴스위원회 역할의 필요성을 지지하였다. 2005년에는 3개 주(미네소타, 하와이, 워싱턴)에서 주차원의 뉴스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sup>126)</sup> 미네소타뉴스위원회(Minnesota news councils)는 2011년에 폐지되었고 워싱턴뉴스위원회(Washington news councils)는 2014년에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27)</sup>

이로써 현재 미국에서의 언론에 대한 불만 제기는 주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소송을 통해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뉴스위원회 등 기관이나 조직이 주체가 된 자율규제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언론사 자체의 자율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기자협회(Society of

126)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News\\_Council#cite\\_note-seeger-6](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News_Council#cite_note-seeger-6)

127) 워싱턴뉴스위원회 웹사이트(<https://wanewscouncil.org/>)는 현존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운영은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 하와이뉴스위원회(Hawaii news councils)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는다.

Professional Journalists, SPJ) 윤리강령을 살펴보았다.<sup>128)</sup>

〈표 3-3〉 미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항목

미국기자협회 윤리강령 <sup>129)</sup>	
항목	-Preamble(서문) -Seek Truth and Report It (진실 추구 보도) -Minimize Harm (피해 최소화) -Act Independently (독립적 행동) -B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책임 및 투명성)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은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가운데 ‘책임 및 투명성’ 조항에서 강령은 “윤리적 저널리즘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결정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0)</sup>고 전술하고 정확성, 명확성 및 공정성에 관한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며,<sup>131)</sup> 실수를 인정하고 신속하고 눈에 띄게 정정하고, 정정 및 해명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라<sup>132)</sup>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강령의 선행 조항인 저널리즘 관행, 보도 및 뉴스 콘텐츠에 대해 시민과 대화를 장려하는 입장<sup>133)</sup>에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반론권이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right of access)으로 이해되는 법률적 논의와 연관하여 해석되는 지점이다.

언론사 각각의 정책과 취재 및 보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정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미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서는 미디어의 액세스권 차원에서 언론사에 대한 반론 제기와 정정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판례 및 사례

반론권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최근의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128) <https://www.spj.org/ethicscode.asp>

129) 미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전문은 본 보고서의 부록[첨부 10]에서 확인가능하다.

130) Ethical journalism means taking responsibility for one’s work and explaining one’s decisions to the public.

131) Respond quickly to questions about accuracy, clarity and fairness.

132) Acknowledge mistakes and correct them promptly and prominently. Explain 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carefully and clearly

133) Explain ethical choices and processes to audiences. Encourage a civil dialogue with the public about journalistic practices, coverage and news content.

## 1) 도미니언 소송 사건 Dominion Voting Systems v. Fox News Network

이 사건은 전자투표 시스템, 투표지 스캐너, 투표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Dominion Voting Systems)<sup>134)</sup>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 매체인 폭스뉴스 네트워크(Fox News Network)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후 폭스뉴스 진행자 지닌 피로(Jeanine Pirro)는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즈(도미니언사)와 경쟁사인 스마트매틱(Smartmatic)사 등이 트럼프에 대한 선거 조작을 공모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투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조 바이든(J. Biden)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폭스뉴스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진행자 루 돕스(Lou Dobbs)와 마리아 바르티로모(Maria Bartiromo)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스마트매틱사는 폭스뉴스에 서한을 보내 철회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철회 방식은 “명예훼손 출판물의 관심과 청중을 일치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게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세 명의 진행자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신원이 불분명한 선거 기술 전문가와의 인터뷰 7분짜리 동영상을 방영하였다. 스마트매틱사는 이에 대해 결국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폭스뉴스 네트워크의 변호사 폴 클레멘트(Paul Clement)는 재판에 출석해 단순히 현직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가 제기한 주장을 전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스마트매틱사 소송은 2023년 3월 현재 계류 중이다.<sup>135)</sup>

한편, 도미니언사도 폭스뉴스 방송의 진행자가 도미니언에 대한 사실 왜곡성 발언을 함으로써 도미니언의 명성과 사업 전망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폭스뉴스 네트워크 및 그 진행자를 상대로 약 1조 8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 폭스뉴스 측은 문제가 된 방송에서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견표명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였다. 미국 델라웨어 주 법원(Delaware Superior Court)은 2023년 3월 31일에 내린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에서 피고 폭스뉴스 측의 항변을 배척하고 본 사건을 정식 재판인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미니언 소송은 2023년 4월 중순 무렵부터

134) 미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전자투표 시스템, 투표지 스캐너, 투표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

135) 스마트매틱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폭스뉴스에 대한 고소장은 뉴욕주 법원에 제출되어 있으며, 27억 달러(\$2.7 billion dollars)를 청구하는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고, 사건의 종결 시기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https://www.smartmatic.com/blank/faq-defamation-lawsuit-against-fox-corporation/>(최종검색: 2023.10)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피고 폭스뉴스 측이 11시간에 걸친 협상을 진행한 끝에 도미니언에 7억 8,750만 달러(약 9천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미니언 소송을 끝냈다.<sup>136)</sup>

전문가들은 합의금의 규모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보았다. 유타대학교 S.J. 쿨니 법과대학의 법학 교수이자 수정헌법 제1차 개정 학자인 로넬 앤더슨 존스(RonNell Andersen Jones)는 “이번 합의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앤더슨 존스는 “이번 사건은 의심할 여지없이 주요 미디어 회사를 상대로 한 가장 강력한 명예훼손 사건이었다”고 하며, “더군다나 미디어 회사는 일반적으로 내부 업무에 대한 해로운 정보가 공개되기 훨씬 전에 합의를 시도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합의하는 것이 당연히 폭스에게 최선의 이익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소송이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 그 이유는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진실을 무모하게 무시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기준인 ‘현실적 악의’를 입증해야 하는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도미니언이 폭스를 상대로 수집한 증거의 양이 이렇게 방대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재판을 앞두고 도미니언은 폭스 경영진, 진행자, 프로듀서 간의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공개하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외면했던 시청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밝혔다. 이 메시지는 폭스뉴스가 뉴스맥스(Newsmax) 같은 경쟁사에 시청자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선거를 훔치기 위해 도미니언 기체가 개입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지지하는 폭스 내부의 분주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였다.<sup>137)</sup>

## 2) 비더포드 경찰서장 소송 사건 Gaudette v. Mainely Media, LLC<sup>138)</sup>

메인(Maine)주 대법원은 비더포드(Biddeford)의 전직 경찰관 노만 고데트(Norman Gaudette)가 청소년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136) [https://en.wikipedia.org/wiki/Dominion\\_Voting\\_Systems\\_v.\\_Fox\\_News\\_Network](https://en.wikipedia.org/wiki/Dominion_Voting_Systems_v._Fox_News_Network)

137) <https://www.nytimes.com/live/2023/04/18/business/fox-news-dominion-trial-settlement>

138) <https://law.justia.com/cases/maine/supreme-court/2017/2017-me-87.html>

메인리 미디어(Mainely Media)와 직원 2명의 손을 들어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확정했다.

메인리 미디어는 미국 남부 메인에서 여러 지역 신문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신문 그룹이다. 메인리 미디어가 소유한 주간지 쿠리어(Courier)는 지난 2015년 비드포드 출신 한 남성이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비드포드 경찰관에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후 비드포드 경찰관 여러 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몰리 로벨-킬리(Molly Lovell-Keely), 쿠리어의 편집장, 벤 메이클존(Ben Meiklejohn) 기사는 피해자와 가족, 원고와 그의 변호사, 주법무부 수사관, 전현직 비드포드 경찰관들과 접촉하며 학대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6주 동안 29건의 뉴스 보도를 하였다.

고데트 부부는 항소심에서 하급 법원이 노만 고데트가 성범죄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형사의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재판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법원이 해당 증언을 인정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메인리 미디어의 수석 변호사였던 신시아 카운츠(Cynthia Counts)는 배심원단의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확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게도 중요하다고 하며, 대법원이 고데트의 항소를 거부하여 이 중요한 뉴스 보도를 입증함으로써 수정헌법 제1조를 보호했다고 하였다.

카운츠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변호하는 데 드는 비용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이 과거 학대 혐의를 보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이며, “이 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학대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고, 언론이 신뢰할 수 있는 학대 주장을 보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sup>139)</sup>

139) <https://www.fisherbroyles.com/news/verdict-for-mainely-media-in-defamation-case-affirmed>

## VI. 그 밖의 국가

### 1. 호주

호주의 언론사들은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반론권은 공정성과 정확성 원칙에 따라 윤리적으로 실행되는 실천 방식으로 보장되며,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았다. 호주에서 반론권은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주장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반론할 기회 ‘Opportunity to Respond’로도 명시되어, 언론 관련 단체 및 언론사 윤리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에서 반론권의 법적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9월 14일에 브로드밴드, 통신 및 디지털 경제부(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sup>140</sup> 장관인 스티븐 콘로이(Stephen Conroy) 상원의원은 전 연방법원 재판관 레이 핀켈스타인(Ray Finkelstein)에게 호주 미디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하고, 2012년에는 이러한 조사의 결과물인 ‘미디어와 그 규제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Media and Media Regulation)’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변화하는 신문 산업에 따른 당시의 규제와 지원에 관련된 이슈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자율규제 체제로 운영되는 호주의 언론보도 윤리 및 기준의 실행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론권의 법제화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이지영·상윤모, 2018).

보고서에서는 반론권의 법적 제도화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첫째, 불리한 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둘째, 대중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법률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호주 내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높아 대체로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은 진행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반론권은 개인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론권은 명예훼손법과 동일한 가치를 보호할 뿐만

140) 현 인프라, 운송, 지역 개발, 통신 및 예술 부처(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로 브로드밴드, 방송 및 통신 분야 관련 규제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한다.

아니라 공정성의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반론권은 대중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보도되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대중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호주에서는 반론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명예훼손 법과 관련하여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 호주는 명예훼손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명예훼손 소송 사건의 경우 피해를 주장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명예훼손법이 언론의 공공 저널리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명예훼손법이 명예를 훼손당한 일반 국민을 위한 구제 수단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지영, 2022).

한편, 호주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의 언론산업 규제를 담당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독립적인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은 방송, 광고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불만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데, 방송의 경우 일차적으로 방송사를 통해 제기된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기관이 개입하여 중재 역할을 한다. 이때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은 보도 내용이 언론보도 실천 강령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데, 호주언론예능예술협회(Media Entertainment Arts Alliance)와 호주언론위원회(Australian Press Council)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보도윤리기준과 방송사 자체 기준(공영방송의 경우)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 1) 언론단체 보도윤리기준

1944년 호주언론예능예술협회(Media Entertainment Arts Alliance)는 기자 윤리강령(Journalist Code of Ethics)을 마련하여 언론예능예술협회에 가입한 언론사들이 모두 이 규범을 준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회의 윤리강령 제1항은 ‘정직하게 보도하고, 정확성, 공정성, 그리고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관련 사실을 생략하거나 왜곡되게 강조를 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하게 반론할 기회 (a fair opportunity

for reply)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반론할 기회를 포함하고 있다.<sup>141)</sup>

호주언론위원회(Australian Press Council)는 실천 강령(Standards of Practice)을 마련하고 언론보도와 관련된 불만 제기를 관리하는데, 잡지를 포함한 모든 인쇄매체가 감독 대상이다. 위원회는 언론에 관한 불만 제기 사안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네 가지 주요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정확성/명확성(Accuracy and clarity), 공정성/균형성(Fairness and balance), 개인의 사생활 보호/피해 방지(Privacy and avoidance of harm), 진실/투명성(Integrity and transparency)이 포함되며 원칙별 세부 지침은 다음과 같다.<sup>142)</sup>

#### 일반 원칙 선언(The Statement of General Principles)

##### - 정확성/명확성(Accuracy and clarity)

- a. 정확한 사실만을 보도하며 오피니언 등과 같은 의견 기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 b. 잘못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 수정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 공정성/균형성(Fairness and balance)

- a.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자료(사진 등)를 사용하며, 의견을 피력할 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중요한 사실 정보를 누락하지 않는다.
- b. 보도 내용이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후속 보도 시 특정인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게 다뤄질 기회를 부여한다.

##### - 사생활 보호/피해 방지(Privacy and avoidance of harm)

- a.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b.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격적이며, 편견을 포함하고, 안정과 건강에 대한 위협의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 - 진실성/투명성(Integrity and transparency)

- a. 공공의 이익과 충분히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된 보도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b. 이해 상충 소지를 피하며, 보도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실을 누락 하지 않는다.

141) "Report and interpret honestly, striving for accuracy, fairness and disclosure of all essential facts. Do not suppress relevant available facts, or give distorting emphasis. Do your utmost to give a fair opportunity for reply." (MEAA의 기자 윤리강령 전문은 <https://freelancers.org.au/code-of-ethics/> 참고)

142) APC의 일반 원칙 선언 전문은 <https://presscouncil.org.au/standards/statement-of-principles/> 참고

## 2) 방송사 보도윤리기준

호주의 공영방송사 ABC(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와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는 자체 보도강령 및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1992년 방송 서비스법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따라 두 공영방송은 자체 실천 강령을 기준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들에 대해 대응할 의무가 있고, 불만이 제기된 이후 60일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안을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후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의 독립적인 조사에 응하고 기관이 제기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ABC 실천 강령은 해석(Interpretation), 정확성(Accuracy), 정정 및 설명(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공정성 및 관점의 다양성(Impartiality and diversity of perspectives), 공정하고 정직한 대응(Fair and honest dealing), 사생활 보호(Privacy), 피해 및 범죄(Harm and offence), 어린이 및 청소년(Children and young people)이라는 여덟 가지 강령을 정하고 있는데, 이 중 ‘공정하고 정직한 대응’이라는 강령(5)을 바탕으로 반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공정하고 정직한 대응’을 ABC 수용자들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하고, 실천 강령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령 5.3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실천 강령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개인 및 단체에 공정하게 반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Where allegations are made about a person or organisation, make reasonable efforts in the circumstances to provide a fair opportunity to respond)’라고 명시하고 있다.

ABC 실천 강령에 담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들은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한다. 조사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불만 사항이 충분히 심각하지 않은 경우
- b. 불만 사항이 콘텐츠 불만 사항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c. 불만 사항이 익명이거나 콘텐츠가 처음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제기된 경우
- d. 불만 사항이 무례하거나 모욕적이며, 선량한 신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우
- e. 불만 사항이 법적 소송이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관한 경우
- f. 불만 사항 대상 콘텐츠가 더 이상 보존되지 않는 경우

ABC는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공정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데, 판단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방송 내용이 얼마나 해당 개인과 단체에 맞춰져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누구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 및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판단한다. 둘째, 사안의 심각성에 해당하는데, 반론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제기된 혐의 내용의 심각성 정도에 입각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며, 이는 관련 부서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개인 및 단체에 얼마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해당 사안이 생방송 프로그램일 경우, 방송 진행자는 관련 내용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임을 분명히 밝히고, 방송 후에도 해당 사안에 관한 개인 및 단체에 적절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공표해야 한다.<sup>143)</sup>

ABC는 시청자들의 불만 사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맨(Ombudsman)이라는 독립적인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이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불만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a) 유지(Upheld): 편집 기준 또는 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b) 무효(Not upheld): 실천 강령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c) 해결(Resolved):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불만 사항이 적절하게 해결되었고 추가적인 조치 및 추가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옴부즈맨은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에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예비 조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옴부즈맨은 관련 부서에 이에 대한 구제책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절차적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불만 사항이 제기된 해당 부서는 옴부즈맨의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해당 부서가 예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서 책임자는 경영 이사(Managing Director)와 옴부즈맨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옴부즈맨은 경영 이사와 협의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결정 사안 및 이유를 부서 책임자에게 제공한다.

143) ABC (2011) Fair opportunity to respond. (URL: <https://www.abc.net.au/edpols/fair-opportunity-to-respond/13644784>).

### 3) 반론권 실천 강령 위반 사례<sup>144)</sup>

2022년 10월 25일에 ABC 지역 라디오 퍼스(Perth)가 ABC 뉴스 웹사이트에 ‘챤리스 채굴 회사(Chalice Mining)의 황화니켈 매장량에 대한 고네빌(Gonneville) 원주민들의 우려’라는 온라인 기사를 게시했다. ABC가 해당 기사에 포함된 특정 주장에 대해 관련 업체에 적절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ABC는 이러한 부주의로 인해 챤리스 채굴 회사와 최고 경영자인 알렉스 도르쉬(Alex Dorsch)에게 전하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ABC 라디오 방송은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한 언론사가 자사 직원을 해고한 사안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공개적인 입장이 방송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방송 인터뷰는 ABC의 편집 기준인 정확성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방송 전 프로그램 제작팀은 해당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해당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인정되었다.

### 4) 타 방송사 실천 강령

SBS 실천 강령은 SBS가 편성의 독립성 및 진실성(editorial independence and integrity)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당사 콘텐츠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는 원칙과 정책을 명시한다. SBS 헌장을 포함하는 1991년 방송특별법(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신뢰, 투명성, 존중의 원칙에 따른다. SBS가 자체 실천 강령에 담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불만들은 SBS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데, 강력한 불만이 있는 사안의 경우 SBS 불만처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 SBS 실천 강령은 불만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정정된 정보를 방송·게재하거나 정정이나 철회, 사과 내용을 방송하거나 게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ABC와 다르게 반론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144) ABC Audience & Consumer Affairs (2019) Review of editorial complains 5.3 Opportunity to Respond

한편 호주의 민영 방송사들은 상업 방송협회(Free TV Australia)가 마련한 상업방송 실천 강령을 기준으로 하는데, 강령 제3조는 뉴스 및 보도 방송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뉴스 및 보도 방송 조항은 정확성/공정성(Accuracy and fairness), 불편 부당성(Impartiality), 개인 사생활 보호(Privacy)를 원칙으로 정한다. 공영방송과 마찬가지로 해당 방송사의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경우, 30일 내 적절한 대응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SBS와 마찬가지로 반론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5) 적격 특권 방어(Defences of qualified privilege)<sup>145)</sup>

언론사는 보도 내용 및 방식에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여러 해석과 견해가 충돌하는 사건들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재량적 보도는 무책임하거나 편견이 있는 보도로 인해 개인, 단체 또는 조직, 특히 사회에서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호주에서는 공개적인 공격에 대한 반론(reply to an right attack)권에 해당하는 ‘적격 특권 방어(Defences of qualified privilege)’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언론보도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호주 법원은 공개적인 공격에 대한 답변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할 경우, 법적 자격 있는 특권 방어의 한 측면으로 공개적인 공격에 대한 대응을 인정해오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경우, 해당 공격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응이어야 한다.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적격 특권 방어’는 게시물과 관련된 ‘합리성’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명예훼손법은 게시물의 합리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게시된 내용이 내포하는 명예훼손적 의심이 얼마나 심각한지(the seriousness of the imputations)
- 게시된 내용이 의심, 주장 및 사실을 얼마나 구별하고 있는지(the extent to which the matter distinguished between suspicion, allegations and proven facts)
- 게시된 내용의 정보 출처와 그 정보 출처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the nature of the defendant's business environment)

145) Defamation Law Centre, Defamation Law. <https://www.artslaw.com.au/information-sheet/defamation-law/>

- 게시된 내용이 해당 인물의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whether it was appropriate in the circumstances to publish expeditiously),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게시된 내용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any other steps taken to verify the matter published)

## 2. 일본

### 1) 법률과 자율규제 동향

#### (1) 액세스권과 반론권

‘정보의 수신자인 일반 국민이 정보의 송신자인 매스미디어에 대해 자신의 의견 발표의 장을 요구하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액세스권이라 한다. 이 권리가 주장된 배경에는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의 분리라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후반 매스미디어가 여론을 집중·독점하고 강대한 사회적 권력이 되면서 그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정보의 송신자와 수신자의 호환성’이라는 근대적인 표현의 자유의 전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태동하여 일반 국민에게 정보 송신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는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매스미디어에 대해 액세스(접근)할 권리가 제창되었다. 액세스권은 정보의 일방적인 수신자가 되어버린 일반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이며, 구체적으로는 의견광고나 반론 기사의 게재, 지면이나 방송 참가 등에 의해 실현되었다(LS憲法研究会; 민병로, 손형섭 역, 2011).

다만, 매스미디어가 ‘제4의 권력’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하더라도 매스미디어는 엄연히 사인(私人)이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액세스권을 사인인 매스미디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법률에 의한 액세스권을 구체화하여 매스미디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액세스 기회를 강제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대륙법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액세스권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반론권이 법률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다. 반론권은 혁명 후 19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19세기 중반에 주변 나라들로 확산하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독일에서는 의견에 대한 반론을 인정하지 않고, 매스미디어에 의한 자기와 관련된 잘못된 사실적시에 대한 반론 권리만 인정되고 있다.

독일형 반론권은 실질적으로 본인에 의한 권리행사다. 이 권리는 비판받은 자의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보도의 진실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반론권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비판·공격받은 자에게 언론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뿐만 아니라, 의견표명에 대해서도 의견으로 대항하기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인격권 보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유통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이나 의견이나 여부에 관한 차이가 있지만, 프랑스형과 독일형 모두 언론으로 인해 피해입은 자가 해당 기사나 방송과 동일한 분량의 반론을 신속하게 무료로 제공할 것을 청구할 권리이며,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LS憲法研究会; 민병로, 손형섭 역, 2011).

반면, 일본에도 1949년에 폐지된 신문지 및 인쇄물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新聞紙及び印刷物の発行等に関する法律)<sup>146)</sup>에는 반론권의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제13조)에 근거해 명예와 프라이버시 등 인격적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프라이버시 권리를 자기정보통제권으로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法律)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업무에 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본인으로부터의 공개, 정정, 삭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의무화하였다(藤原静雄, 2003).<sup>147)</sup> 이러한 의무화는 카드회사, 은행, 백화점 등의 일반적인 민간기업에 경제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약하지만,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허용된다. 다만, ‘보도기관 등(報道機関等)’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취재·보도를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법 제50조 제1호, 제76조). 이 때문에 보도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취재와 보도활동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할 때 일반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예외를 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2) 일본의 반론권

일본의 현행법에는 반론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구 방송법 제4조(현행

146) 신문지 및 인쇄물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新聞紙及び印刷物の発行等に関する法律)에 따라 언론사 및 신문사의 활동이 규제되었으나, 1949년 일본 헌법 제정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동법이 폐지되었다.

147) 2002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방송법 제9조)가 「정정 또는 취소 방송」에 대하여 제45조와 제52조에서 정견방송에 대해 방송시설의 평등한 이용 권리에 대해 정해 놓고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방송에 의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자로부터 정정 방송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가 정정 방송을 거부한 경우, 당사자는 제소를 통해 구 방송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정정 방송을 명령할 수 있었다. 구 방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진실이 아닌 사항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그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입은 본인 또는 그 직접적인 관계인으로부터 방송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지체하지 않고 그 방송 사항이 진실이 아닌지 어떤지를 조사해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판명된 때에는, 판명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그 방송을 한 방송설비와 동등한 방송 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 방송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정정 방송을 요청하는 대상이 ‘정견방송’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상 제186조<sup>148)</sup>는 방송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제186조 제2항에서는 사사(私事)에 관한 것은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때 개인의 고소가 있으면 당국이 수사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개인적 사안이 아닌 경우 단체 등으로부터의 고소가 없더라도 방송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다면, 일본의 방송당국에 해당하는 총무성(總務省) 또는 방송자율규제기구 등이 해당 방송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처벌에까지 이를 수 있다.

### (3) 반론권 관련 자율규제 기구 운용 실태

일본에서 반론권이라는 권리를 매스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에서 즉시 도출하지는 않으며,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거기서, 구 방송법 4조가, 그러한 수권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쟁점이 생긴 것도 전술한 바와 같다. 일본의 1심판결(잡지 「제군!」 사건)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는 반론문 게재 청구도

148) 放送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三十二号)

第九条(訂正放送等)放送事業者が眞実でない事項の放送をしたという理由によつて、その放送により権利の侵害を受けた本人又はその直接関係人から、放送のあつた日から三箇月以内に請求があつたときは、放送事業者は、遅滞なくその放送をした事項が眞実でないかどうかを調査して、その眞実でないことが判明したときは、判明した日から二日以内に、その放送をした放送設備と同等の放送設備により、相当の方法で、訂正又は取消しの放送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放送事業者がその放送について眞実でない事項を発見したときも、前項と同様とする。

3 前二項の規定は、民法(明治二十九年法律第八十九号)の規定による損害賠償の請求を妨げるものではない。

허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sup>149)</sup>, 상고를 받은 최고재판소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일본에는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언론에 대한 반론권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법정기구는 없다. 그러나 자율규제 기구로서 언론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돕는 몇 가지 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일본신문협회(日本新聞協會)는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언론의 윤리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이다. 또한, 독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1946년 협회의 설립에 맞추어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했다.<sup>150)</sup> 신문윤리강령에 반론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반론문 게재를 인정한 예는 흔하지 않다.

일본방송협회(日本放送協會)는 주로 방송사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이다.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상호 협력과 의견 조율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방송윤리 및 프로그램 향상 기구(放送倫理・番組向上機構, Broadcasting Program Organization, 이하 BPO)는 방송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방송품질을 개선하는 방송윤리조사위원회,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침해당한 인권을 조사하고 지원하는 방송 및 인권 기타 관련 권리 보호위원회,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BPO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사에 대한 시청자 불만사항 등을 검토하며, 변호사, 학자 및 다른 전문가로 구성된 7명 내지 9명의 위원이 방송관련 분쟁에 개입하여 시청자와 방송사가 중재를 시도하기도 한다.

한편, 인터넷 매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 미디어센터(日本マスメディアセンター)라는 언론 매체 환경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 지침 개발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가 언론 매체 업계의 윤리적 표준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적인 제재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149) <http://www.5a.biglobe.ne.jp/~kaisunao/seminar/712counterargument.htm>

150) <https://www.pressnet.or.jp/outline/ethics/>

## 2) 판례 및 사례

### (1) 산케이신문(産經新聞) 사건<sup>15)</sup>

#### ① 사실 개요

산케이신문사(이하 ‘Y 신문사’, ‘피고’, ‘피항소인’, ‘피상고인’이라 한다)는 1973년 12월 2일 발행하는 신문에 소외(訴外) 자유민주당을 투고자로 하여 이른바 의견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게재·배포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공산당(이하 ‘X’, ‘원고’, ‘항소인’, ‘상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광고가 X에 대해서 응답을 요구하고 있는 도전광고일 뿐만 아니라, X는 이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 똑같은 신문의 조건에 이 사건 광고와 똑같은 크기로 X의 반론문을 무료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Y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견광고는 광고료를 신문사에 지불하고 지면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일본의 신문사는 의견광고의 게재에 소극적이었으나, 1968년에 처음으로 의견광고가 게재된 이후 편집방침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는 조건을 붙여 의견광고의 게재에 응하게 되었다. 그런데 Y는 1973년 9월부터 Y의 편집 방침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통상의 광고보다도 비교적 싼 광고란을 제공하고 있어, Y와 소외 일본경제신문사(日本經濟新聞)만이 의견광고를 게재했다.

X의 제소에 앞서 X와 Y는 X의 반론 광고 게재에 관해 교섭을 진행했다. Y는 X에게 반론 광고를 유료로 게재하는 것을 제의하였으나, X는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광고가 신문윤리강령과 신문광고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무료로 게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를 Y가 거부함으로써 교섭은 결렬되고 X는 제소했다. X는 이 사건 광고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반론문의 무료 게재를 요구하는 가치분을 신청했으나, 도쿄지방법판소는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하고 신청을 각하했다(東京地裁 1974년 5월 14일 判時 739호 49면).

15) 최고재판소 1987년 4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오(オ) 제1188호 반론문게재청구사건, 民集 41권 3호 490면, 判時 1261호 74면.

②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sup>152)</sup>

## 가.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반론권

최고재판소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치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인(私人) 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 우월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인 간에 있어서 한 쪽 당사자가 정보의 수집, 관리, 처리에 관해 강한 영향력을 갖는 일간 신문지라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반론문 게재의 청구권이 다른 한 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므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나. 인격권과 조리에 근거한 반론권

전술했다시피 반론문 게재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의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723조는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명예회복 처분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의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 발생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회복 처분에 따른 금지 청구권’은 단순히 표현행위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해야 비로소 인정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 없이 조리 또는 인격권에 근거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소론과 같은 반론문게재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해 자기가 청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작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부작위 청구를 실효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작위 청구의 범위를 넘는 것인바, 민법 제723조에 의해 명예회복처분 또는 금지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반론문게재청구권을 인정해야 할 실정법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격의 동일성’도 반론문 게재 청구권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이익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152) 최고재판소 1987년 4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오(才) 제1188호 반론문게재청구사건, 民集 41권 3호 490면, 判時 1261호 74면.

신문 기사에 거론된 자가 그 기사의 게재에 의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자기가 기사에 거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을 발행·판매하는 자에게 자기의 반론문을 수정없이 게다가 무료로 게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반론권 제도는 기사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거나 혹은 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잘못 보도된 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인정될 때는 신문을 발행·판매하는 자가 원 기사가 옳고 반론문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혹은 반론문의 내용이 그 편집 방침에 따라 게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해도 그 게재가 강제되게 되며, 또한 그 때문에 본래라면 다르게 이용되었을 지면을 할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등의 부담을 강요받게 되며, 이러한 부담이 비판적 기사, 특히 공적 사항에 관한 비판적 기사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반론권 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문 등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며, 가령 전국 일간지에 의한 정보의 제공이 일반 국민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가지며 그 기사가 특정 인물의 명예 내지는 프라이버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반론권의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문법이 없음에도 반론문 게재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더욱이 방송법 제4조를 통해 정정 방송의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나 그 정정 방송은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는 점 및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판명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방송사업자가 동등한 방송 설비에 의해 상당한 방법으로 정정 또는 취소 방송을 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등 그 요건, 내용 등에서 이른바 반론권의 제도 또는 반론문 게재 청구권과는 현저하게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2) 「생활! 출발 아침」 사건<sup>153)</sup>

원고가 ‘정정방송 또는 취소 제도’에 관한 방송법 제9조가 반론권의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최고재판소는, ‘정정방송 제도’는 반론권과 그 요건, 내용 등이 현저하게 다르다고 판단했다. 반론권의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방송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한 자로부터 정정방송을 요구받은

153) 최고재판소 1987년 4월 24일 제2소법정 판결, 1980년 오(才) 제1188호 반론문게재청구사건, 民集 41권 3호 490면, 判時 1261호 74면.

방송사업자가 구 방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정방송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재판소가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방송을 명하는 것은 가능한지의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엔에이치케이(NHK)의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A가 위자료뿐만 아니라, 구 방송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정정방송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다(最1小判 2004년 11월 25일 判時 1880호 40면).

이 사건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생활! 출발 아침」이 「아내로부터의 이혼장 · 갑작스러운 이별에 당혹스러운 남편들」이라 제목 붙인 특집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 익명이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장남과 함께 그 방송에 출연한 남성의 전처 A가 일방적으로 이혼 선언을 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남편과 아들을 버려둔 채 이혼을 강행한 아내로 방송되었던 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東京地判 1998년 11월 19일 판례집 부등재), 제2심은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인정하여 NHK에 손해배상과 방송법 제4조에 근거한 정정방송을 명했고(東京高判 2001년 7월 18일 判時 1761호 55면) 이에 NHK가 상고했다. 제2심이 명한 정정방송은 A의 청구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수준이었다. 제2심 법원은 방송법 제4조 제1항에 대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방송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정정방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므로 방송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있었음에도, 방송사업자가 청구받고도 정정방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해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했다. A는 민법 제723조에 근거한 사죄 방송도 청구했지만, 정정방송이 사죄의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A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하여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정정방송에 대한 2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방송법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 하에 “방송이 국민에게 최대한으로 보급되어 그 효용을 가져올 것을 보장할 것”(제1조 제1호), “방송의 불편부당, 진실 및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것”(동 제2호), “방송에 종사하는 자의 직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방송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할 것”(동 제3호)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방송을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율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2조 이하의 규정은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방송법 제3조는 표현의 자유 및 방송 자율성 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방송프로그램은

법률에서 정한 권한에 근거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든 간섭받거나 규율 받는 경우가 없다”고 하여 방송편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방송법 제4조 제1항도 방송의 자율성 보장의 이념에 입각하여 진실성 보장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여기에 덧붙여 제4조 제1항 자체를 보면, “방송 내용이 진실이 아닌 점이 판명된 때에 방송사업자가 정정방송 등을 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정정방송 등에 관한 재판소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동항 소정의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이 정해져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동항은 진실이 아닌 사항이 방송된 경우에 방송 내용의 진실성의 보장 및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방송사업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정방송 등을 행할 것을 국민 전체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로 정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정방송 등을 요구하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피해자로부터의 정정방송 등의 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동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면, “해당 청구를 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의 진실성에 관한 조사 및 정정방송 등을 행하기 위한 단서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정정방송을 위한 청구권의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즉, 피해자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정정방송 등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법의 정정방송 제도는 방송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본인에게 헌법 제13조에 의한 인격적 이익 구제를 가능하게 한 점에서 독일형 반론권과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독일형 반론권이 법률상의 요건이 충족될 때만 반론문(정정문)의 공표를 매스미디어에 강제하는 것인 데 반해, 일본의 정정방송의 경우 피해자로부터의 청구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진실성에 대한 조사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정정방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자주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형 반론권에는 반론문의 공표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기업인 매스미디어에 대한 제약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한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반론권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구 신문지법의 반론권은 2차 대전 이후 얼마 있지 않아 폐지됨), 방송에 한하여, 그것도 방송사업자의 자주적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삼는 정정방송 제도를 인정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다(LS憲法研究会; 민병로, 손형섭 역, 2011).

## Ⅶ. 소결

이상으로 주요 해외 국가의 반론권 규정 동향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법률은 큰 변화는 없었지만 반론권을 규정하고 운영하는 절차에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의 반론권은 1989년 유럽연합 훈령으로 회원국들이 명예훼손적 발언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반론권에 상응하는 법적 요구를 최초로 공식화한 바 있다.

각 주의 신문법과 미디어법에서 출발한 독일의 경우 아직 방송 전체에 대한 통일적인 반론권은 입법화되지 않았다. 다만 방송국가협약 제6조에서 “방송은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보도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 적용이 가능한데 여기서 핵심은 ‘검증 가능성’이다. 또한 추측성 보도라도 90% 정도의 검증 가능성이 있다면, 의견이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특정한 결과를 핵심적으로 보도했다면, 또 특정 의견이나 주장에 관한 표현이 보도 대상자가 표현한 내용을 근거로 할 경우(내부적 사실)에는 모두 ‘사실’로 판단한다. 독일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한국과 달리 보도의 전체 내용을 삭제 신청하는 철회권(Widerruf),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권(Richtigstellung), 보충을 요구하는 보충권(Erganzu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론권의 게재 방식과 관련하여 동일한 프로그램과 지면에서 동일한 분량과 글꼴로 내용이 게재되어야 하지만, 편집자가 반론권을 집중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하는 ‘꼬리 편집(Redaktionsschwanz)’이 가능하다는 것이 독일만의 특이한 점이다. 한편 온라인에서의 반론권 방식에 관한 다수설은 하이퍼링크를 통한 연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에 근거하여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 권리는 권리행사의 주체 및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정부 당국을 포함한 공권력의 수탁자가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서 부정확하게 보도된 내용을 정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이지만, 매우 긴급한 외교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프랑스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웹사이트 등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프랑스 대법원에 의해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간주된 덕분에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손해 입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문제된 기사의 보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사하여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프랑스 판례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전통적으로 강한 사법적 권리로 인식되고 판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적인 논쟁이 없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단으로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파리지방법원의 판결은 전환점을 제공한 판결로 인식되는데, 그 내용은 “반론보도청구권이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통해 언론기관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인터넷상의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당사자가 인터넷 공간에 직접 반론 내용을 작성할 수 있더라도 본인의 반론 내용이 문제가 되는 토론 전용 공간에서 게시되지 않는 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신문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으며 방송을 규제하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만 존재한다. 그러나 반론권 행사 기준 등을 포함한 내용물 규제에 관한 명문화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문의 경우 업계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민간 독립 기구를 통해 대략 반론권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송의 경우, 오프콤(Ofcom)이 제정한 방송규약을 통해 반론권에 상응하는 조치를 방송사가 취하지 않을 때 그에 관련된 포괄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사는 오프콤 방송규정 제7조 제11항에 따라 반론의 기회를 주는데, 특별히 어떠한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모든 경우에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주어지는 해명 기회가 반드시 ‘반론’의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로부터 얻어진 내용이 반드시 그 시점에서 내용물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한편 영국은 언론 품질기준 제고를 위한 독립기구(IPSO)가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업계 자율규제 기구이며 과거에 비해 진전된 규제력과 성과를 보이면서 안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IPSO는 신문에 대해 접수된 불만이 규약 위배 소지가 있고 해당 신문사의 불만 처리 절차에 의해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 이를 관계사에 알려 불만 접수자와 직접 해결을 촉구한다. 당사자 간 불만 처리 절차가 종결되었거나 불만 접수 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안은 IPSO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는 IPSO의 편집자 실천규약에 따라 언론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기사에도 진행되고 있다. 웹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도 오프콤의 방송규약 제7조(공정성)에 근거하여 불만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는 미국은 반론권보다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리가 발달해 왔다. 그마저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론권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한때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일부 주에서만 반론권이 인정됐으나, 1974년 연방대법원이 인쇄매체에 대한 반론권을 편집권에 대한 침해라고 판시한 뒤로 현재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신 개인의 피해구제 수단으로 반론권과 유사한 철회(retract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는 반론권을 담당하는 자율규제기관도 부재하다. 미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에서 미디어의 접근권 차원에서 언론사에 대한 반론 제기과 정정 요구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밖에 반론권 형식이나 요건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호주는 반론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언론사들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다. 통상 반론권이 아닌 ‘반론의 기회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언론사들의 윤리강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대신, 언론자유의 위축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큼 명예훼손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반론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법과 함께 강력한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산하 기관인 호주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이 방송사를 통해 제기된 불만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개입하고 있다. 이때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은 호주언론예능예술협회와 호주언론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보도 윤리 및 기준과 공영방송사 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호주는 공익적 사안의 공개적인 공격으로 인해 사회에서 취약한 구성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격 특권 방어’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49년에 폐지된 「신문지법」에는 반론권의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방송법」 제9조에서 정정방송 등을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일본에서는 반론권을 액세스권에서 도출하지는 않고, 별도 입법을 필요로 하는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에는 일본신문협회, 일본방송협회와 같이 언론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돕는 자율규제기구가 있고, 일본신문협회의 신문윤리강령에서 반론의 기회를 마련하라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반론문 게재를 인정한 예는 흔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형 반론권이 사기업인 매스미디어에 대한 제약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반론권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방송에 한해, 그것도 방송사업자의 자주적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삼는 정정방송 제도가 인정되는 정도로 소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 제4장 해외 언론사의 반론권 자율규제 현황

해외 주요 국가 언론사들의 반론권 보장 현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별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송사와 신문사의 자율규제 운영 현황과 보장 절차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독일의 대표 방송사인 제1공영방송 ARD와 제2공영방송 ZDF 그리고 독일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들 가운데 하나인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과 빌트(Bild), 프랑스 대표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 프랑스 민영방송인 페에프엥(TF1) 그리고 프랑스의 권위 있는 언론사 르몽드(Le Monde), 르 피가로(Le Figaro), 리베라시옹(Libération), 영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와 전국일간지 타임스(The Times), 미국의 대표 언론사 중 하나인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와 뉴욕타임스(Newyork Times)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1. 독일

#### 1. 독일의 대표 방송사

독일의 대표 방송국에는 제1공영방송인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와 제2공영방송인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가 있다. 1950년에 창립한 ARD는 각 주의 공영방송이 연합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각 지역에서 방송의 1번 채널을 맡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1961년에 창립한 ZDF는 독일 3개 주에 의해서 개국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단일한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독일에는 한국의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이 반론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방송사는 주 공영방송법에 근거하여 반론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반론권에 대한 규정

공영방송인 ARD와 ZDF는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반론권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ARD의 경우 국가방송협약 제8조에, ZDF는 ZDF 국가협약 제9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다.

내용을 살펴보면 ARD의 반론권 청구 및 진행 과정에 다소 특이한 점이 있다. ARD가 여러 주 방송사의 연합체인만큼 반론 청구는 해당 주 방송사에 청구하고 주 방송사에서 이를 담당 및 처리해야 하는데, 반론권이 인정되면 ARD에 속해 있는 모든 방송사가 해당 반론권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반론권에 대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반론권의 효과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약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ZDF의 반론권 규정은 그보다 더 자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론 청구 대상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반론이 제기된 동일한 프로그램 및 동일한 방영 시간에 방송되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반론을 제기한 프로그램과 같은 등급의 프로그램 시간에 방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반론권 청구 절차

ARD의 경우 홈페이지에 별도로 반론권만을 위한 메뉴는 발견할 수 없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 문의, 칭찬 등 다양한 의견을 담당 부서에 보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4-1] ARD의 시청자 의견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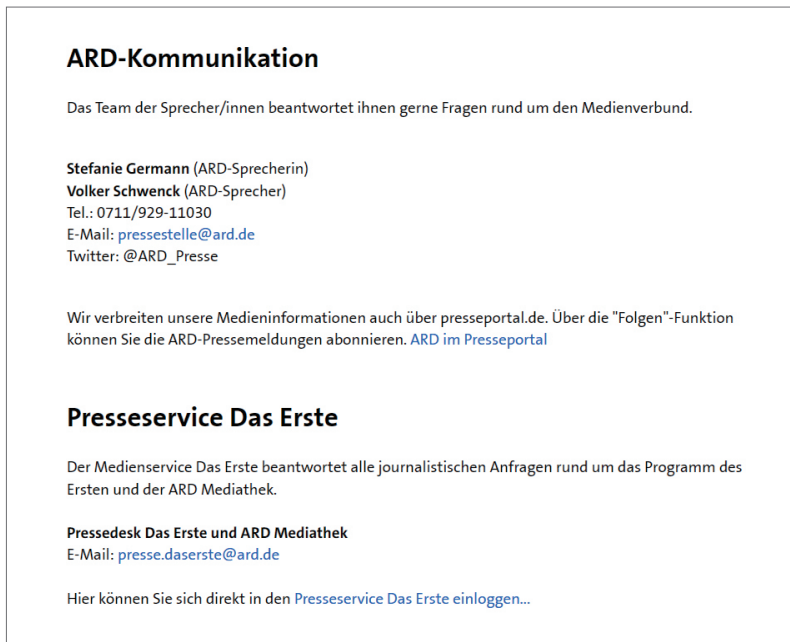
이러한 절차는 크게 ‘언론 및 미디어’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언론 및 미디어’의 경우 ARD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은 ARD 통신(ARD-Kommunikation)에서, 다스

에어스테(Das Erste) 프로그램<sup>154)</sup>과 ARD 미디어 라이브러리(ARD Mediathek)에 대한 의견은 ‘다스 에어스테 언론 서비스 (Presseservice Das Erste)’를 통해 받고 있다.<sup>155)</sup> ‘프로그램’은 시청자 편집팀인 ‘ARD 독자 편집팀(ARD Zuschauerredaktion)’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sup>156)</sup>

[그림 4-2] ARD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문의 방법 안내



[그림 4-3] ARD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 문의 담당자 안내



154) 다스 에어스테(Das Erste)는 ARD의 대표적인 TV 방송 채널이다.

155) <https://www.ard.de/die-ard/presse-und-kontakt/Presseservice-100/>

156) <https://www.ard.de/die-ard/lhre-Kontaktmoeglichkeiten-100/>

문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고객센터에는 비판 및 피드백에 대한 섹션이 따로 있으며, 이름, 이메일 주소, 대상 지역, 그리고 문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 전달이 된다.<sup>157)</sup>

[그림 4-4] ARD 고객센터 문의 양식

The image shows a contact form on a dark blue background. At the top, it asks 'Wie können wir Ihnen helfen?'. Below this is a short instruction in German: 'Sie haben Fragen, Anregungen, Lob oder Kritik? Dann senden Sie uns bitte eine Nachricht über das Kontaktformular. Bei technischen Problemen ist es wichtig, dass Sie uns mitteilen, um welchen Beitrag es sich handelt und auf welchem Gerät das Problem auftrat.' The form contains the following elements:
 

- Name:** A text input field with a placeholder 'Name'.
- E-Mail-Adresse\*:** A text input field with a placeholder 'E-Mail-Adresse'.
- Themenbereich\*:** A dropdown menu with the placeholder 'Bitte auswählen' and a downward arrow.
- Nachricht\*:** A large text area for the message. It includes a section for system data: 'Meine Systemdaten: - OS: Windows 10, - Browser: Chrome 114.0.0.0, - UserAgent: Mozilla/5.0 (Windows NT 10.0; Win64; x64)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114.0.0.0 Safari/537.36, - IP-Adresse: 112.214.161.94, - Screen Resolution: 1536, 816'.
- Consent:** A checkbox with the text 'Ich stimme der Datenverarbeitung gemäß der Datenschutzerklärung zu.\*' and a label '\* Pflichtfeld'.
- Buttons:** A blue 'Senden' button and a white button with a left arrow and the text 'Zurück zur Hilfe-Seite'.

ZDF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문, 제안, 의견 등을 보낼 수 있는데, 이중 ‘시청자 연락처(Zuschauerkontakt)’와 ‘언론 문의 연락처(Kontakt für journalistische Anfragen)’가 시청자 의견과 언론(저널리즘)에 대한 문의를 각각 담당하는 곳이다.<sup>158)</sup>

157) <https://hilfe.ardmediathek.de/faq/Kritik-%26-Feedback/>

158) <https://www.zdf.de/service-und-hilfe/zuschauerservice/kontakt-zum-zdf-102.html>

[그림 4-5] ZDF 시청자 의견 담당 페이지 및 문의 양식

**Kontakt zum ZDF**

Postanschrift:  
ZWEITES DEUTSCHES FERNSEHEN  
55100 Mainz  
Telefon: +49 (0) 6131-700  
Fax: +49 (0) 6131-70-12157

Zuschaueranfrage, Fragen, Anregungen und Meinungen:  
Kontaktformular: [www.zdf-service.de/kontakt](http://www.zdf-service.de/kontakt)  
Telefon: +49 (0) 6131-70-12161 (10:00 Uhr bis 22:30 Uhr)  
Fax: +49 (0) 6131-70-12170  
Post: ZDF Service GmbH, Otto-Schott-Straße 9, 55127 Mainz  
E-Mail: [zuschauerservice@zdf-service.de](mailto:zuschauerservice@zdf-service.de)

Beschäftigten / Filialen:  
Alle Informationen gibt es hier

Voranstellungen / Einflitskarten:  
[ZDF-Voranstellungen mit Publikum im Überblick](#)

Geschäftskontakt ("B-to-B"):  
E-Mail: [info@zdf.de](mailto:info@zdf.de)

**Senderschritte:**  
Das ZDF fertigt Sendeschritte für die private Nutzung auf Anfrage an.  
Kontaktformular: [www.zdf-service.de/kontakt](http://www.zdf-service.de/kontakt)  
E-Mail: [zuschauerservice@zdf-service.de](mailto:zuschauerservice@zdf-service.de)

**Hauptabteilung Kommunikation: Kontakt für journalistische Anfragen**  
Telefon: +49 (0) 6131-70-12108  
Fax: +49 (0) 6131-70-16884  
E-Mail: [pressenews@zdf.de](mailto:pressenews@zdf.de)  
Internet: <http://pressportal.zdf.de>

**Anfragen von Wissenschaft und Forschung (Archiv)**  
Bitte richten Sie Anfragen mit ausführlichen Informationen zur betreffenden Forschung und den Fragestellungen an:  
E-Mail: [wissenschaften@zdf.de](mailto:wissenschaften@zdf.de)  
Postanschrift: ZDF, Unternehmenssch. 55100 Mainz

24.11.2022

Felder mit einem \* sind Pflichtfelder

Wählen Sie Ihre Anfrage aus\* z.B. Autogramme

Titel der Sendung/Empfangsweg/Produkte\*

Ihre Frage oder Ihr Kommentar.\*

Anrede  Titel

Vorname  Nachname

E-Mail\*

Straße  Hausnummer

PLZ  Stadt

Land

"Ich habe die **Datenschutzrichtlinien** gelesen und willige in die darin beschriebene Verarbeitung meiner Daten ein."

**Postanschrift ZDF**

Zweites Deutsches Fernsehen  
55100 Mainz  
Telefon: +49 (0) 6131-700  
Fax: +49 (0) 6131-70-12157

**Postanschrift Zuschauerservice**

ZDF Service GmbH  
Otto-Schott-Straße 9  
55127 Mainz

E-Mail: [Zuschauerservice@zdf-service.de](mailto:Zuschauerservice@zdf-service.de)

**Melden Sie sich bei uns**

Telefon: +49 (0) 6131-70-12161  
(10:00 bis 22:30 Uhr)  
Fax: +49 (0) 6131-70-12170

## 2. 독일의 대표 신문사

독일의 대표적인 신문사로는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과 빌트(Bild)가 있다. 1945년에 창간한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독일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 중 하나로, 진보적인 권위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 1952년에 창간된 빌트는 현재 독일 내에서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신문사이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주로 게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타블로이드화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1) 반론권에 대한 규정

신문사들은 주 출판법에 반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방송사의 반론권과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반론 청구 대상을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한정하고, 무료이며, 동일한 섹션 내에 동일한 서체로 게재가 되어야 한다. 한편 언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권과, 이를 근거로 하는 각 주의 출판법 내 반론권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 2) 반론권 청구 절차

독일 내 신문사의 반론권은 대체로 반론권(반론 및 정정)의 요청, 편집팀의 평가, 결정 및 이행이라는 세 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 〈독일 신문사 반론권 요청 공통 사항〉

- ① 반론권(반론 및 정정)의 요청: 개인 또는 단체가 신문사의 보도에 사실상의 오류가 있거나 불공정하게 묘사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정정보도 요청(반론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내용과 원하는 정정 또는 해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② 편집팀의 평가: 신문사의 편집팀은 요청의 타당성과 반론권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를 평가한다. 편집팀은 해당 콘텐츠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 ③ 결정 및 이행: 평가가 끝나면 신문사는 답변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요청이 수락되면 개인 또는 조직은 후속 게시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원본 콘텐츠에 대해 답변할 게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④ 법률 규정 준수: 다른 언론 매체와 마찬가지로 신문사의 반론 요청 시스템은 독일 언론법 및 그 밖에 관련 미디어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반론권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언론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쾰른도이체 차이퉁의 경우 서비스란에 신문사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독 및 기술’, ‘독자 의견’, ‘편집 오류’, ‘사용권 및 아카이브’, ‘고소’ 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으며, 그 안에 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이메일을 제공하고 있다. 의견을 보낼 때는 참조하는 기사의 제목과 날짜 등 기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쾰른도이체 차이퉁에서 반론문을 게재하는 형태는 아래와 같다. 반론문은 해당 기사가 나온 세션에 동일하게 게재되며, 여러 반론문을 취합하여 별도로 게시하고 있지는 않다. 반박 내용은 반론하고자 하는 원문 내용을 먼저 나열한 뒤, 정정되어야 할 내용이나 반론한 내용을 그 아래 배치한 뒤 당사자의 서명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간혹 이를 담당할 편집자가 반론한 내용이 맞다는 의견을 아래 덧붙이기도 하는데(예: ‘편집자 주: 000씨의

말이 맞습니다(Anmerkung der Redaktion: Herr 000 hat recht),<sup>159)</sup> 이는 팩트체크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6] 줌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에 불만 사항(의견) 보내는 방법<sup>160)</sup>

**Abonnement und Technik**  
[aboservice@sz.de](mailto:aboservice@sz.de) - Ihr Service rund ums Abonnement der SZ  
[sz-digital@sz.de](mailto:sz-digital@sz.de) - Ihr technischer Support und Kundenservice für die digitale SZ

**Leserbriefe und Online-Leserkommentare**  
[debatte@sz.de](mailto:debatte@sz.de) - Ihre Fragen zu Online-Leserkommentaren auf SZ.de  
[forum@sueddeutsche.de](mailto:forum@sueddeutsche.de) - Ihr Leserbrief zu überregionalen Artikeln aus der Zeitung oder Digitalausgabe der SZ  
[forum-region@sueddeutsche.de](mailto:forum-region@sueddeutsche.de) - Ihr Leserbrief zur Berichterstattung der SZ in München und der Region

**Redaktionelle Fehler und Kontakt zur Redaktion**  
[fehler@sz.de](mailto:fehler@sz.de) - Ihre Korrektur-Angaben an die Redaktion  
[redaktion@sz.de](mailto:redaktion@sz.de) - generelle Anmerkungen zur redaktionellen Arbeit der SZ

**Nutzungsrechte und Archiv**  
[syndication@sz.de](mailto:syndication@sz.de) - Rechte für die Wiederveröffentlichung von SZ-Inhalten (Nachdruck, Online-Wiederveröffentlichung etc.)  
[archiv@sz.de](mailto:archiv@sz.de) - Ihr Zugang zu allen Artikeln aus mehr als 75 Jahren SZ

**Anzeigen**  
[anzeigenannahme@sz.de](mailto:anzeigenannahme@sz.de) - Ihr Kontakt zum Anzeigenteam des Süddeutschen Verlages

\* SZ.de/meld - Rechte am Artikel können Sie hier erwerben.

WEITERLESEN NACH DIESER ANZEIGE  
**Der Kohlenstoffkreislauf der Erde**  
 Wie verhindern wir, dass immer mehr CO<sub>2</sub> in die Atmosphäre gelangt und den Klimawandelbeschleunigt? Eine Lösung ist das Abscheiden und Speichern von CO<sub>2</sub> im Meeresboden. Equinor ist führend bei dieser Technologie. Mehr

Tellen Feedback Drucken **Zur SZ-Startseite**

[그림 4-7] 줌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에서 반론문을 게재하는 형태<sup>161)</sup>

**Gegendarstellung**  
 4. Februar 2019, 18:25 Uhr

Zu "Hauptsache, dagegen" BDS in der Kulturszene vom 28.1. 2019

Sie schreiben über mich: "Er zählt auf, was er an BDS gut findet. Israels Regierung sei "die größte Gefahr für Frieden", sagt er."

Dazu stelle ich fest: Ich habe nichts genannt, was ich an BDS gut finde. Ich habe nicht gesagt, dass Israels Regierung die größte Gefahr für Frieden sei.

Gesagt habe ich: "Die völkerrechtswidrige Besatzungspolitik der israelischen Regierung ist die größte Gefahr für eine gesicherte und auf Dauer unbedrohte Existenz des Staates Israel."

Genf, den 3. Februar 2019

**Andreas Zumach**

*Herr Zumach hat Recht. Die Redaktion.*

\* SZ.de/meld - Rechte am Artikel können Sie hier erwerben.

**In eigener Sache**  
**Gegendarstellung**  
 17. März 2021, 18:30 Uhr

Sie schreiben in der "Süddeutschen Zeitung" vom 23.2.2021 unter der Rubrik Feuilleton auf Seite 9 unter der Überschrift "Mob-Reflex '21" in Bezug auf den von mir betriebenen Blog [www.nollendorfblog.de](http://www.nollendorfblog.de):

"Und - wie es der Nollendorfblog von Johannes Kram fordert - Kegel soll ab sofort keine Machtpositionen als Jurorin von Literaturpreisen (und in der Konsequenz des Gedankengangs als Feuilletonleiterin) mehr innehaben."

Hierzu stelle ich fest:

Ich habe auf dem Nollendorfblog nicht gefordert, dass Frau Kegel ab sofort keine Machtpositionen als Jurorin von Literaturpreisen mehr innehaben soll.

Berlin, den 27.2.2021

Unterszeichnet Johannes Kram

\* SZ - Rechte am Artikel können Sie hier erwerben.

**COVID-19**  
**Live LONG Initiative**

159) <https://www.sueddeutsche.de/sport/eisschnelllauf-gegen-darstellung-1.1349>

160) <https://www.sueddeutsche.de/kultur/gegen-darstellung-1.4316863>

161) <https://www.sueddeutsche.de/kultur/in-eigener-sache-gegen-darstellung-1.5238963>

빌트는 사이트 아래 신문사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sup>162)</sup>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빌트 웹사이트나 빌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우려되는 내용이나 주제, 혹은 제안할 의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빌트 측에 전송을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진행 방식은 다른 신문 또는 방송과 동일하나, 의견을 보내는 자의 전체 주소와 휴대폰 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시 의견을 전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에 대한 고객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4-8] 빌트(Bild)에 불만 사항(의견) 보내는 방법

**KONTAKT ZU BILD**

# Ihre Meinung ist uns wichtig!

TEILEN
TWITTERN
SENDEN

ANZEIGE

**16.12.2015 - 18:02 Uhr**

Liebe Leserin, lieber Leser,

möchten Sie der Redaktion Ihre Meinung zu einem Artikel mitteilen? Haben Sie Anregungen oder Fragen zur Webseite, oder zu anderen Bereichen von BILD oder BILDplus?

Haben Sie ein Thema, das Sie beschäftigt und über das BILD berichten soll?

Dann tragen Sie die erforderlichen Angaben in die dafür vorgesehenen Felder ein und schildern uns kurz Ihr Anliegen.

Damit wir Ihre Nachricht besser zuordnen können, wählen Sie bitte aus dem Menü den Bereich aus, an den Sie sich wenden möchten.

Bitte beachten Sie, dass wir Ihren Leserbrief künftig nur noch zur Veröffentlichung auswählen können, wenn er Ihre vollständige Anschrift und Handynummer enthält.

Indem Sie uns die Informationen zusenden, verarbeiten wir die dabei enthaltenen personenbezogenen Daten. Wenn Sie uns personenbezogene Daten einer anderen Person mitteilen, müssen Sie dazu die ausdrückliche vorherige Einwilligung dieser Person einholen und sie darüber informieren, wie wir personenbezogene Daten gemäß unserer [Datenschutzerklärung](#) verarbeiten.

**Anrede \***

Herr  Frau

**Vorname \***

**Nachname \***

**Straße**

**Hausnummer**

**PLZ**

**Ort**

**Land**

**Telefon-Nummer**

**E-Mail-Adresse \***

**Betreff**

**Bereich \***

**Ihre Mitteilung \***

Informationen / Beschreibung zum Thema

**\* Pflichtfeld**

**Dateien**

선택된 파일 없음

선택된 파일 없음

선택된 파일 없음

z.B. doc, pdf, jps - max. 10 MB

ZURÜCKSETZEN
ABSCHICKEN

162) <https://www.bild.de/corporate-site/kontakt/bildchannel-home/kontakt-43829628.bild.html>

## II. 프랑스

### 1. 프랑스의 대표 방송사

#### (1)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

프랑스 텔레비지옹에는 프랑스의 공영방송으로 아래의 여러 채널이 포함되어 있다.

France 2: 주요 일반 채널

France 3: 지역뉴스와 프로그램

France 4: 젊은 세대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France 5: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중점

France Info: 보도 전문 프로그램

Canal+: 영화, 스포츠 중계, 오리지널 시리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유료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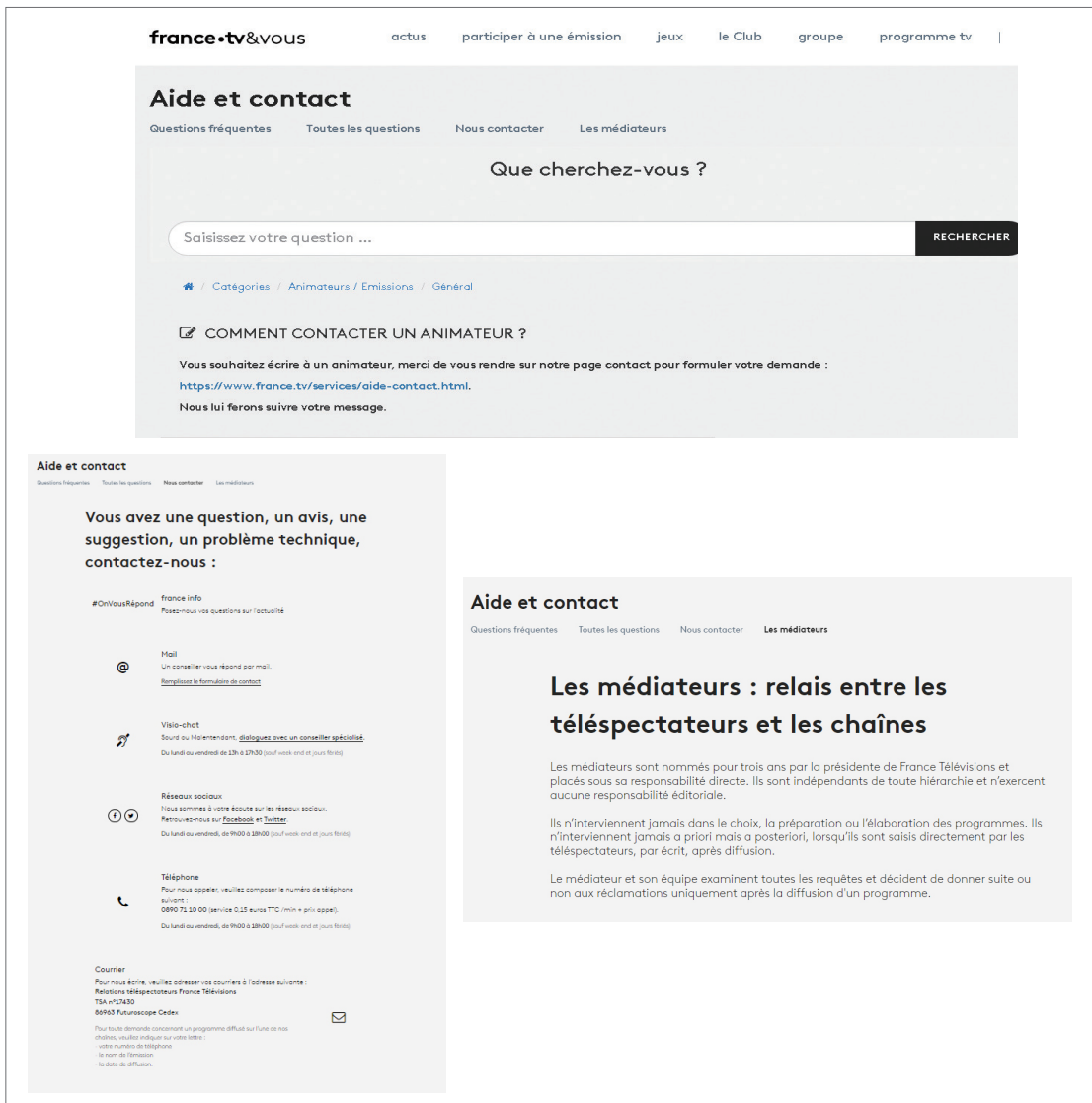
프랑스 텔레비지옹은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와 광고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엄격한 윤리 현장을 준수하고 있다. 윤리 현장은 사람에 대한 존중(Respect des personnes), 환경 존중(Respect de l'environnement), 건강, 위생 및 안전(Santé, hygiène et sécurité), 콘텐츠 및 배포되는 제품에 대한 윤리적, 비도덕적 약속(Engagements éthiques et déontologiques en matière de contenus et de produits diffusés), 정치 및 협회 활동(Activité politique et associative), 이해 상충 방지(Prévention des conflits d'intérêts), 선물 및 초대(Cadeaux et invitations), 고객, 공급업체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관계(Relations avec les clients, les fournisseurs et les prestataires), 사기 및 부패 방지(Lutte contre la fraude et la corruption), 전문가 재량 및 기밀 유지(Discretion professionnelle et confidentialité), 회사 자산 보호(Protection des actifs de l'entreprise), 그룹 외부 및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à l'extérieur du groupe et sur les réseaux sociaux)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63)</sup>

프랑스 텔레비지옹에서 방송 진행자(ANIMATEUR)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163) <https://www.francetelevisions.fr/groupe/nos-engagements/charte-delthique-47>

방법이 있다. 먼저 ‘도움 및 연락처(Aide et contact)’라는 문의 페이지 내 ‘문의하기(Nous contacter)’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의견, 제안이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을 취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만을 받고 있다. 다만 견해를 보낼 수 있는 수단은 비교적 다양한데 이메일, 영상 채팅, 소셜 네트워크, 전화, 우편을 모두 제공한다.<sup>164)</sup>

[그림 4-9] 프랑스 텔레비지옹(France Télévisions)의 시청자 의견 페이지와 옴부즈맨(les médiateurs)



164) <https://www.france.tv/services/aide-contact.html>

다음으로 방송사와 시청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전문 제도인 ‘옴부즈맨(Les médiateurs, 중재자)’에 불만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다. 옴부즈맨은 프랑스 텔레비지옹 사장이 직접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옴부즈맨은 방송사 내 모든 조직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프로그램 제작 단계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은 채, 방송 후 시청자가 서면으로 직접 연락할 때만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신청된 모든 요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기도 한다.

## (2) 떼에프엥(TF1)

공영방송으로 시작한 떼에프엥은 1987년 4월 민영화가 되면서,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최대 민영 방송국이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뉴스, 스포츠 중계 등을 제공한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피드백 또는 문의가 가능한 창구를 운영 중이다.

[그림 4-10] 프랑스 떼에프엥(TF1)의 시청자 의견 페이지

MYTF1 Centre d'aide

MYTF1 > Envoyer une demande

### Nous contacter

Adresse e-mail

Etes-vous abonné à MYTF1 MAX?

Votre nom

Sujet

Descrip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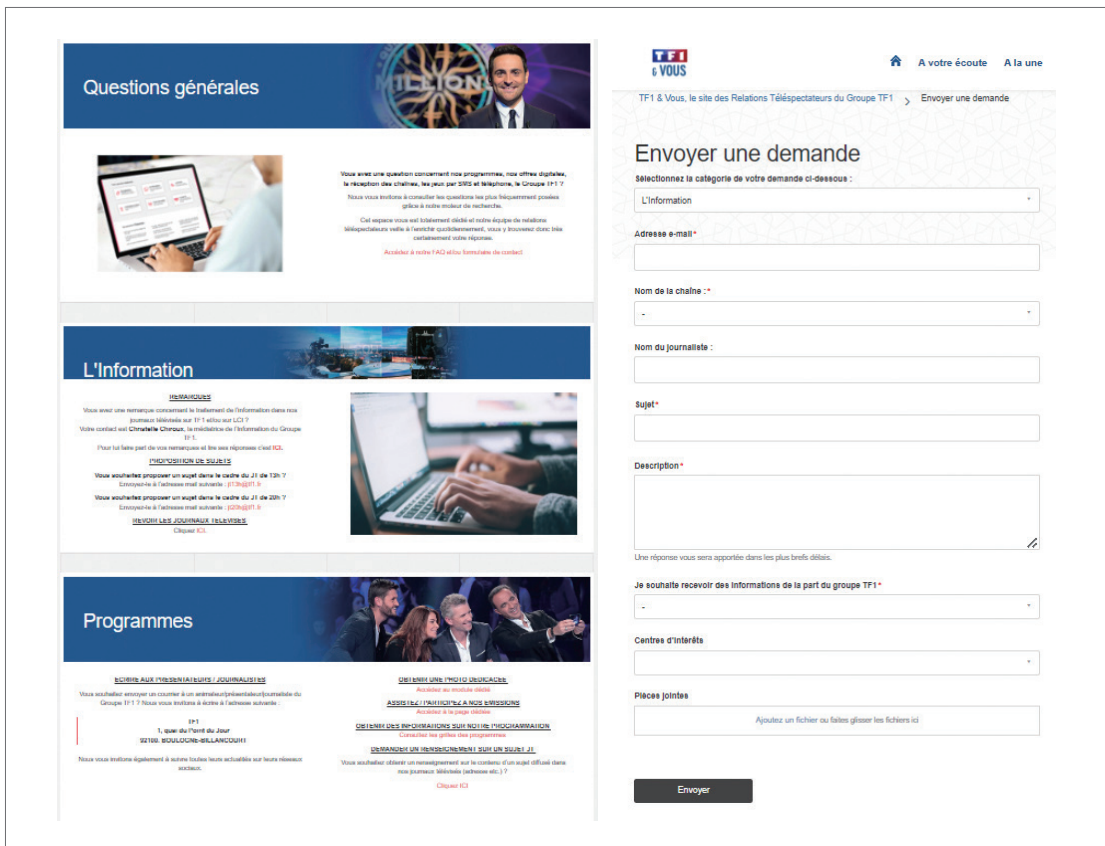
Pièces jointes (valeur facultative)

Envoyer

이 외에 떼에프엡 그룹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2009년부터 ‘떼에프엡과 당신(TF1&VOUS)’이라는 섹션을 운영 중이다. ‘떼에프엡과 당신’은 시청자에 대한 모든 답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질문을 할 경우 가능한 48시간 이내에 답변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sup>165)</sup>

해당 섹션에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들, ② 뉴스 정보 처리에 대한 제안(가령 ‘뉴스 주제’ 추천 등) 그리고 ③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보내는 곳으로 나뉜다. 다만 위 섹션이 반론권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 그보다는 시청자 혹은 언론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집중한다. 즉 ‘떼에프엡과 당신’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보다는 시청자가 방송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는 데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 ‘떼에프엡과 당신’ 섹션 내 의견 개진 창구와 시청자 의견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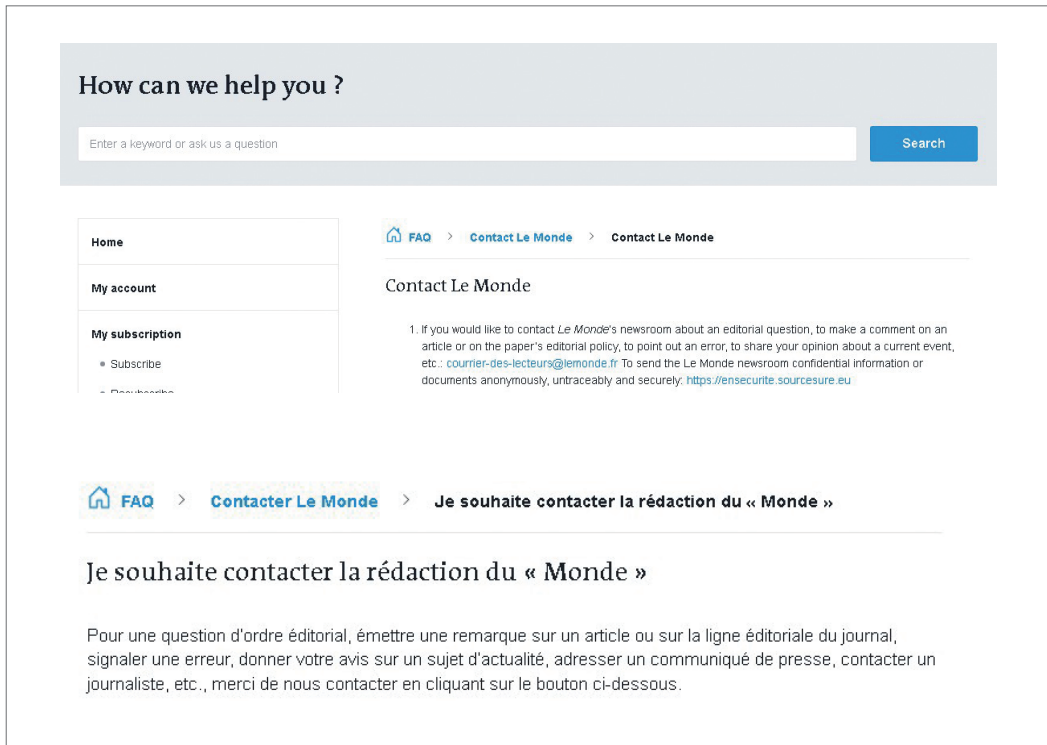
165) <https://tf1-et-vous.tf1.fr/qui-sommes-nous>

## 2. 프랑스의 대표 신문사

### (1) 르몽드(Le Monde)

르몽드는 1944년에 설립된 프랑스의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일간지 중 하나이다. 르몽드는 ‘르몽드에게 문의하기(Contacter Le Monde)’섹션을 통해, 다양한 의견, 질문, 제안, 참여 등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편집진에 대한 편집 관련 질문,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 기사 또는 신문 편집 라인에 대한 의견, 시사 이슈에 대한 의견, 오류 지적, 보도 자료 전송 등에 관해 기자에게 문의할 수 있는 포괄적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4-12] 르몽드(Le Monde)의 독자 의견 페이지



특히 르몽드는 독자들의 불만 사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 및 처리하는 ‘옴부즈맨(mediator)’을 1994년부터 별도로 운영한 바 있는데, 2020년 독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 ‘독자 관계를 담당하는 이사직(Un poste de directeur délégué aux relations avec les lecteurs)’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불만 사항을

개별적으로 또는 다양한 미디어에 게재될 텍스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sup>166)</sup>

## (2) 르 피가로(Le Figaro)

르 피가로는 1826년에 설립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중 하나이다. 르 피가로에서는 편집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다면 이름 + 성 + @lefigaro.fr를 입력해 피가로 저널리스트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즉, 기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취지로 장려하고 있다.

[그림 4-13] 르 피가로(Le Figaro)의 독자 의견 페이지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of the Le Figaro website. The top screenshot is titled 'Comment contacter un journaliste ?' and contains the following text: 'Vous avez une information à proposer au Figaro ? Si vous voulez que la rédaction relaie votre information, vous pouvez contacter un journaliste du Figaro par mail : première lettre du prénom + nom de famille + @lefigaro.fr (sans point ni tiret ou autres caractères). N'hésitez pas à regarder les signatures des articles pour en repérer l'auteur afin d'adresser votre information au bon journaliste.' The bottom screenshot is titled 'Envoyer une demande' and show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dresse e-mail\*', 'Quel est le sujet de votre message ?\*' (with a dropdown menu), 'Description\*', and 'Pièces jointes (valeur facultative)'. There is an 'Envoyer' button at the bottom of the form.

166) [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20/03/20/le-monde-fait-evoluer-ses-relations-avec-ses-lecteurs\\_6033840\\_3236.html](https://www.lemonde.fr/actualite-medias/article/2020/03/20/le-monde-fait-evoluer-ses-relations-avec-ses-lecteurs_6033840_3236.html)

르 피가로와 같은 경우 르몽드처럼 독자의 불만 사항을 전담하는 부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위 의견 페이지 등을 통해 독자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관련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다.

### (3) 리베라시옹(Libération)

리베라시옹은 1973년에 설립된 일간지로 주로 문화와 사회 문제 논의를 다룬다. 리베라시옹은 사이트 안에 ‘자주 묻는 질문(Foire aux questions)’, ‘문의(Contactez-nous)’ 그리고 ‘제안(Petites annonces)’이라는 섹션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의 경우 대체로 구독 관련 질문이 중심이었고, ‘제안’은 광고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었다. 그 외 ‘문의하기’에서 피드백 및 문의가 가능한 일반적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4-14] 리베라시옹(Libération)의 독자 의견 페이지

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Contactez-nous' (Contact Us) page on the Libération website. At the top left is the Libération logo. To its right is a navigation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Politique, International, CheckNews, Culture, Idées et Débats, Société, Enquêtes, Environnement, Economie, Lifestyle, Portraits, Sports. Below the navigation menu is a 'Accueil' link.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Contactez-nous' and contains a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and options:

- Votre demande concerne :** \* (Dropdown menu)
- Objet de votre message :** \* (Text input field)
- Votre message :** \* (Text area)
- Votre e-mail :** \* (Text input field)

Below the form, there are two checkboxes for newsletter preferences:

- Je souhaite recevoir la newsletter quotidienne de Libération :
- Chaque matin, les actualités à ne pas manquer de la journée
- Chaque soir, le journal du lendemain en avant-première

At the bottom of the form, there is a note: \* Champs obligatoires. A red 'Valider'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form.

### III. 영국

#### 1. 공영방송 BBC

오프콤(Ofcom)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칙허장<sup>167)</sup> 발행 이후 BBC의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시청자 이의제기 건수는 총 112건이었으며, BBC는 접수된 112건 중 22건에 대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오프콤은 BBC의 업무 처리 방식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 그 가운데에는 시청자 불만 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더욱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2).

BBC는 방송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요청을 포함한 이용자의 문제 제기를 시청자 불만처리시스템으로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BBC 방송 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오프콤에 신고하기에 앞서 BBC에 먼저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BBC의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나중에 불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지만 BBC가 완전히 답변한 후에 가능하다. 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에 대한 불공정성 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은 예외적으로 BBC 또는 오프콤 중 한 곳에 먼저 제기할 수 있지만, 두 기관에 동시에 제기할 수는 없다.<sup>168)</sup>

BBC는 시청자의 불만 처리와 관련하여 ‘BBC 우선 처리시스템(BBC First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ITV 등 타 방송사는 오프콤으로 바로 접수되는 반면에, BBC는 내부에서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BBC에 시청자 불만이 접수되면 BBC 시청자서비스(BBC Audience Services) 부서에서 초기 대응을 한다. 이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불만 사항과 관련해서는 BBC 간부나 편성팀에서 직접 응답하거나 시청자서비스 부서가 이들의 답변을 대리하여 전달한다. 이 단계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시청자 불만 사항은 BBC 불만처리 절차의 최고 수준인 행정불만 부서 ECU(Executive Complaints Unit)로 접수된다. 이 같은 BBC의 모든 불만처리 과정을 통해서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 오프콤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주대우, 2022).

167) 영국 칙허장(the Royal Charter)은 정부가 아닌 국왕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공영방송 BBC의 모든 법적 의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매 10년마다 갱신된다. 2017년 발효된 칙허장의 내용은 2027년까지 유효하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0).

168) <https://www.bbc.co.uk/contact/how-we-handle-your-complaint>

〈표 4-1〉 BBC의 시청자 불만 처리 단계

시청자 불만 처리 단계	내용	대응 시간 목표치 (target response time)
Stage1a	BBC 시청자 서비스 부서에서 초기 대응	10일
Stage1b	BBC 간부나 편성팀에서 대응	20일
Stage2	ECU에서 대응	20일 (단, 장기간 조사가 필요한 경우 35일)

출처: BBC. (2020.6.). BBC Complaints Framework and Procedures

### 1) BBC 편집 지침에서의 ‘불만 사항(Complaints)’

BBC의 가치와 표준으로 제시된 편집 지침(The BBC’s Editorial Standards)에는 불만 사항(1.6 Complaints)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sup>169)</sup>

편집 지침에서 ‘불만 사항’에 명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BBC는 실수가 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불만 처리 및 해결을 위한 절차를 설정하고 게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BBC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은 불만 처리 절차에 명시된 대로 BBC 시청자서비스에서 일차적으로 처리하지만 응답에 불만이 있는 불만 제기자는 BBC의 행정불만 부서(ECU Executive Complaints Unit)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영진 불만처리 부서에서는 특정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항목과 관련하여 BBC의 편집기준 위반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처리하며, 이 부서에서는 BBC가 편집 책임을 지는 모든 BBC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불만을 처리한다.

행정 불만처리 부서가 본 지침에 명시된 편집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BBC 불만 처리 웹페이지에 게시되며, BBC에 사과 또는 정정 방송을 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준하여 최종적으로 정정보도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 역시 ‘불만 사항’ 접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는 불만 제기자가 집행 불만처리 부서의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 사항이 오픈컴이 규제하는 BBC 콘텐츠와 관련된 경우, 불만 제기자는 BBC가 불만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해당 사안을 오픈컴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오픈컴은 오픈컴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169)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guidelines/editorial-standards/#accountability> (최종검색: 2023.0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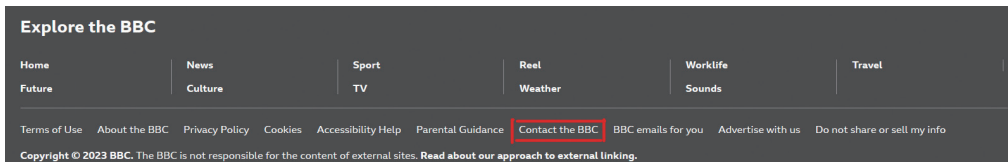
한편, 불만 사항이 온라인 자료와 관련된 경우, 오프콤은 해당 자료가 본 편집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BBC에 해당 사안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오프콤은 더 이상의 강제 권한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는 BBC 편집 지침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는 불만 처리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본다.

## 2) BBC 불만 처리시스템

BBC 방송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 제기 필요성이 있을 경우, 아래의 [그림 4-15]와 같이 메인 홈페이지 하단에 제시된 ‘BBC 문의(Contact the BBC)’를 통해 시청자의 불만 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15] BBC 홈페이지 ‘Contact the BBC’



출처: <https://www.bbc.com>

‘Contact the BBC’를 클릭하면 [그림 4-16]에서 보는 것처럼 ‘불만(Complaints)’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안내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불만’뿐 아니라, 시청자가 ‘질문(Questions)’을 하거나 ‘의견(Comments)’을 낼 수 있는 페이지로도 입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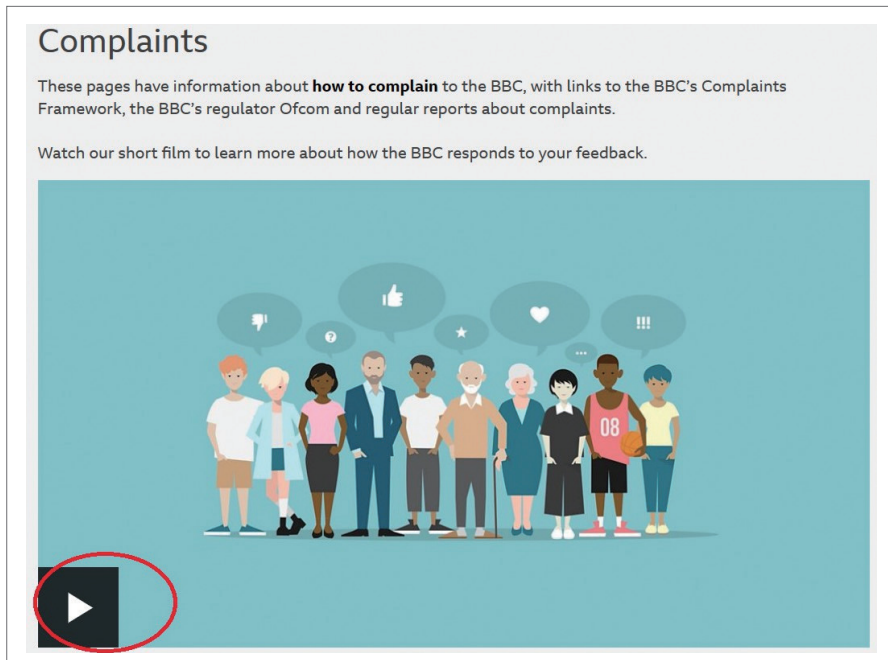
[그림 4-16] BBC 홈페이지 ‘Complaints’



출처: <https://www.bbc.co.uk/contact>

‘불만(Complaints)’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이 페이지에는 BBC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BBC의 불만 제기 프레임워크, BBC의 규제기관인 오프콤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정기 보고서에 대한 링크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sup>170)</sup> 링크가 연결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누르면 절차에 대한 설명이 게시되어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며, 불만 제기 방법은 문자 이외에 안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림 4-17] BBC 불만 제기 방법 안내 화면



출처: <https://www.bbc.co.uk/contact/complaints>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해당 페이지<sup>171)</sup>와 BBC 불만 제기 프레임워크<sup>172)</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만 제기 안내에는 [bbc.co.uk](http://bbc.co.uk) 또는 BBC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콘텐츠가 방송 또는 게시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170) <https://www.bbc.co.uk/contact/complaints>

171) <https://www.bbc.co.uk/contact/how-we-handle-your-complaint>

172) BBC. (2020. 6.). BBC Complaints Framework and Procedures (URL: [https://www.bbc.co.uk/contact/sites/default/files/2023-03/BBC\\_Complaints\\_Framework.pdf](https://www.bbc.co.uk/contact/sites/default/files/2023-03/BBC_Complaints_Framework.pdf)).

BBC iPlayer<sup>173)</sup> 및 BBC Confidential Sounds<sup>174)</sup>에 대한 불만 사항 역시 콘텐츠 제공이 중단된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sup>175)</sup>

BBC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불공정(unfair treatment) 또는 사생활 침해(infringement of privacy)에 대하여 1차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불만제기 기한은 없지만 BBC가 이를 조사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고려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즉, 30일의 기한을 넘겨도 불만 사항은 접수할 수 있으나 불만 접수가 지연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불만 사항이 BBC의 편집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심각하며, 조사 후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만족하는 경우에만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불만 사항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ECU(Executive Complaints Unit)에 해당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BBC에서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4-2〉 BBC의 시청자 불만 처리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불만 제기.	➡	불만 사항을 하룻밤 사이에 생산자와 관리자에게 회람. • 서면으로 제기한 불만은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답변 • 전화로의 불만 제기는 불만 사항을 요약하여 회람하지만 회신하지 않음(장애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제외) •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대응	➡	더 이상 필요 없기를 바람. • 필요한 경우 케이스 번호를 기재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다시 작성 • 비슷한 기간에 답변 예상 • 불만 사항에 대한 정기 보고서 발행 (BBC와 오프콤)

‘불만 제기 작성(Make a Complaint)’ 페이지<sup>176)</sup>에 들어가면,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가 되어있다. 대부분의 서면으로 제기한 불만 사항은 2주 이내에 답변하지만, 일부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고지해 놓았고, 불만 사항과 피드백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름과 메일주소, 연락처를 수집한다는 안내가 되어있다.

173) BBC iPlayer는 BBC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 및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및 스마트 TV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174) BBC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와 팟캐스트이다.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175) 30일이 경과한 후 BBC에 연락하는 경우, 불만 제기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불만 사항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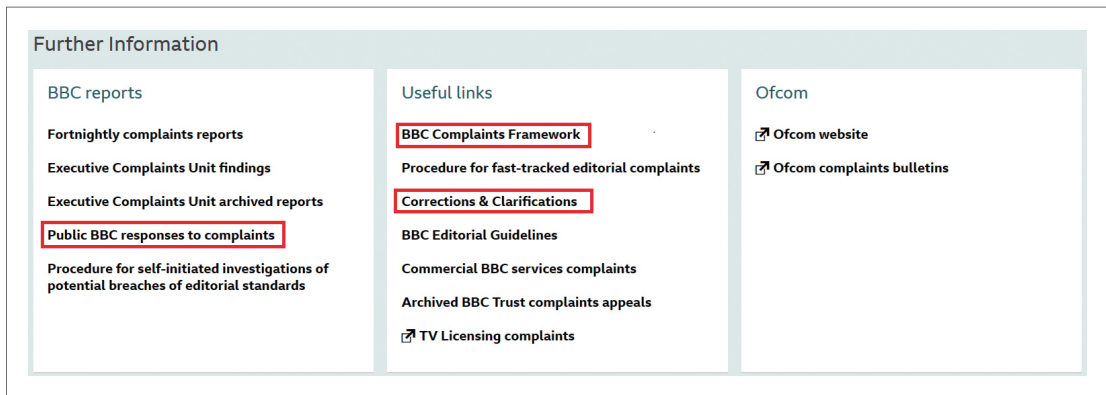
176) <https://www.bbc.co.uk/contact/complaints/make-a-complaint/#/Complaint>

다음으로 불만 사항 기재 단계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TV(프로그램/편성표)’, ‘라디오’, ‘이전 불만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BBC 웹사이트 또는 앱’, ‘BBC 아이플레이어’, ‘BBC 사운드’, ‘수신 문제’, ‘블로그 및 댓글’ 중에 항목을 선택하고, 채널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만 사항의 범주는 ‘편향성(Bias)’, ‘사실 오류 또는 부정확성(Factual error or inaccuracy)’, ‘위법행위(Offence)’, ‘저품질(Poor quality)’, ‘일정(Scheduling)’, ‘인터뷰/발표 기준(Standards of interviewing/presenting)’, ‘과잉보도(Too much coverage)’, ‘불충분한 보도(Not enough coverage)’ 가운데 선택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반론 및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경우, ‘편향성’이나 ‘사실 오류 또는 부정확성’, ‘위법행위’ 중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불만 사항 작성이 안내된 ‘불만’ 제기 메인 페이지 가장 하단에는 그 밖의 불만 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가 ‘추가 정보’란 링크 정보로 안내되어 있다.

[그림 4-18] BBC ‘불만’ 제기 페이지의 ‘추가 정보’



출처: <https://www.bbc.co.uk/contact/complaints>

‘추가 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BBC의 불만 제기 프레임워크(BBC Complaints Framework)’에는 BBC의 불만 사항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처리 절차는 편집 관련 불만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편집의 불만(editorial complaint)’에 대하여 “BBC 서비스에서 방송 또는 공표된 특정 항목이 BBC의 편집 지침에 명시된 기준(정확성과 공정성을 준수하고 부당한 공격을 피하는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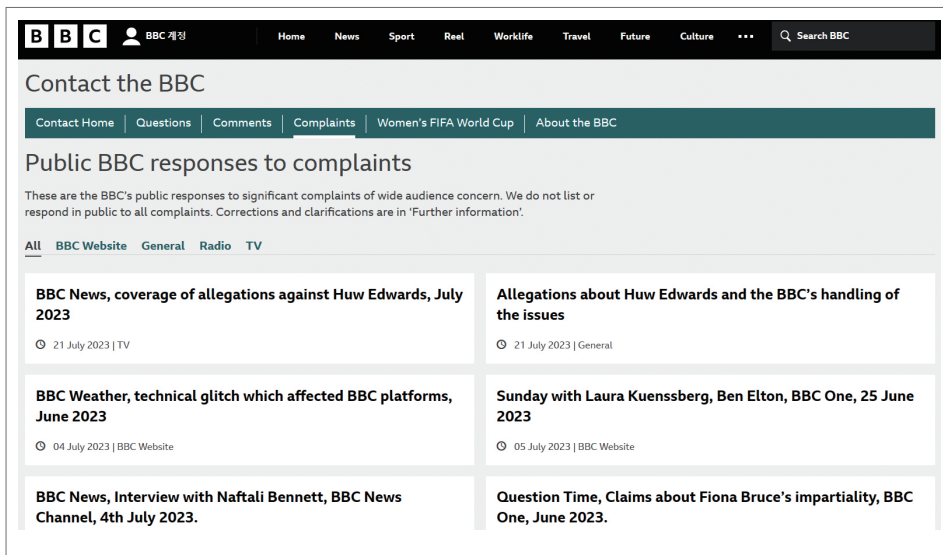
BBC는 시청자의 불만 사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BBC 편집

지침(Editorial Guidelines), 오프콤의 기대 기준 및 시청자 조사(Ofcom’s expected standards and audience research)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만약 BBC 측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BBC의 편집 표준 위원회는 매월 불만 사항을 검토하여 BBC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통해 편집, 규정 준수 또는 그 밖의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sup>177)</sup>

### 3) 불만 사항에 대한 공개 응답

BBC ‘불만’ 제기 페이지의 ‘추가 정보’에서 볼 수 있는 ‘불만 사항에 대한 BBC 공개 응답(Public BBC responses to complaints)’ 페이지에는 광범위한 시청자가 제기한 중대한 불만 사항에 대한 BBC의 공개 응답이 게시되어 있다. BBC는 모든 불만 사항을 나열하거나 공개적으로 응답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대한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사과나 중요한 수정, 진술과 응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게시된 ‘수정 및 설명(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에서 다루고 있다.

[그림 4-19] 불만 사항에 대한 BBC 공개 응답



출처: <https://www.bbc.co.uk/contact/complaints/recent-complaints>

177) BBC는 불만 제기 서비스를 오용하는 경우, 서신을 중단하거나 향후 서비스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개 응답의 형식은 관련 보도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 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BBC의 응답을 게시하고 있다. 그중 최근의 사례를 소개하면, 나프탈리 베넷(Naftali Bennett)과의 인터뷰를 보도한 BBC 뉴스(2023년 7월 4일)에 대한 불만 사항 답변(2023년 7월 5일)<sup>178)</sup>에서 해당 불만 사항의 요약 내용은 “최근 서안지구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나프탈리 베넷 전 이스라엘 총리와의 인터뷰와 관련하여 의견과 불만이 접수되었고, 제기된 불만은 제닌(Jenin) 난민 캠프에서 발생한 젊은이들의 사망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BBC는 이 불만 제기들에 대하여, “BBC 뉴스 채널을 포함한 BBC의 모든 플랫폼에서 이러한 사건은 공정하고 견고한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유엔은 제닌에서의 작전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인터뷰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정당한 주제였지만, 이 질문에서 사용된 언어가 적절하지 않았고 부적절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sup>179)</sup>고 게시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BBC의 공정성 및 친보수 편향성 주장에 대하여 2023년 3월 31일에 올린 BBC의 공개 응답 사례이다.<sup>180)</sup> BBC가 공정하지 않고 친보수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불만에 대하여 BBC는 공개 답변으로, 공정성이 시청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BBC 현장에 명시된 약속이자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가치라고 하였다. ‘공정성’, ‘정확성’, ‘신뢰’라는 편집 가치는 영국 및 전 세계 시청자와의 관계의 토대이며 BBC의 우선순위는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정확하며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대표적이고 관련성 있는 견해와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BBC는 최고의 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10개 항목의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공정성 계획에 대한 10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181)</sup>

178) BBC News, Interview with Naftali Bennett, BBC News Channel, 4th July 2023. (URL: <https://www.bbc.co.uk/contact/complaint/bbcnewsnaftalibennett>)

179) Across the BBC’s platforms – including the BBC News channel – these events have been covered in an impartial and robust way. The United Nations raised the issue of the impact of the operation in Jenin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While this was a legitimate subject to examine in the interview, we apologise that the language used in this line of questioning was not phrased well and was inappropriate.

180) Impartiality of the BBC and allegations of pro-Conservative bias (URL: <https://www.bbc.co.uk/contact/complaint/bbcimpartiality>)

181) BBC delivers progress on Impartiality Plan (URL: <https://www.bbc.com/mediacentre/2022/bbc-delivers-progress-on-impartiality-plan>).

#### 4) 불만 사항에 대한 수정 및 설명

BBC ‘불만’ 제기 페이지의 ‘추가 정보’에서 볼 수 있는 ‘수정 및 설명(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페이지에서는 시청자의 불만 사항에 대하여 사과나 중요한 수정, 진술과 응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게시하고 있다. 이 페이지에는 뉴스 기사에 대한 일상적인 수정, 사소한 방송 사과 및 일정 변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불만 사항에 대한 BBC 공개 응답’과 달리 ‘수정 및 설명’에서는 시청자의 불만 사항에 대한 요지는 생략하고 해당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상황 설명과 BBC의 입장을 게시하고 있다.

현재는 2012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의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0] 불만 사항에 대한 BBC 수정 및 설명

출처: [https://www.bbc.co.uk/helpandfeedback/corrections\\_clarifications](https://www.bbc.co.uk/helpandfeedback/corrections_clarifications)

- **사례 1:** 발행 순서대로 게시되어 있는 ‘수정 및 설명’ 가운데 보도 내용의 오류에 대해 BBC가 사과한 사례들을 소개하면, 우선 2023년 5월 4일 BBC 라디오 스코틀랜드의 ‘굿모닝 스코틀랜드’에서 방송된 내용에 대한 지적한 사항이며, BBC는 2023년 6월 23일에 이에 대한 설명을 업로드 하였다.<sup>182)</sup> BBC는 굿모닝 스코틀랜드 인터뷰와

182) Good Morning Scotland BBC Radio Scotland, 4 May 2023. (URL: [https://www.bbc.co.uk/helpandfeedback/corrections\\_clarifications](https://www.bbc.co.uk/helpandfeedback/corrections_clarifications) (최종검색: 2023.07.23.))

인터뷰 후 이어진 트윗에서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선언문 공약을 수상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 공약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초등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며, 무료 아침 식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공약은 중등학교 학생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도하지 못한 오류에 대하여 사과한다고 밝혔다.<sup>183)</sup>

- **사례 2:** 2023년 5월 12일에 BBC One의 프로그램인 ‘Morning Live’에서 방송한 내용에 대한 사안이다. 방송에서는 TV 라이선스 결제와 관련된 사기에 대한 뉴스에서 ‘75세 이상이면 TV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했으며, ‘75세 이상이면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방송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이는 사실이 아니며, 75세 이상이고 연금 크레딧을 받지 않는 사람은 TV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정정하고 있다. 연금 크레딧을 받고있는 75세 이상 또는 연금 크레딧을 받고 있는 75세 이상 또는 연금 크레딧을 받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BBC가 비용을 지불하는 무료 TV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하며, 실수를 사과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84)</sup>

## 2. 전국 일간지 타임스(The Times)

타임스(The Times)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전국 일간지이며, 가장 많이 팔리는 인쇄 신문이다. 2018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영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국 신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sup>185)</sup>

타임스의 반론 및 정정보도와 관련한 규정은 ‘타임스 편집 불만(The Times Editorial Complaints)’에서 찾을 수 있다.

183) In a Good Morning Scotland interview, and in a tweet trailing the interview, we said that the First Minister was u–turning on a manifesto commitment to provide free school meals to all of Scotland’s schoolchildren. We should have made clear that this commitment was in relation to all of Scotland’s primary school children only, not those at secondary schools, where the SNP’s manifesto had pledged only to run a pilot scheme for free breakfasts. We apologise for the err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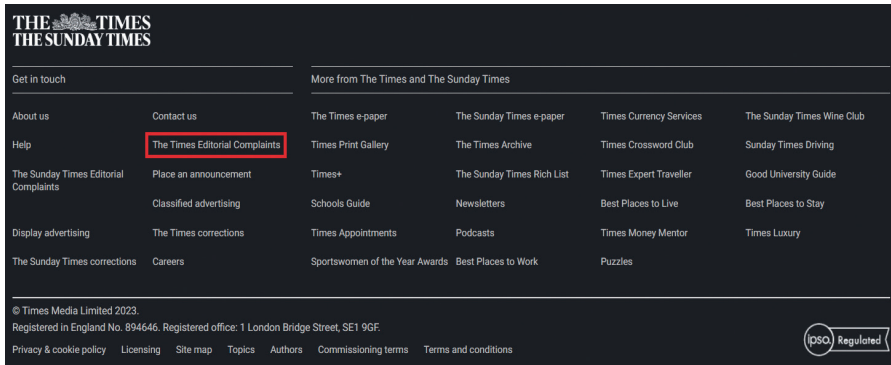
184) In an item about scams involving TV Licence payments we said ‘if you’re over 75 you don’t need a TV Licence’. We also said ‘if you are over 75 you need a licence but you don’t pay for it’. As we later clarified on the show, this is not correct. People who are over 75 and not in receipt of Pension Credit have to pay for a TV Licence. Over 75s in receipt of Pension Credit or those living with people who receive Pension Credit are entitled to a free TV Licence paid for by the BBC. We apologise for the mistake.

185) <https://www.thetimes.co.uk/static/about-us/>(최종검색: 2023.07.23).

### 1) 타임스(The Times)의 불만 제기 정책

타임스의 편집 불만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하단에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1] The Times 홈페이지 하단 ‘The Times Editorial Complaints’



출처: <https://www.thetimes.co.uk>

타임스 편집 불만(The Times Editorial Complaints)의 전문(前文)에서는 타임스는 편집 내용에 대한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독립언론표준기구(IPSO: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zation) 규칙과 IPSO가 시행하는 편집자행동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86)</sup>

참고로, 영국의 독립언론표준기구(IPSO)는 신문 및 잡지 사업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IPSO의 편집자행동강령(Editors’ Code of Practice)은 제1조 정확성(Accuracy)부터 제16조 범죄자에 대한 금품 제공(Payment to criminals)까지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7)</sup>

독립언론표준기구(IPSO)의 편집자행동강령 반론 및 정정보도와 관련한 조항은 제1조 ‘정확성’이다. 제1조 제2항은 “증대한 부정확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왜곡이 있는 경우, 즉시 눈에 잘 띄게 정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IPSO와 관련된 경우,

186) <https://www.thetimes.co.uk/static/the-times-editorial-complaints/>

187) 영국 독립언론표준기구(IPSO)의 편집자실천강령은 영국 언론 자율규제 시스템의 초석이다. IPSO는 2014년 9월 8일 업계의 새로운 규제기관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의 편집자 실천 강령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편집자 실천 강령 서문은 IPSO의 규제를 받는 신문사와 잡지사가 본 강령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실천 강령은 편집자 강령 위원회에서 작성하였고, 가장 최신 버전은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URL: <https://www.ipso.co.uk/editors-code-of-practice/>). 영국 독립언론표준기구(IPSO)의 편집자 실천 강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해외 각국의 관련 법률 및 자율규제에서 ‘영국’ 편을 참고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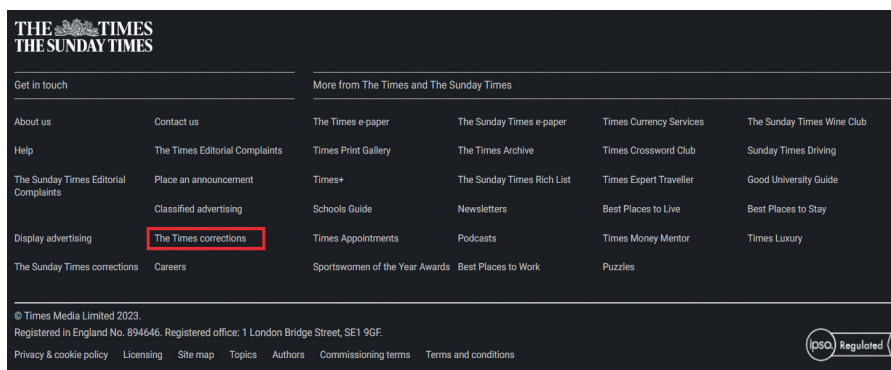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눈에 잘 띄게 정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은 “중대한 부정확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한 답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88)</sup>

타임스 편집 불만(The Times Editorial Complaints)에는 불만 제기 정책(Complaints policy)과 불만 제기 방식 등이 제시되어 있다. 편집 관련 불만 사항은 이메일(feedback@thetimes.co.uk)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불만 제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타임스는 모든 불만 사항을 접수 즉시 확인하고, 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IPSO 편집자강령에 따라 제기된 모든 불만 사항을 28일 이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해당 기간 내에 불만 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문제를 IPSO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불만 제기에 대한 타임스(The Times)의 수정 및 설명

타임스에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은 ‘수정 및 설명(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Times 홈페이지 하단의 ‘타임스 수정(The Times corrections)’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입장할 수 있다.

[그림 4-22] The Times 홈페이지 하단 ‘The Times corr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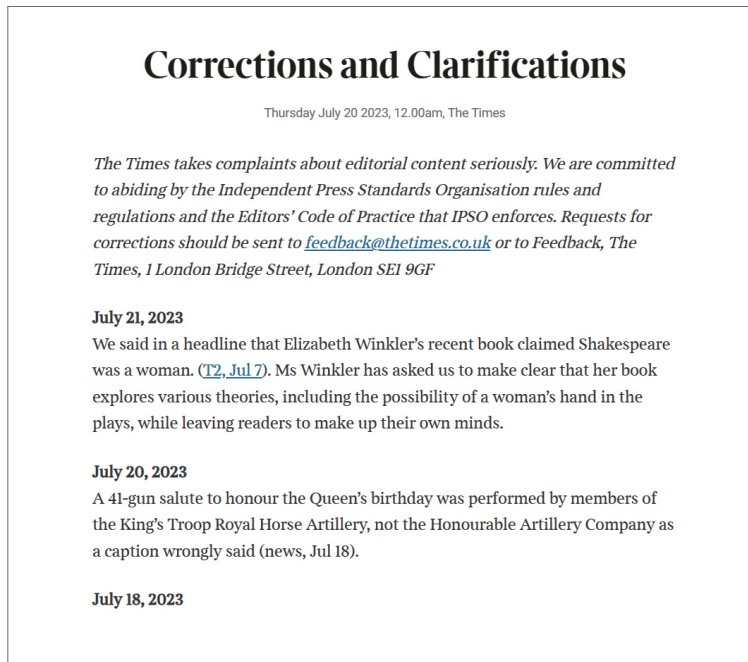


출처: <https://www.thetimes.co.uk/>

188) Clause 1 (Accuracy) ii) A significant inaccuracy, misleading statement or distortion must be corrected, promptly and with due prominence, and — where appropriate — an apology published. In cases involving IPSO, due prominence should be as required by the regulator. iii) A fair opportunity to reply to significant inaccuracies should be given, when reasonably called for. URL: <https://www.ipso.co.uk/editors-code-of-practice/>

‘수정 및 설명(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은 아래 [그림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만 제기 사안에 대한 답변을 발행 순서대로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3] The Times의 ‘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출처: <https://www.thetimes.co.uk/article/corrections-and-clarifications-5phnn0xh2?shareToken=297055931d573a34e4baf3db1b428110>

- **사례 1:** 2023년 7월 3일 업로드된 정정보도의 사례를 보면, 타임스는 2021년 12월 2일 기슬레인 맥스웰(Ghislaine Maxwell)의 형사 기소에 대한 증거를 보도하면서, 에미 테일러(Emmy Tayler)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제기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보도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며, 테일러 씨에게 끼친 피해와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손해배상금과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sup>189)</sup>고 보도의 내용을 정정하고 손해배상금 지급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189) In reporting evidence given in the criminal prosecution of Ghislaine Maxwell (News, December 2, 2021), we made a wrongful allegation about Emmy Tayler. We accept that this was not a correct account and apologise sincerely to Ms Tayler for the harm and upset caused to her. We have agreed to pay damages and legal costs.

- **사례 2:** 2023년 5월 16일에 게시된 정정보도는 2022년 11월 21일 보도에 대한 것인데, 타임스는 당시 디나 로즈(Dinah Rose) KC가 변호사표준위원회로부터 무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였다고 정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변호사표준위원회는 디나 로즈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으며 무모함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인용한 헌법 원칙에 따라 변호사 규칙에 따라 케이맨 제도 정부의 동성 결혼 권리에 관한 사건에서 케이맨 제도 정부를 위한 변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고 자신들의 보도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정 내용을 게시하였다. 타임스는 이 건으로 인해 로즈 씨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상당한 손해배상금과 법적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sup>190)</sup>
- **사례 3:**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지 않고 정정보도를 게시한 사례도 다수 있다. 그중 하나를 살펴보면, 타임스는 2022년 12월 28일 뉴스에서 조나단 드후게(Jonathan D’Hooghe)를 비난한 서부전선협회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연례 지회장 회의의 결과로만 이어졌다고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도였으며 그 무렵에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고 밝히 사례이다. 또한 단체는 처음으로 불만이 접수된 지 2주 이내에 드후게 씨가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타임스는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실수에 대해 사과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게시하고 있다.<sup>191)</sup>
- **사례 4:** 지난 2022년 12월 23일 보도되었고 5일 후 28일에 정정되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된 사안이다. 타임스는 브릭스톤 아카데미에서 열린 아사케(Asake)의 첫 두

190) We suggested on November 21, 2022, that Dinah Rose KC had been ruled against for recklessness by the Bar Standards Board. This was incorrect. The Board made no ruling against her and found no evidence of recklessness. We accept that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which she cited, the Bar rules did not allow her to refuse a brief for the Cayman Islands government in a case concerning the right to same-sex marriage. The article was therefore misleading. We apologise to Ms Rose for the distress caused, and have agreed to pay her substantial damages and legal costs.

191) We wrongly reported that an independent review of the actions of the Western Front Association over the censuring of Jonathan D’Hooghe only followed as a result of the annual meeting of branch chairmen (news, Dec 28). In fact it was already under way by that time. The charity has also asked us to make clear that Mr D’Hooghe was removed as a trustee within two weeks of the first complaint being received. We are happy to put this on record and apologise for the mistake.

공연에 180명의 경호원이 근무했으며, 세 번째 공연에서는 120명이나 130명으로 경호원이 줄었다고 보도하였는데, 아카데미 측에서 첫 번째 공연에는 171명, 두 번째 공연에는 152명, 세 번째 공연에는 158명의 보안 직원이 근무했다고 알려와 이를 바로잡는다는 정정 기사이다. 타임스는 이 사실을 기록에 남기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이고 있다.<sup>192)</sup>

## IV. 미국

### 1. CBS(Columbia Broadcasting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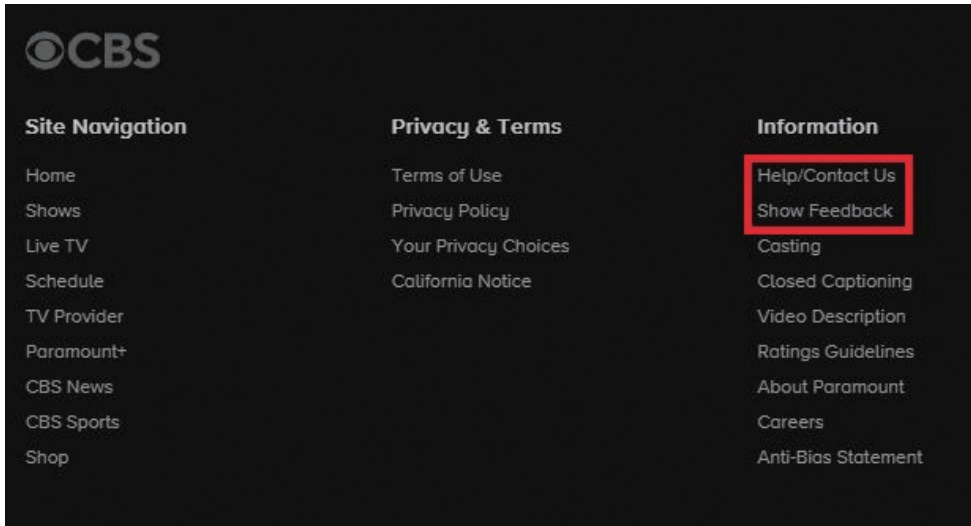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5대 방송사 중 컴캐스트(Comcast)와 CBS만 자체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윤리와 정직성에 관한 규정집이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대부분의 미국 방송사에는 앞서 뉴욕타임스와 같은 온라인 정정 기사 섹션이 없다. 미국의 3대 방송사 중 한 곳인 CBS는 2006년 온라인 기고문을 통해 CBS 뉴스가 정정보도를 다루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 1) CBS의 정정보도 절차

CBS는 별도의 피드백 사이트가 없는 대신 방송사 홈페이지 하단에 “Help/Contact Us”와 “Show Feedback”을 통해 시청자가 의견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4-24]). “Help/Contact Us”의 경우 “-GETTING STARTED/-TV PROVIDER/-TROUBLESHOOTING”로 나뉘며 정정보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콘텐츠 공급자로서의 CBS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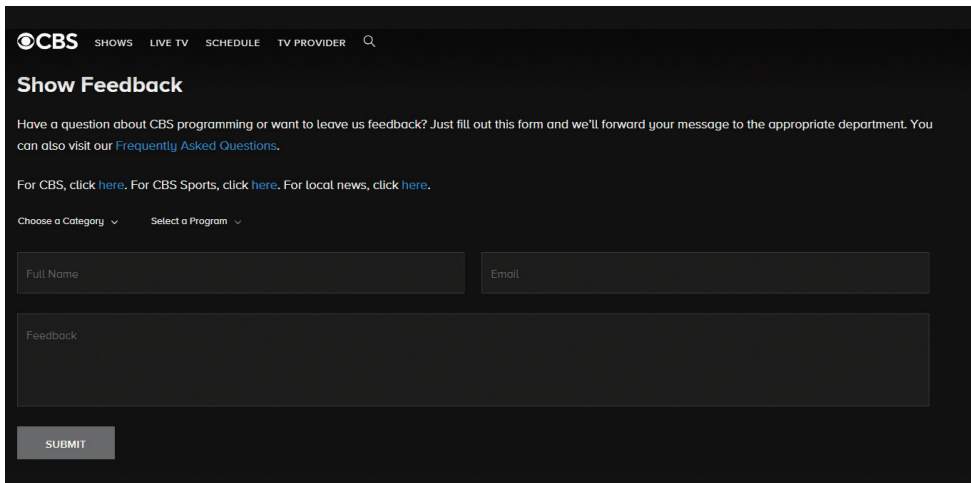
192) We reported information from a security source stating that 180 stewards worked at Asake's first two concerts at Brixton Academy, dropping to 120 or 130 on the third show (news, Dec 23). The Academy has informed us that the number of security staff on duty was 171 for the first show, 152 for the second and 158 for the third. We are happy to put this on record.

[그림 4-24] CBS 홈페이지 하단



“Show Feedback”은 CBS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스포츠 중계, 뉴스에 대해서까지 의견이 있을 경우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림 4-25]). 지역 뉴스의 경우 각 지역의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부서별로 글을 남길 수도 있으나 중앙 방송프로그램의 피드백은 모두 하나의 페이지에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4-25] CBS의 Show Feedback



## 2) CBS의 정정보도

CBS는 2006년 3월 29일 CBS의 홈페이지 E-Mailbag 코너에서 “CBS 뉴스는 정정보도를 어떻게 다루는가? (How Does CBS News Handle Corrections?)<sup>193)</sup>”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다. 이 글은 인터넷매체 버즈피드(BuzzFeed)의 편집자이자 뉴스의 사실 확인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블로그 “Regret the Error”를 운영하는 크레이그 실버만(Craig Silverman)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CBS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레이그 실버만(Craig Silverman)의 질문은 세 가지이다.

- 방송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How do they handle errors in broadcasts?)
- 어떻게 이를 정정하나요? (How do they correct them?)
- 어떤 사실확인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나요? (What fact checking process is in place?)
- 웹사이트의 정정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What about corrections on its websit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미국 방송사는 NPR(National Public Radio)이나 MSNBC(Microsoft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등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상에 정정을 위한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정정보도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아주 심한 오류의 경우 방송에서 정정보도를 직접 보도하기도 하지만, 방송의 특성상 방송을 보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오류였다는 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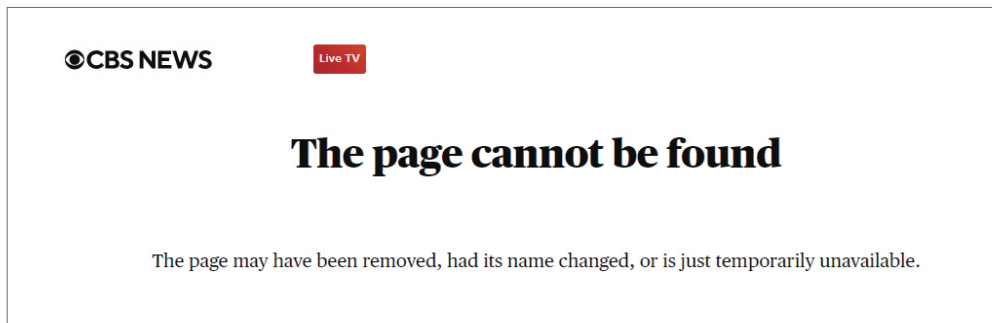
그러나 방송사의 웹사이트는 오류를 수정하기 쉽다. CBSNews.com은 기사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해명 또는 정정보도를 하게 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이트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지와 가시성이 결정된다(“The visibility it gets depends on how serious it is.”). 해당 글에서는 CBS가 실수를 처리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193) <https://www.cbsnews.com/news/e-mailbag-how-does-cbs-news-handle-corrections/>

- 사례 1<sup>194)</sup>: 방송에서 타이거 우즈(Tiger Woods)를 ‘메이저 챔피언십’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소수계 골프 선수로 소개한다. 그러나 1968년 US오픈이 시작된 이후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소수계 골프선수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인 리 트라 비노(Lee Travino)였다. 이에 CBS는 타이거 우즈에 대한 해당 기사를 수정하여 홈페이지 맨 위에 게재했다.
  
- 사례 2<sup>195)</sup>: 뉴욕시 노숙자 중 상당수가 우체국 일반 배달을 통해 우편물을 받는다는 기사에 대하여 편집자 주(Editor’s Note)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기사에서는 노숙자를 돕는 단체이름이 ‘노숙자를 위한 연합(Coalition for the Homeless)’이라고 게재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노숙자를 위한 파트너십(The Partnership for the Homeless)’으로 정정한다.

위 사례로 CBS에서 제시한 정정된 내용을 보도한 기사는 현재에는 [그림 4-26]와 같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6] 삭제된 CBS NEWS의 정정 기사



194) On the Web site, there was a correction to the story on Tiger Woods, carried at the very top of the page. On the broadcast, Woods was described as the first minority golfer to win “a major championship” tournament. In fact, Lee Travino, a Hispanic-American, was the first, winning the U.S. Open in 1968 and other major championships afterwards.

195) There was an editor’s note posted on the Web site regarding correspondent Steve Hartman’s story last Friday about how many of the homeless in New York City receive their mail through general delivery at the post office. That story used the wrong name for a group helping the homeless that was mentioned in the piece. Instead of the Coalition for the Homeless, the group mentioned should have been The Partnership for the Homeless.

- 사례 3 : 2016년 CBS는 <존베넷 램지 사건(The Case of: Jonbenet Ramsey)>이라는 제목으로 1996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일어난 어린이 살인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최종적으로 범인이 체포되지 않은 미해결 사건인 해당 사건에 대하여 CBS는 범죄 수사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을 재조명하고 당시 9세인 오빠 버크 램지(Burke Ramsey)가 사건의 진범이며 가족들이 사건 은폐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방송 이후 버크 램지는 CBS를 상대로 7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sup>196)</sup> 이 사건은 CBS가 버크 램지와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머니투데이> 2020.7.28.).<sup>197)</sup> 2016년 9월 방송 후 버크 램지가 CBS를 제소했다는 기사가 CBS의 마지막 보도이며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 뉴욕타임스(Newyork Times)

뉴욕타임스는 2003년, 1면부터 4면에 걸쳐서 한 기자의 기사 조작 및 표절 행위에 대해 독자들에게 대한 사과와 장문의 정정 기사를 게재한다. 또한 별도의 기사(Editors' Note)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기사 외에도 해당 기자가 쓴 모든 기사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것이 더 좋은 보도, 정확한 보도라고 믿는다”라고 쓰고 있다(<동아일보>, 2003.5.11.). 뉴욕타임스는 내부적으로 뉴스와 사실 관련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핸드북 형식의 <윤리적 저널리즘(Ethical Journalism:A Handbook of Values and Practices for the News and Opinion Departments)>과 <무결성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Integrity)> 등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고 취재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을 제시한다.

### 1) <무결성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Integrity)><sup>198)</sup>

뉴욕타임스는 <무결성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Integrity)>을 통해 자신들의

196) CBS, (2016.12.29). Brother Of JonBenet Ramsey Sues CBS For \$750 Million Over Series. (URL: <https://www.cbsnews.com/detroit/news/brother-of-jonbenet-ramsey-sues-cbs-for-750-million-over-series/?intcid=CNM-00-10abd1h>).

197) <머니투데이>, (2020.7.28.). '언론 오보'의 대가, 미국은 8,900억 부른다. (URL: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812000977288>).

198) <https://www.nytimes.com/editorial-standards/guidelines-on-integrity.html>

뉴스 보도와 칼럼이 공정성과 정확성, 무결성에 대해 독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인용, 사실확인 등에 대한 기준과 실제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정보도(Corrections)와 반박 기사(Rebuttals)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먼저, 정정보도(Corrections)에 대해서는 사실성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윤리적 책임이 있으며,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리자인 에디터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한다. 오류가 인정되었을 때 공정성을 위해 수정 사항은 즉시 게재하도록 한다. 사실관계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을 때 해당 내용이 ‘부정확(imprecise)’ 또는, ‘불완전(incomplete)’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sup>199)</sup> 이처럼 뉴욕타임스는 보도되는 기사에 오류가 없어야겠지만 만약 발견했을 때에는 신속하게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1853년에 게재된 기사의 오자를 2014년에 바로잡기도 하는 등 뉴욕타임스의 정정보도 기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일간 신문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많다(<미디어오늘>, 2021.12.19.).

아울러 보도의 내용이 어떠한 대상을 비판하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이가 자세한 해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반박 기사(Rebuttals)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보도 대상이 대응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up>200)</sup>

## 2) 뉴욕타임스의 정정보도 절차

뉴욕타임스는 <저널리즘 뒤에서: 타임스는 어떻게 작동하는가(Behind the Journalism: How The Times Works)>를 통해 타임스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기사와 콘텐츠에 엄격한 보도 원칙을 적용하고 그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극한 날씨를 다루는 방법이나 범죄 보도와 전쟁에 대해 다루는 법뿐만 아니라 익명의 취재원에 대해 다루는 방식

199) Corrections: Because our voice is loud and far-reaching, The Times recognizes an ethical responsibility to correct all its factual errors, large and small. The paper regrets every error, but it applauds the integrity of a writer who volunteers a correction of his or her own published story. Whatever the origin, though, any complaint should be relayed to a responsible supervising editor and investigated quickly. If a correction is warranted, fairness demands that it be published immediately. In case of reasonable doubt or disagreement about the facts, we can acknowledge that a statement was “imprecise” or “incomplete” even if we are not sure it was wrong.

200) Rebuttals: Few writers need to be reminded that we seek and publish a response from anyone criticized in our pages. But when the criticism is serious, we have a special obligation to describe the scope of the accusation and let the subject respond in detail. No subject should be taken by surprise when the paper appears, or feel that there was no chance to respond.

등 기자들이 보도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sup>201)</sup>

#### 〈표 4-3〉 〈Behind the Journalism: How The Times Works〉의 내용

- 
- How does The Times handle corrections?
  - How New York Times reporters avoid personal involvement in politics.
  - How The Times covers extreme weather.
  - Mass shootings: This is how The Times covers them.
  - How The Times uses visuals to investigate the news.
  - When The Times publishes an obscenity.
  - Anonymous sources: Why does The Times use them?
  - How The Times decides who gets an obituary.
  - What does The New York Times own?
  - How The Times handles and confirms breaking crime news.
  - How The Times reports on war
  - Why The Times asks readers to contribute to our journalism.
  - How The Times covers elections.
- 

뉴욕타임스의 정정보도 절차는 이 지침의 “뉴욕타임스는 정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How does The Times handle corrections?)”에서 다루고 있다. 독자가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이메일(nytnews@nytimes.com)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202)</sup>

먼저,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자에게 연락하고 기사에 정정이 필요할 경우 정정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한다. 기사가 게재되고 불과 몇 초 만에 실수를 발견했을지라도 정정을 통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정정된 내용은 타임스가 발간하는 모든 종류의 플랫폼에 게재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플랫폼은 인쇄본, 디지털판과 각종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정정보도의 절차는 뉴욕타임스에서 발간하는 기사뿐만 아니라 동영상과 뉴스레터, 팟캐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명백한 오타의 경우 수정 내용을 추가하지 않고 정정하도록 한다. [그림4-27]에서 볼 수 있듯 발간될 때마다 내용과 오타자 등 정정되는 부분에 대해 모아서 게재한다. 편집자 주(Editor's Note) 형태의 기사로 정정하기도 한다. 만약 해당 판에 정정보도가 없을 때도 “정정보도 없음(No Corrections)”이라는 제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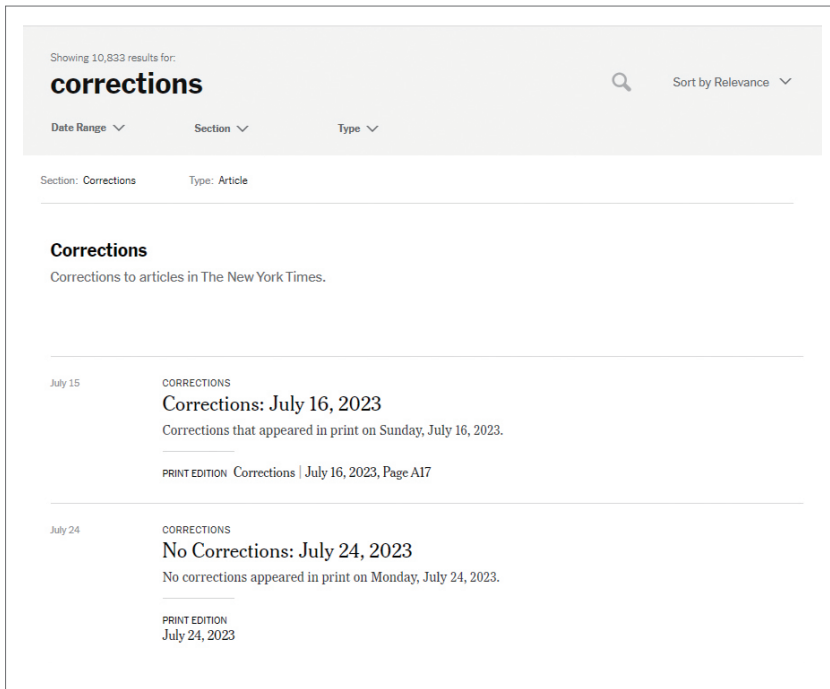
201) <https://www.nytimes.com/explain/2022/new-york-times-journalism>

202) <https://www.nytimes.com/article/new-york-times-corrections.html?smid=uri-share>

기사를 통해 독자에게 오류 발견 시 대응 방법과 뉴욕타임스에 피드백하는 법에 대하여 안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다.

뉴욕타임스에 피드백을 하고 싶을 때는 별도의 홈페이지인 “We Want to Hear From You(ytimes.com/readerfeedback)”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Story idea’, ‘Feedback on our coverage’, ‘Question about our newsroom’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의견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을 때는 이메일(letters@nytimes.com)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4-27] 뉴욕타임스의 정정 기사 목록



정정보도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하는 뉴욕타임스이지만 정정보도 대상에 속하지 않는 보도도 있다. 속보(Breaking news)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정정보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속보의 경우, 사건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게 되면서 사건 관계자가 사망자 수나 용의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정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속기사에 변경된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정정 내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는다.

- 사례 1<sup>203)</sup>: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류 정정 기사를 게재한 사례이다. 2008년 8월 11일자 뉴욕타임스에는 “Corrections: For the Record”라는 제목으로 1960년 4월 28일에 게재된 기사를 정정한다. 당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 중이던 연극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연극평을 게재하면서 출연 배우 한 명의 이름을 존슨 라이커(Johnson Liker)로 작성했으나 이것은 실수이며 조지 라이커(George Liker)가 맞으므로 이를 바로잡았다.
- 사례 2: 단순히 기사 속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날짜 등 정보에 대한 오류가 아닌 맥락을 왜곡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한국은 미국에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맥락을 왜곡한 것임을 인정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는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정정하였다.

[그림 4-28] 사례 2 정정보도 기사



203) Corrections: For the Record, (2008.4.11). “A listing of credits on April 28, 1960, with a theater review of “West Side Story” on its return to the Winter Garden theater, misstated the surname of the actor who played Action. He is George Liker, not Johnson. (Mr. Liker, who hopes to audition for a role in a Broadway revival of the show planned for February, brought the error to The Times’s attention last month.)” (URL: <https://www.nytimes.com/2008/08/12/pageoneplus/12correct-10.html?smid=url-share>).

## V. 소결

이상으로 해외 주요국의 방송사 및 신문사의 자율규제 운영을 살펴보았다. 자율규제의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사는 반론권 자체를 다루는 전담 부서는 없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불만 제기’라는 포괄적인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독일의 공영방송 ARD는 의견을 ‘언론 및 미디어’와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받고 있었고, 빌트(Bild)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문사에 불만 사항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특이점이었다.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와 떼에프엥(TF1)은 독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절차상 진전을 보였는데, 르몽드가 독자 불만에 초점을 맞췄다면 떼에프엥은 독자 참여에 집중해 차이를 나타냈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자 또는 방송 진행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나, 대체로 전반적인 의견을 모두 다룬다는 점에서 다소 포괄적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2019년 언론사들을 중심으로 한 중재 기구가 출범하기는 했으나 출범 이후 큰 발전이 없는 상황인데, 프랑스 언론사들의 자율적 노력이 사실상 해당 언론사에 의견을 보내는 정도로 그친 것도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미국 방송사는 심각한 오류가 아닌 이상 방송 시간을 할애하여 정정보도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는 해명 또는 정정보도를 게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보도를 게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언론사는 주요 해외 국가 중에서 자율규제 형태의 반론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특히 BBC는 시청자의 불만 제기와 관련하여 내부에서 먼저 처리하는 ‘BBC 우선 처리시스템(BBC First System)’을 운영하고,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오프콤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따라서 BBC 내에는 불만을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수정 및 설명(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페이지에서 시청자의 불만 사항에 대한 사과, 중요한 수정, 진술 및 응답이 필요한 사안을 따로 게시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누구나 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영국 신문사인 타임스(The Times)도 동일하다.

## 제5장 국내 반론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I. 전문가 자문

앞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의 반론권 및 자율규제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반론권 제도에 적용해볼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반론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선행 단계로, 국내외 반론권 관련 법제도 및 사례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언론법 전문가 2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외의 반론권 정책 가운데 한국의 반론권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크게 7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문의하였다.

## 1. 자문 대상 및 절차

자문 대상자는 국내 언론법 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모두 관련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또한 반론권과 관련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자문은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약 열흘간 실시되었다.

## 2. 문항 설계

문항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5-1〉 전문가 자문 문항 구성

순번	분류	문항
1	반론권 분쟁 해결의 거버넌스	반론권 분쟁 과정에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현실적/이상적 역할
2		언론사 스스로 반론권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필요적 전치 규정, 공동규제 모델, 그 외의 안
3	반론권 게재 방식	현재 한국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방식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충분한 방식인지 여부: 인쇄매체&인터넷

순번	분류	문항
4	반론권 게재 방식	정정 및 반론문을 포함한 독자의 불만 제기에 대하여, 언론사의 답변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방안의 적용 가능성
5	반론권 조항 개선	의견과 사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
6		독일 정정보도청구권 내 철회권, 수정권, 보충권의 국내 도입 필요성
7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론권 적용 가능성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서 제작, 전송하는 시사평론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3. 자문 결과

#### 1) 언론중재위원회의 현실적/이상적 역할

##### ① 전문가 A

현행 언론중재법에도 ‘언론사가 우선 분쟁 해소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동법 제6조에는 ‘고충 처리인’ 제도가 있는데 이는 제14조~제15조에 구축된 ‘언론사에 정정보도 등 청구’에 비하여 조문의 순서도 앞서 있으나 언론사들은 실질적으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충처리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자율적이고 신속한 언론사의 피해구제 방식이 이미 법에 설계되어 있으나 언론인들의 무관심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언론 현실에서 현재로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면서) ‘적절하다’라고 본다.

##### ② 전문가 B

한국은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 지 42년 동안 제도적 정착이 잘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권 분쟁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는 언론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이용자의 불만을 적절히 대응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고, 최근에는 더욱이 ‘법으로 해결’하자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분위기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구제에 따른 의무적인 노력을 법적으로 언론에 부과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며, 문제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입장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앞에서 언론을 대하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솔직하게 조정이나 중재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연구진

장기적으로라도 언론사 스스로 분쟁 해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견해를 모았다. 첫 번째 이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가 갈수록 과중해질 확률이 높기에, 오히려 피해자의 권익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중재위의 업무량을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종류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인격권 침해에 한층 예민해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는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 업무량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론사 자체의 분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언론사 스스로 자신들이 취재하고 보도한 기사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제고할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언론이 자신들의 기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확성에 더 큰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언론이 스스로 나선다면 한층 균형 잡힌 관점과 공익을 위한 취재 및 보도에 보다 힘쓰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 2) 언론사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① 전문가 A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을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언론사와 피해자가 ‘고충처리인’을 매개로 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필요적’으로 피해를 입힌 언론사와 접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접수유예제”를 실행해 볼 수는 있다. 언론사로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공식 언론분쟁 해소 사례 건수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자의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을 특정하고 고충처리인과 피해자 간에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적 조정” 역할을 수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로서도 “미접수 자율분쟁 안내”라는 성과로 이어져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전문가 B

언론중재법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언론사에 접촉을 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언론사와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만약 전치규정을 넣으면 오히려 피해자가 언론사에 꼭 접촉을 해야지만 되는 관계로 언론사도 폭주할 수 있는 불만사항에 대처해야 하고 피해자도 언론사로부터 원하는 정중한 방식의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일단 언론사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언론사로부터 충분한 반응을 얻지 못하거나 답신이 일정 기간 없는 경우에 한해 언론중재위원회로 신청하도록 하여, 언론사에 접촉을 안 한 경우와 구분하여 중재위에서 우선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③ 연구진

현재 언론중재법 제6조에 명시된 고충처리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언론사의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조 제2항의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가운데 제2호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제3호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에 대한 고충처리인의 직무 이행 결과를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도록 하는 조문 개정이 실효를 거둔다면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사의 자율규제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규제 모델이 구축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언론을 우선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필요적 전치 규정보다는, 언론사가 피해자의 피해 복구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실제 행동에 옮겼을 때(고충처리인을 언론사에서 적극 운영할 때)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반론보도문 게재방식의 타당성

## ① 전문가 A

정정보도든 반론보도든 현재 이행 방식은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분하지 않다. 인쇄매체의 경우, 원래 보도와 같은 지면보다 “1면”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게재하도록 ‘판결’을 선고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한 정정, 반론의 경우에도 가능한 1면에 게재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인터넷신문의 경우, 판결에 따른 ‘정정보도문’은 원래 기사를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정정보도문’만 검색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의 경우에는 ‘반론보도문’만 검색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나 혹은 ‘반론보도문’을 검색할 경우 ‘원래’ 기사까지 함께 검색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방식을 활용해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구제를 할 수 있다.

## ② 전문가 B

현행 규정과 원칙대로 적용하고자 하되, 언론사와 피해자의 합의를 통해서 그 게재 방식이나 기간 등을 다소 변경하거나 삭제나 수정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다.

## ③ 연구진

피해구제보도문 등 후속 보도는 최초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해진다는 점, 반론과 정정이 피해구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론권에 대한 게재는 지금보다는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그 형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형식이 충분할 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신문은 전파력이 기존 매체에 비해 강하고, 또 이용 중에 선택과 분산이 쉽다는 매체적 특성상 종이 신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있어서도, 신청자의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언론사의 조치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 홈페이지 특정 공간에 모아서 게시하여야 피해자의 권리 구제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 4) 언론사의 정정 및 반론문의 공개 방안

### ① 전문가 A

국내의 경우, 일반 독자로서의 불만의 제기는 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며, 언론에 의한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법원의 판결 절차에 따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홈페이지 게시가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그러나 다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며, 언론사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유효할 것이다.

## ② 전문가 B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를 위해서 할 수 있을 테지만, 윤리강령이나 보도준칙 등도 게재하는 것을 꺼리는 우리 언론 문화에서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디지털 미디어의 검색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향후 AI 등을 이용한 검색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필요한 사례나 판례를 마음껏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언론에 이런 부담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 ③ 연구진

언론사 자발적으로 반론에 대한 보도문을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며, 언론사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언론사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관건일 텐데 한국에서 언론사 스스로 이를 이행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지난한 세월이 지나야 할 것이므로, 현재 마련되어 있는 언론중재법의 고충처리인 조항을 개정하여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성실 이행 사업자에게 인센티브(정부 광고 등)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5) 의견과 사실의 구분

### ① 전문가 A

한국의 경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려는 법리적 시도가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로 기존에는 ‘사실’로 간주될 수 있었던 표현을 ‘의견’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고, ‘검증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구분 기준이며, 여기에 맥락과 언어적 의미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아가 반론권을 의견에 확대 적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의견을 반론권의 대상으로 삼아 언론중재법에 새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기반을 두고 40년 이상 정착한 반론권 제도의 기초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비록 의견 기사도 반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지만 적절하지 않다.

## ② 전문가 B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반론권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사실과 의견을 100%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을 차용해서 쓰는 것이 맞다. 선례구속원칙이 없는 이유로 비록 때로는 상하급심이 어긋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판단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반론권 적용에 의견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과 사실의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서 편할 수 있으나 반론권을 행사할 영역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크다. 다만 허용한다면 다양한 조건을 두는 게 필요하고, 프랑스의 경우처럼 공무원과 의사에게만 정정보도를 허용하는, 즉 특정 조건에서만 반론권을 허용하는 제도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현재와 같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③ 연구진

의견과 사실의 명확한 구분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공인이나 공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의문 제기에 있어서는 명료하게 검증되지 않더라도 전후 맥락에 비추어 의구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하면 의견표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며, 이는 ‘검증가능성’이란 단어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해당하는 공적 사안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사례마다 사실과 의견에 대한 구분이 다른 것은 그만큼 사례마다 고려되어야 할 예측 변수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축적된 판례 및 사례들을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참고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의견을 반론권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사실에 대한 반론권만 인정되어야 한다.

## 6) 철회권, 수정권, 보충권 적용

### ① 전문가 A

정정보도를 철회권, 수정권, 보충권으로 구분해서 대응하는 법체계가 한국에 제대로만 도입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2013년 이후 법원 판례에 의해 ‘명백한 허위기사’의 경우 ‘기사 삭제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언론 조정에 의해 ‘기사 삭제’ 혹은 ‘검색 차단’이 상당 부분 활용되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 ② 전문가 B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법원에서도 ‘삭제’를 피해구제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삭제 이외에도 ‘수정’, ‘보충’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제방식은 법원의 재판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보도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삭제를 인정하는 만큼, 수정 또는 보충의 경우에도 조정에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수용할 것을 법원의 판결에 공식적으로 도입될 필요는 없다.

## ③ 연구진

독일의 철회권, 수정권, 보충권이 적용된다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은 가능해질 것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정도로 이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국내의 반론권 제도의 맹점이 크게 부각되어 나타난다면 그때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 7)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론권 적용 가능성

### ① 전문가 A

‘언론’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디어의 정치적 표현(시사평론, 의견표명)에 대한 반론권을 법률에 규정할 경우 기존 언론중재법에서도 보장하지 않은 ‘의견에 대한 반론권’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위헌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② 전문가 B

언론보도와 같은 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구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히 늘어가는 디지털 매체를 모두 조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새로운 매체가 나올 때마다

언론과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들을 계속 포섭해야 되어 조정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위해 현재보다 중재부의 규모를 훨씬 크게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유사 언론에 대한 반론권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국가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 최근 유튜브 내 불법적 콘텐츠가 크게 늘어나고, 이들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는 만큼 향후 법적으로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보도가 아닌 만큼 향후 대상을 확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론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③ 연구진

현재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 인격권 침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나, 인터넷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현재 온라인상 증가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든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 만약 피해구제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인터넷 층위 혹은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가급적 기존 언론사와 ‘운영 및 제작 주체’, ‘운영 행태’, ‘운영 규모’, ‘미치는 영향력’ 등이 유사할수록 반론권 관련 의무가 주어지는 것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 제6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격권 침해 보도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인 ‘반론권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실효성 높은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의 반론권 제도의 최근 동향 및 판례·사례의 흐름을 분석하고, 나아가 해외 주요국 언론사(방송사/신문사)의 자율규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반론권 제도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거버넌스’, ‘반론권의 게재 방식’, ‘반론권 이행방식의 개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론권의 적용 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도출하였다.

이후 위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일곱 가지 세부 문항을 도출한 뒤, 해당 쟁점들이 국내 반론권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확인받고, 동시에 해당 결과를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의견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국내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주요국의 최근 반론권 동향을 살펴보니, 한국과 같이 반론권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잘 갖춰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반론권 자체가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았다. 호주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커뮤니케이션미디어청이 있었지만 언론 전반의 갈등을 담당하는 중앙집중적 규제기관이라는 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상위개념의 국가기관인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의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 역시 2019년 출범 이후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현실적, 이상적 역할과 관련하여,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 온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권 분쟁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답한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유튜브 등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권 등 인격권 침해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은 향후 더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가 그만큼 더 증가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반론권을 사법적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주요 해외국의 반론권 관련 법률은 오랜 시간 동안 의미 있는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반론권 자체를 명문화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우 반론권을 제도화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 반론권 게재도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유럽 역시 반론권에 관한 유의미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론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반론권을 강한 사법적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94년 ‘반론보도청구권이 절대적인 권리기는 하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언론사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한 파리지방법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이 같은 인식에 변화가 일기도 했다. 이는 반론권을 법으로 해결하자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최근 국내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론권을 언론사의 자율규제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반론권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방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대안과 관련하여, 언론사와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오기 전 언론사에서 우선적으로 분쟁 해소 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전문가와 연구진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언론중재법 제6조에 명시된 고충처리인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언론사의 자율규제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 규제 모델(고충처리인을 언론사에서 적극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언론사 스스로 반론권과 같은 피해구제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 언론사들은 현재 설계된 피해구제제도에 큰 관심이 없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스스로 피해구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현재 국내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BBC나 타임스(The Times)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해외 주요 조사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영국 언론사는, 언론사에서 우선적으로 반론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 및 설명 페이지를 따로 갖춰 이곳에 반론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건을 취합하여 게시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 외에 언론사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건전한 언론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자신들이 취재하고 보도한 기사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의식을 제고할 기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넷째, 반론권 관련 법 조항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연구진 모두 대체로 보수적인 의견이었다.

이는 지금의 반론권 법 조항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의 조화 등을 생각해 봤을 때 굳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갈 정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의견과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축적된 판례 및 사례들을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독일의 정정보도청구권 내 철회권, 수정권, 보충권의 반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 법과 판례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권의 게재 방식과 관련해서는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보도가 최초 보도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가해진다는 점, 반론과 정정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보다는 더 눈에 띄는 방식으로 그 형식이 바뀔 필요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어느 정도의 형식이 양측에 대한 균형을 갖추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이 기존 인쇄매체보다 반론권 게재 방식에 있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연구진의 의견이 나뉘었다. 독일의 경우 하이퍼링크를 통한 연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온라인 매체에 대해 특별히 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언론사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기사를 보는 이용자가 적은 만큼, 향후 인터넷 공간에서 반론권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반론권의 확대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분명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내 시사평론 콘텐츠에 한정하여 검토했는데, 전문가와 연구진 모두 유튜브와 같은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반론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할 수 없으며, 유튜브의 경우에도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경우 기존 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유튜브 내 인격권 침해 콘텐츠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응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이기에,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인터넷 층위 혹은 유형을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채널의 제작 및 운영 주체’와 ‘채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론권 의무가 주어지는, 즉 디지털 플랫폼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언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먼저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참 고 문 헌

- 강경근. (2004). 「헌법 신판」, 파주: 법문사.
- 고광미. (1985). 미국의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 권영성. (2006). 「헌법학원론」, 파주: 법문사.
- 김경호. (2004). 범죄 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2권 제2호, 88-120.
- 김상우. (2010).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반론권 적용에 관한 법 제도적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 김재협. (2004). 바람직한 반론 보도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실증적 고찰. <언론과 법>, 제3권 제1호, 283-332.
- 김지수. (2018). 미국의 언론 관련 법제 및 판례 동향.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 김철수. (2006). 「헌법학개론(제18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 문재완. (2023).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국가기관의 반론권 주체성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7권 제1호, 27-51.
- 박용상. (1997). 「언론과 개인 법익: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제도」, 서울: 조선일보사.
-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박운희. (1995). 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운희. (1995). 프랑스에 있어서의 반론권. <언론중재>, 겨울호, 53-83.
- 박인수. (2004). 공인의 반론권 행사에 관한 각국의 법제현황. <언론중재>, 90호, 40-50.
- 성낙인. (1997). 言論表現에 의한 國民의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制度 - 韓國의 言論仲裁委員會 등에 관하여 -. <세계헌법연구>, 제2권, 283-327.
- 성낙인. (2006). 「헌법학(제6판)」, 파주: 법문사.
- 신동운. (2009). 「신형사소송법 제4판」, 파주: 법문사.
- 양 건. (2022). 「헌법강의」, 파주: 법문사.
- 양재규. (2015). 언론중재법,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언론사람>, 181호(7월호), 10-11.
- 원우현. (1984). 「매스 미디어와 문화 발전」, 서울: 범우사
- 윤영철. (2015). 디지털 시대 언론피해구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제1권 제1호, 3-34.
- 윤진희. (2019).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법>, 제18권 제3호, 109-138.
- 이동훈. (2015). 언론중재법상 정보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93-114.
- 이용길. (1997). 언론에 의한 피해와 반론권 제도. <제주발전연구>, 제1권 제1호, 31-48.
- 이승선·김연식. (2008).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호, 65-94.
- 이재진. (2000). 반론권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적 연구: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경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32.
- 이재진. (2015).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서울: 컬처룩.

- 이재진·상윤모. (2014).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competing interests on the Internet: A comparative study of the right of repl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언론과법*, 12(1), 185–215.
- 이정환. (2016).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진국. (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95.
- 이지영. (2022). 거대 미디어 기업, 호주 인터넷 신문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법 개정 첫 시험대 되나. <신문과 방송>, 623호, 105–108.
- 이지영·상윤모. (2018). 호주의 언론피해 구제 제도. 언론중재위원회 (편),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동향> (225–256쪽) 언론중재위원회
- 전광석. (2006). 「한국헌법론(제3판)」, 파주: 법문사.
- 정종섭. (2010). 「헌법학원론(제5판)」, 서울: 박영사.
- 정태호, 김훈집. (2015). 영국의 명예훼손죄 폐지와 그 교훈 <경희법학> 50권 1호, 3–48.
- 조소영. (2006a). 정정보도청구권의 이른바 새로운 권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 <세계헌법연구>, 제12권 2호, 177–200.
- 조소영. (2006b).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153–181.
- 주대우. (2022). 英 오프콤, BBC에 대한 시청자 인식 조사 결과 발표. <해외방송정보>, 2022년 8월호, 14–23.
- 지창구. (2013).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문제점과 그 적용 범위. <법조>, 제62권 제8호, 238–263.
- 진민정. (2018). 프랑스 언론법과 최근 입법 동향. 언론중재위원회 (편),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한 각국의 제도와 동향> (133–170쪽) 언론중재위원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2). BBC 수신료 개편 논의의 배경. <미디어 이슈 & 트렌드>, 31호, 36–4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2). 영국 Ofcom의 2020/21년 BBC 평가보고서. <미디어 이슈 & 트렌드>, 48호, 61–68.
- 한병구. (1982). [특집논문] <특집2> 세계각국의 반론권법제 현황. <언론중재>, 1982, 여름호
- 한수웅. (2021). 「헌법학」, 서울: 현암사.
- 황수영. (2018). 영국 언론표준기구와 개정 명예훼손법 시행 현황. <2018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 허순철. (2015). 영국의 명예훼손법 개정과 그 의미. <공법학연구>, 16권 4호, 125–146.
- 허영. (2006). 「헌법 이론과 헌법(신정11판)」, 서울: 박영사.
- LS憲法研究会. (2011). 「일본판례헌법」, 민병로, 손형섭 역,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藤原静雄. (2003). 逐条個人情報保護法. 東京: 弘文堂.
- Carney, D. (2017). Up to standard? A critique of IPSO's Editors' Code of Practice and IMPRESS' Standards Code (Part 1). *Tottels Communications Law*, 22(3), pp. 77–88.
- Daniel C. Kramer (2009). *Red Lion Broadcasting Co.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1969), (URL: <https://www.mtsu.edu/first-amendment/article/117/red-lion-broadcasting-co-v-federal-communications-commission>)

- Jerome A. Barron (1967). Access to the Press. A New First Amendment Right, *Harvard Law Review*, 80(8), 1641–1678.
- Keppe–Palmer, M. (2016). The emperor’s new clothes – IPSO’s version of the editors’ code of practice. *Entertainment Law Review*, 27(3), pp. 92–97.
- Koltay, A. (2007). The Right of Reply: A Comparative Approach. *Iustum Aequum Salutare* III, 2007/4, pp.203–213.
- Koltay, A. (2013). The Right of Reply in a European Comparative Perspective. *Acta Juridica Hungaria*, 54(1), pp. 73–89.
- Middleton, J. (2017). Britain’s changing media accountability systems: The Establishment and activities of the Independent Press Standards Organisation (IPSO). *Hitotsubashi Journal of Law and Politics*, 45, pp.1–12.
- Rose, D. (2005). MP’s apathy leaves right of reply bill hanging in limbo. *Press Gazette*, March 3, 2005.
- The Right Honourable Lord Justice Leveson. (2012). *An Inquiry into the Culture, Practices and Ethics of the Press: Report, Volumes I–IV (HC 780)*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November 2012.
- UK Parliament (2005). *Right of Reply and Press Standards Bill*.
- Youm K. H.(1993). Right of Reply under Korean Press Law: A Statutory and Judici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41(1), 49–71
- Youm, K. H. (2007). The Rights of Reply and Freedom of the Press: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Geo. Wash. L. Rev.*, 76, 1017.
- Youm K. H.(2008). The Right of Reply and Freedom of the Press: A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6, 1017–1064.
-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 (1969).

### 기사자료

- 〈경향신문〉. (2020.02.03). ‘아리랑TV 입찰 비리 의혹’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URL: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2032000011#c2b>).
- 〈노컷뉴스〉. (2018.2.19.). [추후보도문] 더민주 서영교의원 가족 등 의혹 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URL: <https://www.nocutnews.co.kr/news/4921654>).
- 〈뉴시스〉. (2019.3.30.). [추후보도문] 더민주 서영교의원 가족 등 의혹 관련 고발은 모두 무혐의, (URL: [www.newsis.com/view/?id=NISX20180330\\_0000267978](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30_0000267978)).
- 〈동아일보〉. (2003.3.11.). NYT "허위기사 사죄합니다" ...1면에 長文의 사과 기사 게재, (URL: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030511/7942947/1>).

- 〈미디어오늘〉. (2021.12.19.). 우리는 뉴욕 타임스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285>).
- 〈법률신문〉. (2016.01.07.). [판결] '명동교자' 2심서 '먹거리 X파일'에 뒤집기 승. (URL: <https://www.lawtimes.co.kr/news/97798>).
- 〈YTN〉. (2018.3.5.). [추후보도문] 서영교 의원 가족 등 의혹 관련 보도는 모두 무혐의. (URL: [https://www.ytn.co.kr/\\_ln/0103\\_201803050000108360](https://www.ytn.co.kr/_ln/0103_201803050000108360)).
- 〈서울신문〉. (2018.3.29.). [추후보도문] 서영교의원, 가족 관련 고발건 모두 무혐의. (UR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329500140>).
- 〈한겨레〉. (2019.12.03.). “터무니 없이 임금 낮아도 재봉틀이 돌아가는 이유” 관련 반론보도문.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379.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9379.html)).
- 〈한국일보〉. (2018.2.8.). [추후보도문] “서영교 의원 의혹” 관련 보도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2081860782786>).

#### 기타 자료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  
로앤비 <http://www.lawnb.com>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  
프랑스 저널리즘 윤리 및 조정위원회 <https://cdjm.org/decisions>

#### 실천 강령

호주언론예능예술협회 윤리강령 <https://freelancers.org.au/code-of-ethics/>  
호주언론위원회 실천강령 <https://presscouncil.org.au/standards/statement-of-principles>  
공영방송 ABC Code of Practice <https://about.abc.net.au/reports-publications/code-of-practice/>  
공영방송 SBS Code of Practice <https://www.sbs.com.au/aboutus/sbs-code-of-practice>  
상업방송 Commercial Television Industry Code of Practice <https://www.freetv.com.au/resources/code-of-practice/>  
Audience & Consumer Affairs October (2019). 5.3 Opportunity to Respond <https://www.abc.net.au/edpols/fair-opportunity-to-respond/13644784>  
Barron, J.A. (2007). Access to the media—A contemporary Appraisal, HOFSTRA Law Review, Volume 35 No 3, 937~953  
Departme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2012). Report of the Independent Inquiry into the Media and Media Regulation.

- Glasser, Jr., & Charles, J. (ed) (2013). *International libel and privacy Handbook: A Global Reference for Journalists, Publishers, Webmasters, and Lawyers*, 3rd ed., New Jersey: Bloomberg Press.
- IPSO. (Jan 2001). *Editors' Code of Practice*
- McKay, R. B. (1977). National news council as national ombudsman.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21, 102-112.
- Schauer, F. (1980). Social foundation of the law of defamation: A comparative analysis. *Journal of Media Law and Practice*, 1, 12-13.
- Ugland, E. (2008). The legitimacy and moral authority of the national news council (USA). *Journalism*, 9, 285-308.

# 부 록

## [첨부 1]

\* 독일 반론권 제기 양식

An den Verlag

### Per Einschreiben

Ort, Datum

Aufforderung zur Veröffentlichung einer Gegendarstellung

Sehr geehrte Damen und Herren,

am XX.XX.XXXX schreiben Sie unter der Überschrift “\_\_\_\_\_”

über meine Person:

“\_\_\_\_\_”

Den Beitrag mit dieser Behauptung haben Sie in der gedruckten Ausgabe 1/2022 auf der Seite 1 sowie auf Ihrer Webseite unter HYPERLINK “<https://adressedesxverlags.de/permalink>” <https://aessedesxverlags.de/permalink> veröffentlicht. Einen Ausdruck haben wir diesem Schreiben beigefügt.

Ich fordere Sie auf, die anliegende Gegendarstellung in der nächstfolgenden, für den Druck nicht abgeschlossenen Nummer an gleicher Stelle und in gleicher Aufmachung wie der ursprüngliche Beitrag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abzudrucken und bis zum XX.XX.XXXX rechtsver- bindlich zu erklären, dass Sie den Abdruck vornehmen werden.

Ferner fordere ich Sie auf, die ebenfalls anliegende Gegendarstellung auf Ihrer Webseite ohne Ein- schaltungen und Weglassungen in gleicher Aufmachung wie die Tatsachenbehauptung und in un- mittelbarer Verknüpfung zu dieser anzubieten.

Sollten Sie dieser Aufforderung nicht nachkommen, werde ich gerichtliche Schritte einleiten. Mit freundlichen Grüßen

## Gegendarstellung

In der X-Zeitung vom XX,XX,XXXX berichten Sie auf der Seite 1 unter der Überschrift

“ \_\_\_\_\_ ” in Bezug auf meine Person:

“ \_\_\_\_\_ ” Hierzu stelle ich fest:

“ \_\_\_\_\_ ”

Ort, Datum

(Unterschrift)

## [첨부 2] 모나코 캐롤라인(Caroline) 공주 사건 개요<sup>204)</sup>

### 〈사실관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B(캐롤라인 공주)는 모나코의 고 레이니어(Rainier) 왕의 딸이며 하노버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Ernst August von Hannover) 왕자와 결혼했다. 초기 보도는 공적 기능 수행 이외에 청구인 B와 남편의 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관해 사진 보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C는 주간지 '프라우 임 슈피겔(Frau im Spiegel)' 발행인이다. 2002년 2월 20일자 주간지 02/9호에서는 청구인 B의 아버지 레이니어 왕과 모나코 왕세자가 병에 걸렸고 더 이상 외부 행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레이니어 왕 - 집에 혼자 있지 않음"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다. 잡지에서 보도하는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우려가 크다. 레이니어 왕을 그의 자녀들 즉, 알버트(Albert) 왕자(현재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 참가 중), 캐롤라인 공주(하노버의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왕자와 함께 세인트 모리츠(Saint-Moritz)에서 휴가중), 스테파니(Stephanie) 공주가 돌아가며 돌본다. 레이니어 왕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 왕은 자녀들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특히 잡지 기사에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B가 남편과 함께 스위스 세인트 모리츠의 겨울 스포츠 리조트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2003년 2월 20일자 주간지 'Frau im Spiegel'<sup>205)</sup> 03/9호에는 "세인트 모리츠 - 왕실의 눈놀이"(St. Moritz - Königliches Schneevergnügen)라는 제목으로 겨울 스포츠 리조트에 청구인 B와 유럽 귀족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을 보도했다.

###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

이 헌법소원심판은 저명인사의 사생활과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보도할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잡지사)은 지방법원의 판결과 연방대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보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언론기관의 유형과 성향,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기본권의 핵심이다. 여기에는 언론기관이 출판물에 사진이나 그림을 게재할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한 결정도 포함된다. 언론기관은 자신의 저널리즘 기준에 따라 공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이 공익과 상충하는 인격권을 평가할 때 그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 비중과 언론기관의 보도가 대중의 중대한 관심사인지 여부와 그 관련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초상권은 개인이 타인에 의한 자신의 초상 사진의 생성 및 사용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와 일반적 인격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독일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연관된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은 기본법 제2조 제1항 후문의 제한을 받는다.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지방법원 판결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기하고 연방대법원에 환송한다.

204) 이부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고찰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 미디어와 인격권, 2022, 제8권 제3호에서 인용함.

205) 유럽 귀족과 왕실의 최신 소식을 전하는 여성 주간지

### [첨부 3] ARD-방송국가협약(RfStV)

#### § 8 (반론권)

- (1) ARD의 회원인 주(州)방송사에서 방송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반론청구는 이를 방송한 각 주방송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 주방송사에 대해 반론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하나의 주방송사에 대한 반론청구가 인정되면 ARD회원 주방송사 모두는 이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
- (3) ARD의 회원 주방송사에서 반론보도를 하는 경우, 어느 주방송사에 대해 반론보도가 제기되었는가를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는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 ARD는 주방송사의 연합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ARD-RfStV은 이러한 연합체의 성격에 맞게 관할권에 관한 문제를 주(州)로 규정하고 있다. 반론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건이 아니라 반론권의 관할과 그 행사의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반론권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주방송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 〈원문〉

ARD-Staatsvertrag vom 31. August 1991,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4 des Medienstaatsvertrages vom 14. bis 28. April 2020 (BayGVBl. 2020, Nr. 23, S. 450 ff.)

#### 8 Gegendarstellung

- (1) Soweit Gegendarstellungsansprüche zu Sendungen in Fernseh-Gemeinschaftsprogrammen, die allein von den in der ARD zusammengeschlossenen Landesrundfunkanstalten gestaltet werden, geltend gemacht werden, ist die Sendung ausschließlich von derjenigen Landesrundfunkanstalt zu verantworten, die die Sendung in das Gemeinschaftsprogramm eingebracht hat. Maßgeblich ist das für diese Landesrundfunkanstalt geltende Gegendarstellungsrecht.
- (2) Eine gegen eine einbringende Landesrundfunkanstalt erwirkte Gegendarstellung ist von allen beteiligten Landesrundfunkanstalten in dem jeweiligen Fernseh-Gemeinschaftsprogramm zu verbreiten.
- (3) Wer eine Gegendarstellung gegen eine Sendung eines Fernseh-Gemeinschaftsprogramms der in der ARD zusammengeschlossenen Landesrundfunkanstalten geltend machen will, kann von jeder Landesrundfunkanstalt Auskunft verlangen, welche Landesrundfunkanstalt die Sendung in das Fernseh-Gemeinschaftsprogramm eingebracht hat. Die Auskunft ist unverzüglich zu erteilen.

#### [첨부 4] ZDF의 반론권 규정<sup>206)</sup>

##### § 9 반론권

- (1) ZDF는 ZDF가 전송한 사실적 주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반론을 제기할 그 반론을 전송할 의무가 있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반론의 전송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반론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2. 반론의 범위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특히 불만을 제기한 방송 부분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
- (3) 반론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며 범죄 내용이 없어야 한다. 합니다. 반론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반론을 주장할 수 있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합니다. 반론을 주장할 수 있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늦어도 2개월 이내에 ZDF에 지체없이 반론을 접수해야 한다. 반론 신청서에는 이의가 제기된 대상 프로그램과 사실 주장을 적시해야 한다.
- (4) 반론은 즉시 사실 주장이 제기된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전송되어야 한다. 전송은 삽입 및 누락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포된 반론에 대한 응답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제한된다. 텔레비전에서의 반론은 반론이 제기된 동일한 프로그램 및 동일한 프로그램 섹션 내에서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방송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론을 제기한 프로그램과 같은 등급의 프로그램 시간에 방송되어야 한다.
- (5) 반론의 전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 단, 반론이 광고방송에 유포된 사실 진술에 대한 것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 (6) 반론 청구의 집행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따른다. 반론청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ZDF에 제4항에 언급된 형식으로 반론을 배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반론권에 대한 청구는 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장에 대한 위험성은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실 주장에 대한 본안 심리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 (7) 반론권에 관한 1항부터 6항의 규정은, 유럽의회, 연방의 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협회의 대표, 법원의 공청회에 대한 진실한 보도 또는 이 국가협약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방송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론에 대한 반론은 허용되지 않는다.

206)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ZDF\\_StV-9](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ZDF_StV-9)

〈참고〉 ZDF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공영방송이다. ZDF 방송협약 제9조는 반론권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독일 각 주 방송사에서 규정하는 반론권의 내용과 유사하다.

## 〈원문〉

### § 9 Gegendarstellung

- (1) Das ZDF ist verpflichtet, die Gegendarstellung der Person oder Stelle zu verbreiten, die durch eine im Angebot des ZDF verbreitete Tatsachenbehauptung betroffen ist.
- (2) Die Pflicht zur Verbreitung der Gegendarstellung besteht nicht, wenn
  1. der Betroffene k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Verbreitung hat, oder
  2. die Gegendarstellung ihrem Umfang nach nicht angemessen ist, insbesondere den Umfang des beanstandeten Teils der Sendung wesentlich überschreitet.
- (3) Die Gegendarstellung muss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und darf keinen strafbaren Inhalt haben. Sie bedarf der Schriftform und muss von dem Betroffenen oder seinem gesetzlichen Vertreter unterzeichnet sein. Der Betroffene oder sein Vertreter kann die Verbreitung nur verlangen, wenn die Gegendarstellung unverzüglich,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dem ZDF zugeht. Die Gegendarstellung muss das beanstandete Angebot und Tatsachenbehauptung bezeichnen.
- (4) Die Gegendarstellung muss unverzüglich innerhalb des gleichen Angebotes verbreitet werden, in welchem die beanstandete Tatsachenbehauptung erfolgt ist. Die Verbreitung erfolgt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Eine Erwiderung auf die verbreitete Gegendarstellung muss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Im Fernsehen muss die Gegendarstellung innerhalb des gleichen Programms und der gleichen Programmsparte wie die beanstandete Tatsachenbehauptung sowie zur gleichen Tageszeit oder, wenn dies nicht möglich ist, zu einer Sendezeit verbreitet werden, die der Zeit der beanstandeten Sendung gleichwertig ist.
- (5) Die Verbreitung der Gegendarstellung erfolgt unentgeltlich. Dies gilt nicht, wenn sich die Gegendarstellung gegen eine Tatsachenbehauptung richtet, die in einer Werbesendung verbreitet worden ist.
- (6) Für die Durchsetzung des Anspruchs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Auf Antrag des Betroffenen kann das Gericht anordnen, dass das ZDF in der Form des Absatzes eine Gegendarstellung verbreitet. Auf das Verfahren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über

das Verfahren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entsprechend anzuwenden. Eine Gefährdung des Anspruchs braucht nicht glaubhaft gemacht zu werden. Ein Verfahren zur Hauptsache findet nicht statt.

- (7) Die Absätze 1 bis 6 gelten nicht für wahrheitsgetreue Berichte über öffentliche Sitzungen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der gesetzgebenden Organe des Bundes, der Länder und der Vertretungen der Gemeinden und Gemeindeverbände, der Gerichte sowie für Sendungen nach den §§ 10 und 11 dieses Staatsvertrags. Zu einer Gegendarstellung kann eine Gegendarstellung nicht verlangt werden.

## [첨부 5] 바이에른 방송법(Rundfunkgesetz) 제17조

### § 17 반론권

- (1) 바이에른 방송사(Bayerische Rundfunk, 바이에른 주 공영방송사)는 방송에서 제기된 사실 주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반박 성명을 배포할 의무가 있다. 반론은 불만을 제기한 프로그램을 명시하고, 사실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가 서명하고, 늦어도 마지막 유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바이에른 방송사에 접수되어야 한다.
- (2) 반론은 지체 없이 동일한 방송 시간에, 불만을 제기한 사실 주장과 동일한 프로그램 및 동일한 프로그램 섹션 내에서 삽입 및 누락 없이 전파되어야 한다. 배포는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론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
- (3) 다음과 같은 경우 답변서를 배포할 의무가 없다.
  1. 관련 당사자가 반론 진술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2. 그 범위가 불만을 제기한 프로그램의 범위를 부당하게 초과하는 경우
  3. 반론에 범죄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 (4) 바이에른 방송사의 거부 결정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두 번째 요청은 거부 사유를 고려하고 늦어도 거부 결정이 전달된 후 1개월 이내에 바이에른 방송사에 접수된 경우 허용된다. 두 번째 요청이 거부된 경우, 사무총장은 1주일 이내에 해당 사안을 관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5) 반박 성명서의 유포 금지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주장에 대한 위험성은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실 주장에 대한 본안 심리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원문〉

#### Art. 17. Gegendarstellung

- (1) Der Bayerische Rundfunk ist verpflichtet, die Gegendarstellung einer Person oder Stelle, die durch eine in einer Rundfunksendung aufgestellte Tatsachenbehauptung betroffen ist, zu verbreiten. Die Gegendarstellung muss die beanstandete Sendung bezeichnen,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vom Betroffenen unterzeichnet sein und dem Bayerischen Rundfunk unverzüglich,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nach der letzten Verbreitung zugehen.

- (2) Die Gegendarstellung muss unverzüglich zu einer gleichwertigen Sendezeit und innerhalb des gleichen Programms und der gleichen Programmsparte wie die beanstandete Tatsachenbehauptung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verbreitet werden. Die Verbreitung erfolgt kostenfrei. Eine Erwiderung auf die Gegendarstellung muss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 (3) Eine Verpflichtung zur Verbreitung der Gegendarstellung besteht nicht, wenn
  1. Betroffene k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Gegendarstellung haben,
  2. ihr Umfang unangemessen über den der beanstandeten Sendung hinausgeht oder
  3. die Gegendarstellung einen strafbaren Inhalt hat.
- (4) Eine ablehnende Entscheidung des Bayerischen Rundfunks ist unter Angabe der Gründe unverzüglich schriftlich zu verbescheiden und dem Betroffenen zuzustellen. Ein zweites Verlangen ist zulässig, wenn es den Gründen der Ablehnung Rechnung trägt und dem Bayerischen Rundfunk spätestens innerhalb eines Monats nach Zustellung der ablehnenden Entscheidung zugeht. Wird das zweite Verlangen abgelehnt, hat der Intendant über den Vorgang dem zuständigen Ausschuss binnen einer Woche zu berichten.
- (5) Der Anspruch auf Verbreitung der Gegendarstellung kann auch im Zivilrechtsweg verfolgt werden. Auf dieses Verfahren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über das Verfahren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entsprechend anzuwenden. Eine Gefährdung des Anspruchs braucht nicht glaubhaft gemacht zu werden. Ein Hauptsacheverfahren findet nicht statt.

## [첨부 6]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출판법(Landespressegesetz)의 반론권 규정

### § 11 반론권

- (1) 정기간행물의 책임 있는 편집자와 발행인은 인쇄된 저작물의 사실 진술에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의 반론을 인쇄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는 사실 진술이 나타난 보조적인 인쇄를 포함한 모든 인쇄물에 적용된다.
- (2) 당사자 또는 단체가 반론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그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상업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반론에 대한 인쇄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론이 반론 대상의 텍스트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론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제한되어야 하며 범죄 내용이 없어야 한다. 반론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관련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담당 편집자 또는 발행인에게 지체없이 늦어도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반론을 인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 반론은 인쇄물의 다음 호에 인쇄된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에 불만이 제기된 텍스트와 동일한 글꼴로 삽입이나 누락 없이 인쇄되어야 한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반론에 대한 인쇄는 무료로 한다. 동일한 제호로 반론을 제기하는 자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국한된다.
- (4) 반론권의 진행은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 편집자와 발행인에게 제3항에 언급된 형식으로 반론을 게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처분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이러한 절차에 준용한다. 주장에 대한 위험은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실 주장에 대한 본안 심리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연방,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 또는 법원의 입법기관 또는 의사결정 기관의 공청회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문〉

#### Gesetz über die Presse (Landespressegesetz)Vom 14. Januar 1964

### § 11 Gegendarstellungsanspruch

- (1)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und der Verleger eines periodischen Druckwerks sind verpflichtet, eine Gegendarstellung der Person oder Stelle zum Abdruck zu bringen, die durch eine in dem

Druckwerk aufgestellte Tatsachenbehauptung betroffen ist. Die Verpflichtung erstreckt sich auf alle Nebenausgaben des Druckwerks, in denen die Tatsachenbehauptung erschienen ist.

- (2) Die Pflicht zum Abdruck einer Gegendarstellung besteht nicht, wenn die betroffene Person oder Stelle k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Veröffentlichung hat, wenn die Gegendarstellung ihrem Umfang nach nicht angemessen ist oder bei Anzeigen, die ausschließlich dem geschäftlichen Verkehr dienen, überschreitet die Gegendarstellung nicht den Umfang des beanstandeten Textes, so gilt sie als angemessen. Die Gegendarstellung muß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und darf keinen strafbaren Inhalt haben. Sie bedarf der Schriftform und muß von dem Betroffenen oder seinem gesetzlichen Vertreter unterzeichnet sein. Der Betroffene oder sein Vertreter kann den Abdruck nur verlangen, wenn die Gegendarstellung dem verantwortlichen Redakteur oder dem Verleger unverzüglich, spätestens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r Veröffentlichung, zugeht.
- (3) Die Gegendarstellung muß in der nach Empfang der Einsendung nächstfolgenden, für den Druck nicht abgeschlossenen Nummer in dem gleichen Teil des Druckwerks und mit gleicher Schrift wie der beanstandete Text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abgedruckt werden; sie darf nicht in der Form eines Leserbriefs erscheinen. Der Abdruck ist kostenfrei. Wer sich zu der Gegendarstellung in derselben Nummer äußert, muß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 (4) Für die Durchsetzung des Gegendarstellungsanspruchs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Auf Antrag des Betroffenen kann das Gericht anordnen, daß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und der Verleger in der Form des Absatzes 3 eine Gegendarstellung veröffentlichen. Auf dieses Verfahren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über das Verfahren auf Erlaß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entsprechend anzuwenden. Eine Gefährdung des Anspruchs braucht nicht glaubhaft gemacht zu werden. Ein Hauptverfahren findet nicht statt.
-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nicht für wahrheitsgetreue Berichte über öffentliche Sitzungen der gesetzgebenden oder beschließenden Organe des Bundes, der Länder und der Gemeinden (Gemeindeverbände) sowie der Gerichte.

〈참고〉 연방국가인 독일은 출판에 관한 입법권한이 주에 있으므로 각 주에서 출판법(Landespressgesetz)을 통해 반론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반론권에 관한 규정 내용은 각 주마다 유사하다.

## [첨부 7] 바이에른 언론법(Pressegesetz)

### 제10조 반론권

- (1) (a)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편집인 및 발행인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문을 인쇄할 의무가 있다. (b) 반론문은 불평이 제기된 부분을 명시하고 사실적 정보에 국한되어야 하며 발신인이 서명해야 한다. (c) 반론문 서명의 진위여부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에는 서명의 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
- (2) (a) 반론의 재인쇄는 지체 없이 인쇄된 저작물의 동일한 부분과 동일한 서체로 삽입 또는 누락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b) 반론에 처벌 가능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인쇄를 거부할 수 있다. (c) 반론문은 반박을 제기한 글의 범위를 크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 (d) 진행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반론권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 〈원문〉

#### Art. 10 BayPrG Gegendarstellung

- (1)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und der Verleger einer Zeitung oder Zeitschrift sind verpflichtet, zu Tatsachen, die darin mitgeteilt wurden, auf Verlangen einer unmittelbar betroffenen Person oder Behörde deren Gegendarstellung abzudrucken. Sie muss die beanstandeten Stellen bezeichnen,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und vom Einsender unterzeichnet sein. Ergeben sich begründete Zweifel an der Echtheit der Unterschrift einer Gegendarstellung, so kann die Beglaubigung der Unterschrift verlangt werden.
- (2) Der Abdruck muss unverzüglich, und zwar in demselben Teil des Druckwerks und mit derselben Schrift wie der Abdruck des beanstandeten Textes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erfolgen. Der Abdruck darf nur mit der Begründung verweigert werden, dass die Gegendarstellung einen strafbaren Inhalt habe. Die Gegendarstellung soll den Umfang des beanstandeten Textes nicht wesentlich überschreiten. Die Aufnahme erfolgt insoweit kostenfrei.
- (3) Der Anspruch auf Aufnahme der Gegendarstellung kann auch im Zivilrechtsweg verfolgt werden.

## [첨부 8] 베를린 언론법(Pressegesetz)과 베를린 주법(Landesrecht)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권

### § 10 언론법 - 반론권

- (1) 정기간행물의 책임 있는 편집자 및 발행인은 인쇄된 저작물의 사실 진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의 반론을 인쇄할 의무가 있다. 의무는 사실적 진술이 나타난 인쇄물의 모든 부수 판으로 확장된다.
- (2)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게시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반론문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독점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광고의 경우 반론문을 인쇄할 의무가 없다. 회신이 반론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론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며 범죄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관련 개인이나 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책임 있는 편집자 또는 발행인이 늦어도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즉시 반론문을 받은 경우에만 반론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반론문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 (3) 반론은 이의제기 텍스트와 인쇄된 작업의 동일한 부분 및 동일한 서체로 인쇄되어야 하며 제출 접수 후 번호에 삽입 및 누락이 없고 인쇄용으로 완성되지 않아야 한다. 반론은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인쇄는 무료이다. 이것은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번호로 이의제기 신청서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사실에 입각한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
- (4) 실패한 반론 청구를 시행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책임 있는 편집인 및 발행인에게 3항의 형식으로 반론을 게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이 절차에 준용한다. 주장에 대한 위험성은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 사실 주장에 대한 본안 심리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 (5) 1~4항은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연합), 지역 및 법원의 입법부 또는 의사결정 기구의 공개 회의에 대한 진실한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 방송(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반론권은 방송의 편집을 담당하는 방송사에 대한 것이다. 반론은 문제의 방송과 동일한 지역 및 동등한 방송 시간에 즉시 방송되어야 한다.

## 〈원문〉

## § 10 PresseG – Gegendarstellungsanspruch

- (1) Die verantwortlichen Redakteure und die Verleger eines periodischen Druckwerks sind verpflichtet, eine Gegendarstellung von Personen oder Stellen zum Abdruck zu bringen, die durch eine in dem Druckwerk aufgestellte Tatsachenbehauptung betroffen sind. Die Verpflichtung erstreckt sich auf alle Nebenausgaben des Druckwerks, in denen die Tatsachenbehauptung erschienen ist.
- (2) Die Pflicht zum Abdruck einer Gegendarstellung besteht nicht, wenn die betroffene Person oder Stelle kein berechtigtes Interesse an der Veröffentlichung hat, wenn die Gegendarstellung ihrem Umfang nach nicht angemessen ist oder bei Anzeigen, die ausschließlich dem geschäftlichen Verkehr dienen. Überschreitet die Gegendarstellung nicht den Umfang des beanstandeten Textes, so gilt sie als angemessen. Die Gegendarstellung muss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und darf keinen strafbaren Inhalt haben. Der Abdruck der Gegendarstellung kann von den betroffenen Personen oder Stellen oder ihren Vertretern nur verlangt werden, wenn die Gegendarstellung den verantwortlichen Redakteuren oder den Verlegern unverzüglich, spätestens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r Veröffentlichung, zugeht. Die Gegendarstellung bedarf der Schriftform.
- (3) Die Gegendarstellung muss in der nach Empfang der Einsendung nächstfolgenden, für den Druck nicht abgeschlossenen Nummer in dem gleichen Teil des Druckwerks und mit gleicher Schrift wie der beanstandete Text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abgedruckt werden; die Gegendarstellung darf nicht in Form eines Leserbriefs erscheinen. Der Abdruck ist kostenfrei; dies gilt nicht für Anzeigen. Wer sich zu der Gegendarstellung in derselben Nummer äußert, muss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 (4) Für die Durchsetzung des vergeblich geltendgemachten Gegendarstellungsanspruchs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Auf Antrag der betroffenen Personen oder Stellen kann das Gericht anordnen, dass die verantwortlichen Redakteure und die Verleger in der Form des Absatzes 3 eine Gegendarstellung veröffentlichen. Auf dieses Verfahren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ssordnung über das Verfahren auf Erlass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entsprechend anzuwenden. Eine Gefährdung des Anspruchs braucht nicht glaubhaft gemacht zu werden. Ein Verfahren zur Hauptsache findet nicht statt.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nicht für wahrheitsgetreue Berichte über öffentliche Sitzungen der gesetzgebenden oder beschließenden Organe des Bundes, der Länder, der Gemeinden (Gemeindeverbände), der Bezirke sowie der Gerichte.

(6) Auf den Rundfunk (Hörfunk und Fernsehen) finden die Absätze 1 bis 5 entsprechende Anwendung. Der Gegendarstellungsanspruch richtet sich gegen die Rundfunkanstalt, die für die redaktionelle Gestaltung der Sendung verantwortlich ist. Die Gegendarstellung muss unverzüglich für den gleichen Bereich sowie zu einer gleichwertigen Sendezeit wie die beanstandete Sendung verbreitet werden.

## [첨부 9] 함부르크 주 언론법(Landespressegesetz)의 반론권

### § 11 반론권

- (1) 정기 간행물의 책임 편집자 및 발행인은 해당 간행물에서 제기된 사실적 주장에 영향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반론을 인쇄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사실적 주장이 게재된 인쇄 저작물의 모든 보조 판에 적용된다.
- (2) 반론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반론을 인쇄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론이 불만을 제기한 텍스트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론 진술은 사실적인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며 범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반론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론이 담당 편집자 또는 발행인에게 지체없이, 늦어도 발행 후 3개월 이내에 접수된 경우에만 재출판을 요구할 수 있다.
- (3) 반론은 인쇄를 위해 완성되지 않은 제출물을 접수한 다음 번호에 삽입 또는 누락 없이 불만을 제기한 텍스트와 동일한 부분 및 동일한 서체로 인쇄되어야 한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한 텍스트가 광고로 인쇄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쇄는 무료이다. 같은 호에서 반론에 대해 논평하는 사람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국한해야 한다.
- (4) 반론권은 일반 법원을 통해 집행된다. 관련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담당 편집자와 발행인에게 제 3항에 언급된 양식의 반론을 게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절차에 관하여는 가처분 신청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장에 대한 위험성은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는 없다.
-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연방정부, 주,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의 입법 또는 의사결정 기관의 공개 회의에 대한 진실한 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문〉

#### § 11 Gegendarstellung.

- (1)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und der Verleger eines periodischen Druckwerks sind verpflichtet, eine Gegendarstellung der Person oder Stelle zum Abdruck zu bringen, die durch eine in dem Druckwerk aufgestellte Tatsachenbehauptung betroffen ist. Die Verpflichtung erstreckt sich auf alle Nebenausgaben des Druckwerks, in denen die Tatsachenbehauptung erschienen ist.

- (2) Die Pflicht zum Abdruck einer Gegendarstellung besteht nicht, wenn die Gegendarstellung ihrem Umfang nach nicht angemessen ist. Überschreitet die Gegendarstellung nicht den Umfang des beanstandeten Textes, so gilt sie als angemessen. Die Gegendarstellung muß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und darf keinen strafbaren Inhalt haben. Sie bedarf der Schriftform und muß von dem Betroffenen oder seinem gesetzlichen Vertreter unterzeichnet sein. Der Betroffene oder sein Vertreter kann den Abdruck nur verlangen, wenn die Gegendarstellung dem verantwortlichen Redakteur oder dem Verleger unverzüglich, spätestens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r Veröffentlichung, zugeht.
- (3) Die Gegendarstellung muß in der nach Empfang der Einsendung nächstfolgenden, für den Druck nicht abgeschlossenen Nummer in dem gleichen Teil des Druckwerks und mit gleicher Schrift wie der beanstandete Text ohne Einschaltungen und Weglassungen abgedruckt werden. Sie darf nicht in Form eines Leserbriefes erscheinen. Der Abdruck ist kostenfrei, es sei denn, der beanstandete Text ist als Anzeige abgedruckt worden. Wer sich zu der Gegendarstellung in derselben Nummer äußert, muß sich auf tatsächliche Angaben beschränken.
- (4) Für die Durchsetzung des Gegendarstellungsanspruchs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Auf Antrag des Betroffenen kann das Gericht anordnen, daß der verantwortliche Redakteur und der Verleger in der Form des Absatzes 3 eine Gegendarstellung veröffentlichen. Auf dieses Verfahren sind die Vorschriften der Zivilprozeßordnung über das Verfahren auf Erlaß einer einstweiligen Verfügung entsprechend anzuwenden. Eine Gefährdung des Anspruchs braucht nicht glaubhaft gemacht zu werden.
- (5) Die Absätze 1 bis 4 gelten nicht für wahrheitsgetreue Berichte über öffentliche Sitzungen der gesetzgebenden oder beschließenden Organe des Bundes, der Länder und der Gemeinden (Gemeindeverbände) sowie der Gerichte.

Hamburgisches Pressegesetz vom 29. Januar 1965 (GVBl. S. 15)\*)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18. Mai 2018 (GVBl. S. 184) 6)

## [첨부 10] 미국기자협회 윤리강령 (SPJ Code of Ethics)

### Preamble(서문)

미국기자협회(SPJ: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회원들은 대중의 계몽이 정의의 선구자이자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믿습니다. 윤리적 저널리즘은 정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윤리적 저널리스트는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협회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윤리적 저널리즘의 기초로 선언하고 모든 미디어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 Seek Truth and Report It (진실 추구 보도)

윤리적 저널리즘은 정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언론인은 정보를 수집, 보도, 해석할 때 정직하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널리스트의 수행 의무:

- 작업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합니다. 가능한 한 원본 출처를 사용합니다.
- 속도나 형식이 부정확성을 변명할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 맥락을 제공하세요. 스토리를 홍보하거나 미리 보기 또는 요약할 때 잘못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 뉴스 스토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정보를 수집, 업데이트 및 수정합니다.
- 약속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되,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세요. 대중은 취재원의 신뢰성과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익명성을 약속하기 전에 취재원의 동기를 고려하세요. 위협, 보복 또는 기타 피해에 직면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취재원을 위해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익명성을 부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 뉴스 보도 대상자가 비판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혐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찾습니다.
- 기존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잠입 취재나 기타 은밀한 정보 수집 방법을 피합니다.
-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용기를 내세요.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주세요.
- 공개적이고 시민적인 의견 교환을 지원하며, 심지어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 공공 업무와 정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인식합니다. 공공의 업무가 공개적으로 수행되고 공공 기록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도록 노력합니다.
- 관련성이 있고 적절한 경우 출처 자료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규모에 대해 대담하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는 목소리를 가진 이들에게서 출처를 찾으십시오.
- 고정관념을 피하세요. 기사는 자신의 가치와 경험이 보도를 형성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 옹호 주장 및 논평에 저자 표기를 합니다.
- 시각적 정보를 포함해 사실이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삽화 및 재연에는 명확하게 저자 표기를 합니다.
- 표절하지 않습니다. 항상 출처를 명시하세요.

### Minimize Harm (피해 최소화)

윤리적 저널리즘은 취재원, 피사체, 동료, 대중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격체로 대합니다.

저널리스트의 수행 의무:

- 대중의 정보에 대한 욕구와 잠재적인 피해 또는 불편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뉴스를 추구한다고 해서 오만함이나 부당한 침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뉴스 보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표현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경향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취재원이나 피사체를 다룰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접근 방식과 대우에 있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합니다.
- 정보에 대한 법적 접근 권한과 출판 또는 방송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 공인이나 권력, 영향력, 관심을 끌려는 사람보다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가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개인 정보를 게시하거나 방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도 터무니없는 호기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합니다.
- 용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법적 고발을 당하기 전에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세요.
- 정보의 도달 범위가 확대되고 영구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적절하게 업데이트되고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Act Independently (독립적 행동)

윤리적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는 대중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널리스트의 수행 의무:

- 실제 또는 인지된 이해 상충을 피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해충돌은 공개합니다.

- 선물, 호의, 수수료, 무료 여행 및 특별 대우를 거절하고, 청렴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정치 및 기타 외부 활동을 피합니다.
- 호의나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를 주의하고 뉴스 액세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유료 여부에 관계없이 외부 출처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식별합니다.
- 광고주, 기부자 또는 기타 특별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혜를 거부하고 보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내외부의 압력에 저항합니다.
- 뉴스와 광고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혼합형 콘텐츠를 피합니다. 스폰서십을 받은 콘텐츠는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 B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책임 및 투명성)

윤리적 저널리즘이란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지고 대중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널리스트의 수행 의무:

- 시청자에게 윤리적 선택과 과정을 설명합니다. 저널리즘 관행, 보도 및 뉴스 콘텐츠에 대해 대중과 시민적 대화를 장려합니다.
- 정확성, 명확성,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합니다.
-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신속하고 눈에 띄게 수정합니다. 정정 및 해명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 조직 내를 포함하여 저널리즘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폭로합니다.
-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높은 기준을 준수합니다.

SPJ 윤리 강령은 변화하는 저널리즘 관행을 다루는 추가 설명과 입장문으로 뒷받침되는 준수 원칙에 대한 선언문입니다. 이 강령은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매체에 관계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가이드입니다. 이 강령은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 하며 개별 원칙을 맥락에서 떼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령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 Preamble

Members of the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believe that public enlightenment is the forerunner of justice and the foundation of democracy. Ethical journalism strives to ensure the free exchange of information that is accurate, fair and thorough. An ethical journalist acts with integrity.

The Society declares these four principles as the foundation of ethical journalism and encourages their use in its practice by all people in all media.

## Seek Truth and Report It

Ethical journalism should be accurate and fair, Journalists should be honest and courageous in gathering, reporting and interpreting information.

Journalists should:

-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ccuracy of their work. Verify information before releasing it. Use original sources whenever possible.
- Remember that neither speed nor format excuses inaccuracy.
- Provide context. Take special care not to misrepresent or oversimplify in promoting, previewing or summarizing a story.
- Gather, update and correct information throughout the life of a news story.
- Be cautious when making promises, but keep the promises they make.
- Identify sources clearly. The public is entitled to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to judge the reliability and motivations of sources.
- Consider sources' motives before promising anonymity. Reserve anonymity for sources who may face danger, retribution or other harm, and have information that cannot be obtained elsewhere. Explain why anonymity was granted. annotate arrow
- Diligently seek subjects of news coverage to allow them to respond to criticism or allegations of wrongdoing.
- Avoid undercover or other surreptitious methods of gathering information unless traditional, open methods will not yield information vital to the public.
- Be vigilant and courageous about holding those with power accountable. Give voice to the voiceless.
- Support the open and civil exchange of views, even views they find repugnant.
- Recognize a special obligation to serve as watchdogs over public affairs and government. Seek to ensure that the public's business is conducted in the open, and that public records are open to all.
- Provide access to source material when it is relevant and appropriate.
- Boldly tell the story of the diversity and magnitude of the human experience. Seek sources whose voices we seldom hear.
- Avoid stereotyping. Journalists should examine the ways their values and experiences may shape their reporting.
- Label advocacy and commentary.
- Never deliberately distort facts or context, including visual information. Clearly label illustrations and re-enactments.
- Never plagiarize. Always attribute.

## Minimize Harm

Ethical journalism treats sources, subjects, colleagues and members of the public as human beings deserving of respect.

Journalists should:

- Balance the public's need for information against potential harm or discomfort. Pursuit of the news is not a license for arrogance or undue intrusiveness.
- Show compassion for those who may be affected by news coverage. Use heightened sensitivity when dealing with juveniles, victims of sex crimes, and sources or subjects who are inexperienced or unable to give consent. Consider cultural differences in approach and treatment.
- Recognize that legal access to information differs from an ethical justification to publish or broadcast.
- Realize that private people have a greater right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themselves than public figures and others who seek power, influence or attention. Weigh the consequences of publishing or broadcasting personal information.
- Avoid pandering to lurid curiosity, even if others do.
- Balance a suspect's right to a fair trial with the public's right to know.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identifying criminal suspects before they face legal charges.
- Consider the long-term implications of the extended reach and permanence of publication. Provide updated and more complete information as appropriate.

## Act Independently

The highest and primary obligation of ethical journalism is to serve the public.

Journalists should:

- Avoid conflicts of interest, real or perceived. Disclose unavoidable conflicts.
- Refuse gifts, favors, fees, free travel and special treatment, and avoid political and other outside activities that may compromise integrity or impartiality, or may damage credibility.
- Be wary of sources offering information for favors or money; do not pay for access to news. Identify content provided by outside sources, whether paid or not.
- Deny favored treatment to advertisers, donors or any other special interests, and resist internal and external pressure to influence coverage.
- Distinguish news from advertising and shun hybrids that blur the lines between the two. Prominently label sponsored content.

## B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Ethical journalism means taking responsibility for one's work and explaining one's decisions to the public.

Journalists should:

- Explain ethical choices and processes to audiences. Encourage a civil dialogue with the public about journalistic practices, coverage and news content.
- Respond quickly to questions about accuracy, clarity and fairness.
- Acknowledge mistakes and correct them promptly and prominently. Explain 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carefully and clearly.
- Expose unethical conduct in journalism, including within their organizations.
- Abide by the same high standards they expect of others.

The SPJ Code of Ethics is a statement of abiding principles supported by additional explanations and position papers that address changing journalistic practices. It is not a set of rules, rather a guide that encourages all who engage in journalism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information they provide, regardless of medium. The code should be read as a whole; individual principles should not be taken out of context. It is not, nor can it be under the First Amendment, legally enforceable.





#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미디어 플랫폼 다변화 시대  
반론권 제도에 관한 해외법제연구

---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ISSN 2635-8522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7호

2023년 11월 10일 발행

편집 · 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02)397-3041~4

[www.pac.or.kr](http://www.pac.or.kr)

인 쇄 : 문화공감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2023년도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